

개정증보판

코로나19 법률상담



대한변호사협회
KOREAN BAR ASSOCIATION

※ 대한변호사협회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사회적으로 문제되는 법적 분쟁들에 대한 국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이와 관련된 회원들의 법률상담 업무에 도움을 드리고자 본 Q&A집을 발간하였습니다.

본 Q&A집의 상담 내용은 구체적 사실 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간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으로 전 세계가 전대미문의 위기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바이러스는 세계 질서를 흔들고 국가 경제를 급격히 위축시키며, 국민의 안전과 생명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위협하였습니다.

그러나 전례 없는 사회적 혼란과 역병의 공포 속에서도, 우리 국민들은 조직적이며 선진적인 시민의식을 몸소 행동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국민들은 법률에 따른 자가 격리, 동선 공개 등의 조치에 협조했고, 자발적 마스크 쓰기, 사회적 거리두기 등에 참여하며 전 세계가 주목할 만한 자랑스러운 시민정신을 곳곳이 실천해왔습니다.

그리고 8월, 우리의 방역체계는 다시금 급작스러운 코로나19 재확산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끝이 요원한 현재 진행형의 위기 속에서도, 우리 국민들의 성숙한 시민의식은 날로 더욱 성장하고 굳건해질 것입니다. 코로나19의 초기 대확산 당시 정책 당국과 의료계, 국민이 모두 한마음으로 불편함과 고통을 감내하고 일치단결함으로써 신속한 통제를 가능케 했던 경험을 상기하며 계속하여 방역의 성공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는 것을 사명으로 하는 대한변호사협회 역시 국가적 혼란 속에서 더욱 큰 책임감을 갖고 국민의 안전과 민생 회복, 법치주의의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대한변협은 가장 시급한 과제로, 코로나19에 의해 피해를 입고 있는 국민들의 삶의 현장을 바로 세우려합니다. 대한변협은 코로나19로 대두된 각종 사회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법률적인 궁금증을 해소하고 피해회복을 지원하며, 이와 관련된 회원들의 법률상담 업무를 돕고자 코로나19대책 법률지원TF를 구성하여, 지난 4월 각 분야별 법률상담 Q&A집을 온라인상으로 제작·배포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코로나19의 재확산의 위험 속에서 본 자료집이 민생 현장 곳곳에서 긴밀히 활용될 수 있도록 이번 9월, 최근까지의 이슈들을 반영한 개정증보판을 인쇄물의 형태로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법률상담 Q&A집은 △임대차 관계 △여행, 행사 등 계약취소 △허위, 과장 광고로 인한 계약 관계 △입시 폐쇄, 경영악화 등 회사 경영 관계 △유급휴가, 휴업보상, 특별연장근로허가, 가족돌봄휴가, 고용유지지원금 등 근로관계 △해외 체류, 여행 및 국제, 외교 관계 △형사 문제 △배·보상 문제 △보험 문제 △인권침해 문제 △학습비용 반환, 강의동영상 저작권 문제 등 현재 코로나19로 제기되고 있는 각 분야별 실제 법률상담 사례를 기초로 한 법률 검토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본 법률상담 Q&A집의 제작 및 개정증보 작업을 위해 수고해주신 집필진과 인권팀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인쇄물의 형태로 발간되는 본 법률상담 Q&A집 개정증보판이 코로나19로 고통받고 있는 국민의 법률문제 해결을 위해 뜻깊게 활용되고, 코로나19와 관련한 법률상담과 소송 등 회원들의 업무에도 유용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현명한 자는 위기 속에서 기회를 찾는다”고 합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대한민국은 더욱 강해질 것이며, 법치주의 역시 더욱 견고해질 것입니다. 앞으로도 대한변협은 법의 정신을 살려 국민 모두가 행복하고 안전한 사회, 풍요로우면서도 따뜻한 정의가 살아 숨 쉬는 선진 법치국가를 만들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감염병의 확산세가 차단되어 모든 국민의 가정에 평범한 일상이 회복되고 평화와 안정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9.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이찬희

CONTENTS

01 계약 취소 관계

01. 해외여행계약 해제와 위약금	2
02. 해외골프여행계약 취소 시 위약금 청구	5
03. 항공권 취소 수수료	7
04. 국내여행계약 해제와 위약금	9
05. 계약취소(계약의 성립 여부)	12
06. 계약취소(손해배상액의 예정)	14
07. 예약장 계약 해제와 위약금	17
08. 민간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 유권해석(코로나19와 불가항력)	19

02 교육

01. 저작권법 위반 방지를 위한 사전조치	24
02. 저작권법에 의한 출처표시방법	26
03. 저작권법에 의한 타인의 저작물 사용방법	28
04. 온라인 동영상 강의 SNS 공유행위와 저작권법 위반	30
05. 국공립 어린이집·유치원 및 사립유치원 교원의 겸직금지 의무	32
06. 대학교 신입생의 휴학 가능성	34
07. 학교 입학 연기 시 통학버스 용역비 지급 여부	37
08. 학원의 손해배상책임 (코로나19 확진자인 학원 강사 또는 수강생으로부터 감염된 경우)	39
09. 대학교 등록금 환불 또는 일부반환	
09-1. 온라인 수업 진행, 수업 일수 부족으로 인한 학습권 침해 여부	41
09-2. 온라인 수업, 수업 질 저하로 인한 학습권 침해 여부	43
10. 학원 교습비 등 환불 또는 일부반환	45

03 근로 관계

01. 근로자 자가격리 시 유급휴가 보장 여부	52
02. 회사의 영업 차질로 휴업하게 된 경우 휴업수당 지급 여부	54
03. 코로나19로 급여를 받지 못해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 실업급여 지급 여부	56
04. 코로나19로 인한 사용자의 연차휴가 우선사용 문제	58
05. 감염자에 대한 임금처리 및 매출감소 시 임금삭감 문제	60
06. 사용자의 연차휴가 사용 강요 또는 연차휴가 사용 거부	62
07. 사업주 자체판단으로 자택대기 및 휴업을 하는 경우 급여지급 문제	64
08. 코로나19에 따른 매출감소를 이유로 한 무급휴직	67
09. 근로자 희망에 따른 재택근무를 차별적으로 시행하는 문제 (특정부서나 특정근로자에게는 출근을 요구하는 경우)	69
10. 코로나19 창궐 지역으로 전직·전보된 경우 근로자의 대응방안	71
11. 코로나19로 인한 권고사직 및 해고	73
12. 코로나19로 인한 명예퇴직 신청 및 정리해고	75
13. 코로나19로 인한 퇴직 및 퇴직금의 평균임금 계산	78
14. 코로나19 대응 정부정책 소개 (고용유지지원금·가족돌봄비용지원·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지원·무급휴직 신속지원제도 개요)	80
15. 근로자가 코로나19에 감염된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 여부	
15-1.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코로나19에 감염된 경우	85
15-2. 근로자가 출·퇴근 또는 회사의 회식·행사 중 코로나19에 감염된 경우	88
16. 채용결정 이후 출근 대기 기간 중 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한 법률관계	91

CONTENTS

04 배상·보상 문제

01. 자기격리 권고조치 위반자의 손해배상책임	96
02. 회사 또는 국가의 손해배상 또는 손실보상책임 (코로나19 창궐지역으로 업무상 출장을 가게 되어 감염된 경우)	98
03. 의료진의 신천지 교회 상대 손해배상 청구 거부 (신천지 교인이 확진사실을 숨기고 수술에 응하여 의료진이 감염된 경우)	101
04. 2차 감염자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책임	103
05. 확진자 이동경로 공개로 영업손실이 발생한 경우 국가의 손실보상책임	106
06. 병원의 검사 권유를 거부하고 확진판정을 받은 자의 손해배상책임 (확진판정을 받은 자와 접촉한 다수의 사람이 확진판정을 받은 경우)	108
06-1. 환자가 코로나19 검사거부 시 의료기관이 입원을 거부할 수 있는지 거부	110
07. 정신병원 및 요양병원 등 집단 감염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거부	113
08. 국가 등과 의료기관의 손해배상책임 성립 요건	115

05 보험 관계

01. 해외여행자보험 보상범위(코로나19로 해외여행 일정이 중단된 경우 등)	120
02.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보상범위 (자기격리 위반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받은 경우 등)	124
03. 웨딩보험 보상기준(코로나19로 결혼이 취소되는 경우 등)	127
04. 건강보험 및 실손의료보험 보상범위(코로나19 검사비 및 진료비 등)	129
05. 병원 가입 보험사의 보상범위 (환자가 병원 내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된 경우 병원의 손해배상책임)	132
06. 코로나19로 인한 생계 곤란으로 보험료 납입이 어려울 경우 대처 방안	139

07. 확진자로 인하여 건물 오염 피해 또는 영업손실이 발생한 경우 배·보상	
07-1. 재산종합보험 또는 화재보험 보상범위	141
07-2. 확진자의 손해배상책임	145
08. 재난배상책임보험 보상범위(영업장, 건물 등에서 확진자가 발생한 경우 그 확진자 또는 건물에 출입한 사람이 입은 손해 등)	148

06 인권침해 문제

01. 외국인에 대한 인권침해	
01-1.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의 마스크 구입 제한	152
01-2.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의 재난기본소득 지급 제한	155
01-3. 외국인에 대한 혐오표현 및 차별행위	157
02. 자가격리 대상자의 선거권 보장	163
03. 수용자에 대한 부당한 처우	168
04. 확진자 등 정보공개에 따른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권리 침해	171
05. 집회 및 시위의 자유 제한	175
06. 언론보도에 따른 허위사실 유포 및 편견·혐오의 조장	178
07.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생계지원 신청 등 거부, 지원중단, 반환명령	182
08. 격리 대상자의 요건, 절차 및 처우	186
09. 부당한 강제처분	190
10. 장애학생을 위한 온라인 학습 지원장비 등 제공에 관한 법적근거	194
11. 자가격리 대상자의 가정폭력 피해	199
12. 탈가정 청소년의 긴급재난지원금 대상 해당 여부	202

CONTENTS

07 임대차 관계

01. 영업이익이 급감한 임차인의 상가건물 임대차계약 해지	206
02. 임차인의 차임연체로 인한 임대인의 상가건물 임대차계약 해지	209
03. 상가건물 임차인의 차임감액청구권	212
04. 상가건물 임차인 퇴거 불응	215
05. 상가건물 임대인에 대한 정책지원	218
06. 상가임대차 차임증감에 관한 분쟁해결방법	221
06-1. 상가건물 전대인(임차인)의 차임증액청구	223
07. 임대차계약 계약금 반환청구(코로나19 확진자 거주 주택)	225
08. 경제적 사정 악화로 인한 잔금지급의무 불이행과 임대차계약 해제	228
09. 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한 잔금지급의무 불이행과 임대차계약 해제	229
10. 주택 임차인의 차임감액청구권	231
11. 주택 임차인의 차임연체	233
12. 주택 임대차 보증금 반환	236

08 해외 체류·여행, 국제·외교 관계

01. 외국항공사 항공편 지연 및 취소	242
02. 마스크 반입 통관 및 관세	245
03. 국제계약상 불가항력 사유의 적용(1)	249
03-1. 국제계약상 불가항력 사유의 적용(2)	252

04. 해외여행 중개사이트 여행계약 취소(계약금 환불)	255
05. 코로나19 확진자 프라이버시권	257
06. 해외 체류 중 코로나19로 사망	261
07. 코로나19로 인한 체류기간 연장	263
08. 외국인 자가격리조치 불응	265
09. 해외체류 한국인의 범죄 피해 지원	268
10. 해외위난상황 발생지역 전세기 등 투입	270

09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계약 관계

01. 물품구매계약 취소	276
02. 허위·과장 광고 판단기준	278
03. 소비자 사용후기와 판매자의 책임	280
04. 허위·과장 광고와 사기죄	282
05. 의약품 등의 명칭·제조방법·효능이나 성능에 관한 광고	284
06. 식품 등의 명칭·제조방법·효능이나 성능에 관한 광고	287
07. 공정거래위원회 시정조치	289
08. 명예훼손	292
09.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와 손해배상책임	295
10. 제3자를 통한 허위·과장 광고	297

CONTENTS

10 형사

01. 의무적인 자가격리 조치 위반	302
02. 자가격리 권고 위반	304
03. 역학조사 거부·방해 또는 회피(검체 채취 요구 불응)	307
04. 역학조사 거부·방해 또는 회피(고의적인 사실 누락·은폐)	310
05. 가짜·허위사실 유포(영상, 뉴스 등)	312
05-1. 기자의 명예훼손죄 성립 여부	316
05-2. 명예훼손,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	319
06. 의료인에 대한 거짓진술	323
07. 마스크 구입 시 타인의 신분증 사용	325
08. 마스크 매점매석 행위	330
09. 코로나19 확진자 전파매개행위의 상해죄 성립 여부	334
10. 집합금지, 방역조치 지침 준수 위반 등	337
11. 개인정보 유출(확진자 동선공개)	340
12. 코로나19 재난지원금 부정유통 행위	343

11 회사 경영 관계

01. 확진자 이동경로 정보공개와 사업장 폐쇄(배·보상)	348
02. 근로자에 대한 징계 또는 손해배상 청구	351
03. 임원의 임기와 권한행사	354
04. 코로나19와 주주총회(보고서 제출)	357
05. 코로나19와 주주총회(임원의 보수)	360
06. 소상공인 지원 제도	362
06-1. 지방자치단체의 소상공인 지원(재난관리기금)	365
07. 코로나19와 정리해고	369
08. 법인 회생·파산	373
09. 개인 회생·파산	376
10. 사업주의 손해배상책임	379
11. 비상경영대책(임금의 반납 또는 삭감)	381

CHAPTER
01

계약 취소 관계

01. 해외여행계약 해제와 위약금
02. 해외골프여행계약 취소 시 위약금 청구
03. 항공권 취소 수수료
04. 국내여행계약 해제와 위약금
05. 계약취소(계약의 성립 여부)
06. 계약취소(손해배상액의 예정)
07. 예식장 계약 해제와 위약금
08. 민간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 유권해석(코로나19와 불가항력)

Q 01

해외여행계약 해제와 위약금

A는 B여행사와 해외여행계약을 체결하고 여행경비를 모두 지불하였으나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감염 위험이 높아지자, B여행사와의 여행계약을 취소하고 이미 지불한 여행경비를 모두 돌려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문의하였습니다. A의 입장은 “천재지변에 준하는 코로나19로 인해 여행계약을 취소하는 것이므로, 당연히 여행사는 모든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였고, B여행사는 “약관에 따라서 A가 위약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A는 B여행사로부터 기지급한 여행경비를 모두 환불받을 수 있을까요?

#해외여행계약 #계약해제 #환불 #위약금 #여행경비

A

A가 여행계약을 취소하는 이유가 해당 국가가 한국인 입국금지, 강제격리, 검역강화 등의 조치를 결정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단순한 감염우려 때문이라면, A는 위약금을 지급하고 계약을 해제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위약금이 부당하게 과다하다면 위약금 조항의 효력을 다투거나 감액을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민법 제674조의3에 따르면 여행자는 여행을 시작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지만 상대방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동법 제674조의4 제1항에 따르면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사유가 당사자 한쪽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의 국외여행표준약관 제16조 제2항, 제12조 제1항에 따르면, 여행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 출발 전에 ① 여행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여행자의 요청 또는 현지사정에 의하여 부득이하다고 쌍방이 합의한 경우, ② 천재지변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A는 여행을 시작하기 전이므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민법 제674조의3에 따라 상대방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는데, 약관에 위약금 약정을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A가 위약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여행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해제사유가 민법 제674조의4 제1항에 따라 A의 과실이 아닌 부득이한 사유이거나, 위 약관에 따라 천재지변에 해당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코로나19 발생이 A의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님은 명백하나, 부득이한 사유 또는 천재지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만일 해당 국가가 한국인 입국금지, 강제격리, 검역강화 등의 조치를 결정한 경우 등에는 최소한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겠으나, 단순한 감염 우려의 경우라면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위약금이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에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8조 규정에 의해 그 조항이 무효가 될 수 있고, 민법 제398조에 따라서 법원이 감액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부당히 과다한 경우'라고 함은 ① 채권자와 채무자의 각 지위, ② 계약의 목적 및 내용, ③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동기, ④ 채무액에 대한 예정액의 비율, ⑤ 예상 손해액의 크기, ⑥ 그 당시의 거래관행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일반 사회관념에 비추어 그 예정액의 지급이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채무자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여 공정성을 잃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1993. 1. 15. 선고 92다36212 판결 참조).

따라서 A가 여행계약을 취소하는 이유가 해당 국가가 한국인 입국금지, 강제격리, 검역강화 등의 조치를 결정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단순한 감염 우려 때문이라면, A는 위약금을 지급하고 계약을 해제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위약금이 부당하게 과다하다면 위약금 조항의 효력을 다투거나 감액을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민법

제674조의3(여행 개시 전의 계약 해제) 여행자는 여행을 시작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여행자는 상대방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674조의4(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 ①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그 사유가 당사자 한쪽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398조(배상액의 예정) ①당사자는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다. ②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8조(손해배상액의 예정)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 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은 무효로 한다.

공정거래위원회 국외여행 표준약관

제12조(여행조건의 변경요건 및 요금 등의 정산) ①계약서 등에 명시된 여행조건은 다음 각 호의 1의 경우에 한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1. 여행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여행자의 요청 또는 현지사정에 의하여 부득이하다고 쌍방이 합의한 경우
2.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숙박기관 등의 파업·휴업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제16조(여행출발 전 계약해제) ②여행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전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상대방에게 제1항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1. 여행사가 해제할 수 있는 경우
가.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사유의 경우
2. 여행자가 해제할 수 있는 경우
가.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Q
02

해외골프여행계약 취소 시 위약금 청구

A는 2019년 12월 초 태국 방콕 인근에 있는 B가 운영하는 유명 골프&리조트의 홈페이지 상담을 통하여 2020년 2월 5일부터 10일까지 5박 6일간 리조트 숙식과 골프라운딩을 예약하였습니다. 그런데 태국은 2020년 1월 하순경 중국여행객들에 의해서 코로나19 환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었고, 이에 A는 고민 끝에 1월 28일 예약을 취소하였습니다. 그런데 B는 A가 미리 결제한 리조트숙박 첫날의 예약금 외에도 이들의 숙박료와 골프라운딩 비용까지 청구하였습니다. 리조트 홈페이지에는 예약취소 시 위약금에 관한 규정은 없습니다.

A는 B가 요구하는 비용을 모두 지불해야 하나요?

#해외여행계약 #계약해제 #환불 #위약금 #여행경비

A

A에게 여행계약을 취소하거나 해지할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B가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사전에 공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배상범위는 실제 발생한 손해 범위 내로 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먼저 이 사건 숙박 및 시설이용계약이 대한민국과 해외인 태국을 연결하는 인터넷으로 체결되어서 계약의 효력을 해석하는 준거법률로 우리나라 민법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태국의 계약법이 적용될 것인지 판단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일단 여행계약의 경우 우리나라 민법 제674조의4(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는 “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그 사유가 당사자 한쪽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해지로 인하여 발생하는 추가 비용은 그 해지 사유가 어느 당사자의 사정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당사자가 부담하고, 누구의 사정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각 당사자가 절반씩 부담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① 태국에서의 코로나19 발생지역과 발생숫자 및 확산 속도, ② 감염위험성과 치명도, ③ 태국의 방역수준과 의료수준, ④ 태국에서의 여행일정이나 활동내역 등에 비추어 볼 때, A에게 여행계약을 취소하거나 해지할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울 듯합니다. 따라서 귀하는 상대방인 B에게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B가 손해배상의 범위를 사전에 공지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위약금 등에 관한 규정), 손해배상의 범위는 A가 여행 출발 일주일 전에 숙박 및 골프장 시설이용계약을 취소함으로써 B가 상실하는 고객유치의 기회비용 및 골프팀 사전배정과 카트와 캐디 및 숙식 준비비용으로 한정되어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그러나 준거법의 문제, 위약금 등 규정의 부재, 분쟁해결의 기준의 문제 등 해결하여야 할 문제와 변수가 있어 보입니다).

참고로 국내에서 골프여행을 모집하는 여행사의 특별약관에 따르면, 성수기(전년도 12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출발일 10일 전부터 7일 전까지 취소하는 경우에는 상품대금의 100%를 취소수수료로 부과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Q
03

항공권 취소 수수료

A는 B항공사와 항공권 계약을 체결하고 항공권 비용을 모두 지불하였는데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취소하고자 합니다. A는 “자신의 책임이 아닌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계약을 취소하는 것이므로 항공사로부터 모든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고, 항공사는 “국외여행표준약관에 따라서 A가 취소 수수료를 일부 부담해야한다.”는 입장입니다.

A는 B항공사로부터 항공권 비용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항공권취소 #환불 #취소수수료

A

여행을 하려는 국가가 한국인 입국금지 등의 조치를 결정한 경우, 또는 항공사가 일방적으로 항공 노선을 취소한 경우에는 취소 수수료 없이 항공권 비용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국외여행표준약관 제16조 제2항, 제12조 제1항에 따르면, 여행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 출발 전에 ① 여행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여행자의 요청 또는 현지사정에 의하여 부득이하다고 쌍방이 합의한 경우, ② 천재지변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한편, 코로나19를 천재지변으로 볼 수 있는지는 다툼이 있으므로, 취소 수수료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여행조건이 변경된 이유가 여행자의 안전

과 보호를 위하여 여행자의 요청 또는 현지사정에 의하여 부득이하다고 쌍방이 합의한 경우라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A가 단순히 코로나19 감염이 우려되어 항공권을 취소하는 경우라면 취소 수수료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여행 국가에서 한국인의 입국을 금지하거나 항공사에서 일방적으로 항공 노선을 취소하는 경우라면 취소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국외여행 표준약관

제12조(여행조건의 변경요건 및 요금 등의 정산) ①계약서 등에 명시된 여행조건은 다음 각 호의 1의 경우에 한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1. 여행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여행자의 요청 또는 현지사정에 의하여 부득이하다고 쌍방이 합의한 경우
2.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숙박기관 등의 파업·휴업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제16조(여행출발 전 계약해제) ②여행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전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상대방에게 제1항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1. 여행사가 해제할 수 있는 경우
가.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사유의 경우
2. 여행자가 해제할 수 있는 경우
가.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Q
04

국내여행계약 해제와 위약금

A는 대학교에서 산악등산 동아리 회장을 맡고 있는데, 동아리에서는 매년 신입생과 오리엔테이션을 겸해서 유명산으로 1박 2일 수련회를 가고 있습니다. A는 지리산에서 진행되는 금년도 수련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2020년 2월 21일 전세버스기사와 1박 2일로 버스를 이용하기로 계약하고 그 대금의 절반인 50만 원을 입금하였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 환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이로 인해서 대학의 개강이 연기되었습니다. A는 급히 2월 27일 전세버스기사 B에게 연락을 해서 예약을 취소하고 예약금을 돌려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버스기사 B는 통화한 지 5일이 지나도록 답변을 하지 아니한 채 A의 전화를 차단하였습니다. A는 예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전세버스계약 #계약해지취소 #위약금 #환불

A

A가 주장하는 사유는 과실에 의하지 않은 부득이한 사유 또는 천재지변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A는 지급한 대금을 모두 반환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건 전세버스계약은 학생들을 특정 지역으로 수송하는 운송계약과 함께 1박을 대기하는 계약이 함께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민법 제674조의3에 따르면 여행자는 여행을 시작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지만 상대방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동법 제674조의4 제1항에 따르면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사유가 당사자 한쪽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의 국내여행표준약관 제13조 제2항, 제10조 제1항에 따르면, 여행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 출발 전에 ① 여행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여행자의 요청 또는 현지사정에 의하여 부득이하다고 쌍방이 합의한 경우, ② 천재지변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A는 여행을 시작하기 전이므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민법 제674조의3에 따라 상대방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는데, 약관에 위약금 약정을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A가 위약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해제사유가 민법 제674조의4 제1항에 따라 A의 과실이 아닌 부득이한 사유이거나, 위 약관에 따라 천재지변 등에 해당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코로나19 환자가 급격히 증가하여 대학의 개강이 연기되었다는 사정은 A의 과실이 아닌 정부 조치에 따른 것으로서, 누구라도 그 조치를 준수할 의무가 있으므로, A가 주장하는 사유는 과실에 의하지 않은 부득이한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A는 지급한 대금을 모두 반환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민법

제674조의3(여행 개시 전의 계약 해제) 여행자는 여행을 시작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여행자는 상대방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674조의4(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 ①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그 사유가 당사자 한쪽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398조(배상액의 예정) ①당사자는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다.
②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8조(손해배상액의 예정)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 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은 무효로 한다.

공정거래위원회 국내여행 표준약관

제10조(여행조건의 변경요건 및 요금 등의 정산) ①계약서 등에 명시된 여행조건은 다음 각 호의 1의 경우에 한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1. 여행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여행자의 요청 또는 현지사정에 의하여 부득이하다고 쌍방이 합의한 경우
2.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숙박기관 등의 파업·휴업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제13조(여행출발 전 계약해제) ②여행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전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상대방에게 제1항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1. 여행사가 해제할 수 있는 경우
 - 가.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사유의 경우
2. 여행자가 해제할 수 있는 경우
 - 가.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Q 05

계약취소(계약의 성립 여부)

A는 2020년 중국 국제박람회 참가하기 위해 2019년 말경 대행사인 B에게 참가신청서를 제출하고 부스를 예약하였습니다. 추가 협약서에 따르면 부스를 지정받은 후 참가취소가 되면 위약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A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위 박람회 참가를 취소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때까지 A는 추가 협약서에 서명날인을 하여 제출한 사정이 없고, 계약금도 지급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B는 A가 위약금을 내야 한다고 말하였습니다. A는 코로나19에 따라 계약을 취소하는 것인데 위약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박람회 #대행사 #계약의성립 #위약금

A

A와 B 사이에 계약의 성립에 관한 의사표시의 합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계약의 성립을 전제로 한 위약금은 문제되지 않아 보입니다.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을 것이 요구되고 있고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당해 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그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사항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의사의 합치가 있거나 적어도 장래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합의는 있어야 합니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51650 판결 참조).

사안의 경우 ① 추가 협약서에 위약금 등 계약의 중요사항이 정해져 있는데 위 추가 협약서에 A가 서명날인한 사실이 없는 점, ② A가 증약금의 성질을 가진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건대, A가 B에게 제출한 참가신청서만으로 A와 B 사이에 계약의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사항에 관해 구체적인 의사의 합치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A와 B 사이에 계약이 성립되지 않았고, 계약이 성립되지 않은 이상 계약의 성립을 전제로 한 계약취소나 위약금의 문제는 발생할 여지가 없습니다. 결국 A는 B에게 위약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Q 06

계약취소(손해배상액의 예정)

A는 2020년 중국 국제박람회에 참가하기 위해 2019년 말경 대행사인 B에게 참가신청서를 제출하고 부스를 예약하였습니다. 추가 협약서에 따르면 부스를 지정받은 후 참가취소가 되면 위약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A는 위 추가 협약서에도 서명날인하여 B에게 교부하였습니다. 한편 A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2020년 2월경 위 박람회 참가를 취소하기로 하였습니다. B는 A가 위약금을 내야 한다고 말하였습니다. A는 코로나19에 따라 계약을 취소하는 것인데 위약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박람회 #대행사 #위약금 #손해배상액예정 #부당과다

A

주최 측에서 코로나19를 이유로 국제박람회 개최를 일방적으로 취소한 것은 아니므로 코로나19가 확산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위약금 지급을 면책받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따라서 A가 그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위약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위약금이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 그 조항의 효력이나 위약금 감액을 다투어 볼 수 있습니다.

계약 성립의 기초가 된 사정이 현저히 변경되고 당사자가 계약의 성립 당시 이를 예견할 수 없었으며, 그로 인하여 계약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당사자의 이해에 중대한 불균형을 초래하거나 계약을 체결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준수 원칙의 예외로서 사정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

다249557 판결 참조).

A는 계약의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사항이 정해져 있는 추가 협약서에 서명날인하였으므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주최 측에서 코로나19를 이유로 국제박람회 개최를 일방적으로 취소한 것은 아니므로 코로나19가 확산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위약금 지급을 면책받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따라서 A가 그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계약 내용에 따라 위약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위약금이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에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8조 규정에 의해 그 조항이 무효가 될 수 있고, 민법 제398조에 따라서 법원이 감액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부당히 과다한 경우'라고 함은 ① 채권자와 채무자의 각 지위, ② 계약의 목적 및 내용, ③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동기, ④ 채무액에 대한 예정액의 비율, ⑤ 예상 손해액의 크기, ⑥ 그 당시의 거래관행 등 모든 사정을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일반 사회관념에 비추어 그 예정액의 지급이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채무자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여 공정성을 잃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1993. 1. 15. 선고 92다36212 판결 참조).

따라서 A는 계약 내용에 따라 계약 취소에 따른 위약금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그 위약금이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 그 조항의 효력이나 위약금 감액을 다투어 볼 수 있습니다.

(사안의 당사자가 한국회사와 중국회사인 경우, 준거법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8조(손해배상액의 예정)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 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은 무효로 한다.

민법

제398조(배상액의 예정) ①당사자는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다.
②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

Q 07

예식장 계약 해제와 위약금

A는 B와 결혼을 하기 위해 예식장을 예약하였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일단 예식장 계약을 해제하고 코로나19가 잠잠해지면 다시 결혼식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위약금 없이 예식장 계약을 해제할 수 있나요?

#예식장계약 #계약해제 #위약금 #환불

A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예식예정일 90일 전까지 계약해제를 통보한 경우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그 이후 통보한 경우는 일정 비율의 위약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예식장이용 표준약관 제12조 제2항에 따르면, 이용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계약에서 정한 예식일시에 예식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계약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제3조 [별표2]에 따르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의 경우 ① 예식예정일 90일 전까지 계약해제를 통보한 경우 계약금 환급, ② 예식예정일 60일 전까지 계약해제를 통보한 경우 총 비용의 10% 배상, ③ 예식예정일 30일 전까지 계약해제를 통보한 경우 총 비용의 20% 배상, ④ 예식예정일 29일 이후 35%를 배상해야 합니다.

코로나19 확산이 공정거래위원회 예식장이용 표준약관 제12조 제2항 규정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것인지는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A는 예식예정일 90일 전까지 계약해제를 통보한 경우가 아니라면 위약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예식장이용 표준약관

제12조(면책) ②이용자는 천재지변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계약에서 정한 예식일시에 예식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계약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제3조(품목 및 보상기준) 이 고시에서 정하는 대상품목, 품목별분쟁해결기준, 품목별 품질보증 기간 및 부품보유기간, 품목별 내용연수표는 각각 별표 I, 별표 II, 별표 III, 별표 IV와 같다.

〈별표 II〉 품목별 해결기준

32. 예식업(1개 업종)

분쟁유형	해결기준
2)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 예식예정일 90일 전까지(~90) 계약해제 통보 시 - 예식예정일 60일 전까지(89~60) 계약해제 통보 시 - 예식예정일 30일 전까지(59~30) 계약해제 통보 시 - 예식예정일 29일 이후(29~) 계약해제 통보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약금 환급 • 총 비용의 10% 배상 • 총 비용의 20% 배상 • 총 비용의 35% 배상

Q
08

민간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 유권해석 (코로나19와 불가항력)

국토교통부는 2020년 2월 8일 민간건설현장에서 코로나19 확산방지와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는 한편, 건설사업자의 경영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민간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 유권해석을 발표하였습니다.

#코로나19 #불가항력 #forcemajeure #표준도급계약서

A

국토교통부 보도자료는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뉴스·소식-해명자료-건설 부분(등록일 2020년 2월 28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계약당사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기 위하여 건설공사의 도급 및 건설사업관리위탁에 관한 표준계약서(하도급의 경우는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권장하는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포함한다. 이하 “표준계약서”)의 작성 및 사용을 권장하여야 합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민간 발주자와 건설사업자 간의 공정한 계약을 위하여 표준적인 계약내용과 계약조건을 고시하고 있는데, 2020년 2월 28일에는 코로나19에 대응하여 민간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에 대한 유권해석을 발표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코로나19 대응상황을 민간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 제17조에 따른 '전염병 등 불가항력의 사태로 인해 계약이행이 현저히 어려운 경우'로 유권해석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민간 건설공사 발주자와 건설사업자가 표준도급계약서를 기초로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① 확진자 또는 의심환자 발생 등 현장여건과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건설사업자는 민간 발주자에게 공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고 발주자는 요구받은 즉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계약기간 연장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고,

② 공기가 연장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공기 등을 토대로 계약금액이 조정되어 산출내역서상의 요율에 따라 일반관리비와 이율 등이 변경된다. 수급불균형으로 자재 등의 가격변동이 큰 경우(잔여공사 공사금액이 3% 이상 변동)에도 이를 반영하여 계약금액이 조정되며,

③ 또한, 동 공기 연장기간에 대해서는 지체상금을 부과할 수 없고 수급인이 공사를 완성하였다면 코로나19 비상상황이 해제된 날부터 3일까지 준공검사 기한이 연장됩니다.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공기 연장, 공사 중단 등에 대하여 발주자와 계약당사자 간의 분쟁이 있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69조에 따른 건설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하여 신속하게 분쟁을 중재하겠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원칙) ③국토교통부장관은 계약당사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기 위하여 건설공사의 도급 및 건설사업관리위탁에 관한 표준계약서(하도급의 경우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권장하는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를 포함한다. 이하 “표준계약서”라 한다)의 작성 및 사용을 권장하여야 한다.

제69조(건설분쟁 조정위원회의 설치) ①건설업 및 건설용역업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건설분쟁 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위원회는 당사자의 어느 한쪽 또는 양쪽의 신청을 받아 다음 각 호의 분쟁을 심사·조정한다.

1. 설계, 시공, 감리 등 건설공사에 관계한 자 사이의 책임에 관한 분쟁
2. 발주자와 수급인 사이의 건설공사에 관한 분쟁.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해석과 관련된 분쟁은 제외한다.
3. 수급인과 하수급인 사이의 건설공사 하도급에 관한 분쟁. 다만,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사항은 제외한다.
4. 수급인과 제3자 사이의 시공상 책임 등에 관한 분쟁
5. 건설공사 도급계약의 당사자와 보증인 사이의 보증책임에 관한 분쟁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분쟁

CHAPTER
02

교육

01. 저작권법 위반 방지를 위한 사전조치
02. 저작권법에 의한 출처표시방법
03. 저작권법에 의한 타인의 저작물 사용방법
04. 온라인 동영상 강의 SNS 공유행위와 저작권법 위반
05. 국공립 어린이집·유치원 및 사립유치원 교원의 겸직금지의무
06. 대학교 신입생의 휴학 가능성
07. 학교 입학 연기 시 통학버스 용역비 지급 여부
08. 학원의 손해배상책임
(코로나19 확진자인 학원 강사 또는 수강생으로부터 감염된 경우)
09. 대학교 등록금 환불 또는 일부반환
 - 09-1. 온라인 수업 진행, 수업 일수 부족으로 인한 학습권 침해 여부
 - 09-2. 온라인 수업, 수업 질 저하로 인한 학습권 침해 여부
10. 학원 교습비 등 환불 또는 일부반환

Q 01

동영상 강의 수업자료 재배포 등 저작권법 위반 방지를 위한 사전조치

A는 교육자입니다. A는 코로나19로 인해 대면수업을 대체하여 비대면수업의 방법으로 온라인 교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A는 동영상 강의를 통해 공개되는 수업자료가 수강생들을 통해 재배포되는 등의 방법으로 혹시 저작권법에 저촉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그렇다고 프리웨어자료(공개자료)만 사용하거나 기술적으로 해결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A가 제3자에 의한 저작권법 위반 방지를 위해 취할 수 있는 사전조치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온라인교육 #동영상강의 #저작권 #재배포 #사전조치

A

A는 동영상 강의(수업자료 포함)가 재배포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내 문구를 기재하고, 접근대상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안내문구 예시) “본 강의에 포함된 저작물들은 저작권법 제25조(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에 의하여 수업 목적으로 허용된 범위 안에서만 수강생들에게 제공되는 것입니다. 그 범위를 초과하여 위 저작물들이 이용될 경우 저작권 침해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 저작물들의 저작권자의 승인 없이 복사, 녹화, 복제, 배포, 재출판, 다운로드, 게시, 전송 등의 방법을 통해 수업과 관련 없는 사람 또는 단체와 수업 자료를 공유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접근제한조치: 온라인에 동영상 강의를 업로드하는 경우, 아이디, 비밀번호 등을 통해 수강생만 접근할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습니다. 업로드는 가급적 웹상 공유 드라이브 또는 특정(내부) 포털사이트를 이용하는 게 좋습니다.

저작권법

제25조(학교교육 목적 등의 이용) ①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이하의 학교의 교육 목적 상 필요한 교과용도서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게재할 수 있다.

Q 02

타인의 저작물을 강의 자료에 포함할 경우, (1) 저작권법에 의한 출처표시방법

A는 동영상 강의를 준비하면서 고민이 생겼습니다. 수업 특성상 다양한 수업자료를 사용하는데, 타인의 저작물을 강의 자료에 포함할 경우 저작권법에 저촉되지 않는 방법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출처를 표시해야 한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주변 동료들에게 물어봐도 타인의 저작물의 유형에 따라 혹은 어떤 방식으로 출처를 표시해야 법에 위반되지 않는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의한 타인의 저작물 출처표시방법은 무엇일까요?

#온라인교육 #동영상강의 #(타인의)저작물 #저작권법 #출처표시

A

타인의 저작물을 수업자료로 활용하는 경우, B는 출처를 명시할 의무가 있으며 출처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해야 합니다(저작권법 제37조 제2항).

저작권법 제37조 제2항을 준수하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이란, 문서의 경우 저자명, 서적명, 출판사, 발행연도, 쪽 등을, 웹사이트의 경우 웹사이트 URL(인터넷주소), URL 열람일자 등을, 사진의 경우 촬영자와 URL 등을 기재하는 것입니다.

만일 동영상을 인용할 경우, 인용 여부를 명확히 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영상을 사용되는 곳마다 출처표시를 해주어야 하는데 제작자 또는 제작사, 제목, 방송일자, URL, 열람일자 등을 표시합니다.

플랫폼(유튜브 등)의 경우 플랫폼이나 업로드한 자가 아니라 영상의 저작권자를 표시하는 것이 올바른 출처표시방법입니다. 일반적으로 플랫폼에 업로드 된 영상의 화면 또는 영상 하단에는 저작권자를 나타내는 로고 등 표시가 있으므로 이를 출처로 표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저작권법 제37조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는 같은 법 제138조 제2호에 따라 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37조(출처의 명시) ①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Q 03

타인의 저작물을 강의 자료에 포함할 경우, (2) 저작권법에 의한 사용방법

A는 코로나19로 인해 현장강의를 온라인으로 전환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동영상 강의에 차츰 적응해 나가고 있지만, 아직도 시행착오가 많습니다. 특히, A는 타인의 저작물을 활용하는데 있어서 항상 저작권법에 위반되지는 않을까 노심초사합니다. 타인의 저작물을 어느 정도로 사용할 수 있는지, 공개 자료를 사용하는데 별다른 제약이 없는지, 주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지 등 저작권법을 준수하는 사용방법이 궁금합니다.

#온라인교육 #동영상강의 #(타인의)저작물 #저작권법 #사용방법

A

저작권법 제25조 제3항 본문에 따라, 타인의 저작물을 수업자료로 활용하는 경우 수업을 목적으로 사용하더라도 일부분만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한 자료마다 반드시 사용기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저작권법 제25조 제3항 단서에 의하면, 타인의 저작물은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저작물의 전부를 이용하는 것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작자의 허락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저작물이 아닌 경우, 수업 목적상 허용되는 저작물 이용 요건을 충족하지 않거나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저작권자로부터 사전에 개별 이용허락을 받아야 하고 저작물 보상금 수령 단체(한국음악

저작권협회,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 등)가 있다면 해당 단체에 문의하여 정해진 절차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고 승인을 받은 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무료 공공저작물의 경우에도 자유이용 출처표시 기준을 준수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동영상 강의는 외국에서도 시청이 가능하므로 해당 국가의 저작권법을 준수할 것이 요구됩니다.

외국 저작물의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 저작권자의 이용허락을 얻거나 자문을 거쳐 외국 저작권법상의 공정이용 기준을 개별적으로 확인할 것이 요구됩니다.

저작권법

제25조(학교교육 목적 등의 이용) ②특별법에 따라 설립되었거나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교육기관 및 이들 교육기관의 수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교육지원기관은 그 수업 또는 지원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을 복제·배포·공연·전시 또는 공중송신할 수 있다. 다만,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저작물의 전부를 이용하는 것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부를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3. 12. 30.>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자는 수업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항의 범위 내에서 공표된 저작물을 복제하거나 전송할 수 있다.

Q 04

원격 수업을 통해 제공받는 학습 영상을 SNS 등에 공유할 수 있는지 여부

A는 영상 콘텐츠 제작에 관심이 많은 대학생입니다. 비슷한 관심사를 갖고 있는 사람들과 모임도 진행하고 있으며, 영상 제작과 편집을 배우기 위해 관련 수업을 수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해 수업이 온라인 교육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실습하면서 직접적인 피드백을 받을 수 없어서 아쉽지만, 한편으로는 모임에 학습 영상을 공유해서 좋은 정보교류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A는 SNS 등에 자신이 수강하는 수업의 영상을 공유해도 되나요?

#온라인교육 #동영상강의 #학습영상 #SNS공유 #저작권

A

복사·녹화·복제·배포·재출판·다운로드·게시·전송 등의 방법을 통해 수업과 관련 없는 사람 또는 단체에게 온라인 학습을 위해 제공된 동영상 강의를 공유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동영상 강의를 수강생 외 사람 등에게 공유하는 경우 저작권자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습니다. 민사상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저작권자로부터 승인을 받았거나 같은 법 제30조에 따라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복제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동영상 강의에 포함된 수업자료의 저작권자는 다른 사람일 수 있고 SNS 등에 이미 공유된 게시물을 재공유하는 경우 원 게시물의 공유가 불법일 수도 있으므로 SNS 등에 공유하는 것은 특히나 각별한 주의를 요합니다.

저작권법

제30조(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6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Q 05

어린이집·유치원 교사의 겸직 가부

A는 유치원 교사입니다.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인해 어린이집·유치원의 개원이 무기한 연기됨에 따라 A는 유치원 원장님으로부터 당분간 출근하지 않아도 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
다.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이어서 휴업수당도 지급받지 못하고 고용유지지원금도 신청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A는 아르바이트라도 구하지 않고서는 생계가 막막한 상황이어서 유치원을 그만두지 않은 채로 다른 일을 구해도 문제가 없는지 자문을 받고 싶습니다.

#무기한개원연기 #휴업수당 #고용유지지원금 #생계 #아르바이트

A

국공립 어린이집·유치원 및 사립유치원 교원의 경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따르도록 하고 있으므로 영리목적의 겸직이 금지되고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습니다.

사립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경우, 근로계약서와 내규상 겸직을 금지하는 내용이 없다면 겸직행위로 인해 근로계약상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 아닌 이상 겸직이 가능합니다.

국가공무원법 제64조 제1항의 적용을 받는 국공립 어린이집·유치원 및 사립유치원 교원의 경우, 겸직금지업무 위배 시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시근로자 수 5인 이하의 소규모 사립 유치원 교원에 대해서는 원장이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거나 무기한 개원 연기가 계속되는 한도 내에서 검직하는 일시적 근로를 인정하는 예외가 인정될 수 있도록 하여 코로나19로 인한 예기치 못한 상황을 상호 협력해나갈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할 것입니다.

국가공무원법

제64조(영리 업무 및 검직 금지) ①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②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한계는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개정 2015. 5. 18.>

[전문개정 2008. 3. 28.]

Q 06

새내기 대학생이 첫 학기 휴학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A는 이번에 B대학에 입학하게 된 새내기 대학생인데 코로나 19로 상황이 어수선하고 양질의 교육을 제공받지 못할 것 같아 첫 학기를 휴학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B대학에서는 학칙에 따라 신입생의 경우 첫 학기 휴학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A는 첫 학기 휴학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대학신입생 #코로나19 #휴학

A

쉽지는 않겠지만 휴학신청을 하고 B대학에서 거부 시 거부처분 취소소송 등으로 다들 여지는 있겠습니다.

고등교육법 제6조(학교규칙)에 따르면 “①학교의 장은 법령의 범위에서 학교규칙(학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수 있고, ②학칙의 기재사항, 제정 및 개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고, 동 시행령 제4조(학칙)에는 학칙에 입학, 재·편입학, 휴·복학 등과 수업료·입학금 기타의 비용징수 등을 기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학칙의 법적 성질에 대하여 국공립대학의 경우 학칙을 구속성을 인정하며 사립대학의 경우에도 그 내용이 법령에 위배되거나 학교교육의 본질에 반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력을 가진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8. 11. 10 선고 96다37268 판결 등 참조).

한편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3조 제4항에 따르면 “휴학자에 대하여는 휴학기간 중의 등록금(입학금은 제외한다)을 면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면 B대학 학칙에 휴학과 휴학 시 등록금 면제(입학금은 제외)가 규정되어 있고, 나아가 신입생의 경우 휴학이 불가하다는 규정이 있을 가능성이 큼니다. 그런데 위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신입생의 경우 입학금은 납입해야 하지만 휴학자체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국공립대학의 경우 휴학신청을 하고 거부 시 거부처분에 대하여 거부처분취소소송 및 집행정지신청을 할 수는 있을 것으로 봅니다. 나아가 위 학칙에 대한 위헌위법명령심사를 제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한편, 사립학교의 경우라면 위 학칙의 적용중지가처분 등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개인적으로 법적 다툼을 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므로 우선 B대학의 학칙을 검토한 후 학교 측과 집단적 협의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고등교육법

제6조(학교규칙) ①학교의 장(학교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해당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를 말한다)은 법령의 범위에서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수 있다.

②학칙의 기재사항, 제정 및 개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7. 21.]

고등교육법시행령

제4조(학칙) ①법 제6조에 따른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6. 1. 13., 2014. 12. 16., 2018. 5. 28.>

3. 입학, 재·편입학, 휴·복학, 모집단위간 이동 또는 전과·자퇴·체적·유급·수료·졸업 및 징계
7. 등록 및 수강 신청
13. 수업료·입학금 기타의 비용징수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3조(등록금의 면제·감액) ④휴학자에 대하여는 휴학기간 중의 등록금(입학금은 제외한다)을 면제한다. <개정 2010. 12. 2.>

Q
073월 한 달 휴학 시 통학버스 용역비 지급
가부

A초등학교는 B운송업체와 2020년 3월 1일부터 2021년 2월 28일까지 1년간 통학버스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로 3월은 통학버스 운영을 하루도 하지 못한 상태인데 B운송업체에서는 3월분의 버스용역비의 지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통학버스운송계약 #코로나19 #휴학 #통학버스미운영 #운송비지급

A

1년 총액계약을 하여 용역비를 12개월로 균등분할하기로 했다면 3월분 용역비를 지급해야 할 것이고, 매월 운행일수만큼 정산하여 매월 지급하기로 했다면 지급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우선 A초등학교와 B운송업체 사이에 체결된 운송계약을 자세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1년 총액계약을 하여 용역비를 12개월로 균등분할하기로 한 것이라면 3월에 버스운행을 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3월분 용역비를 지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비록 1년 총액계약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매월 운행일수만큼 정산하여 매월 지급하기로 했다면 3월에는 쌍방의 귀책사유 없이 차량운행을 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민법 제537조(채무자위험부담주의)

에 따라서 B운송업체는 운행요금을 청구하지 못할 것입니다. 즉 쌍방의 귀책사유가 없이 버스운행을 하지 못한 것이므로 반대급부인 버스용역비도 청구할 수 없겠습니다. 즉, A초등학교는 버스용역비의 지급을 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다만, 운송계약서상에 '기타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라는 규정이 있다면 세계적인 팬데믹(감염병 대유행) 상황을 고려하여 상호 협의하여 일정부분 금액의 지급을 정해도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Q
08

학원에서 코로나19 확진사실을 모르고 강의한 강사나 다른 수강생으로부터 코로나19에 전염되어 확진자가 된 수강생이 학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A학원의 B강사는 자신이 코로나19에 확진된 사실을 모르고 강의하다가 수강생 C에게 코로나19를 감염시켰습니다. 또 다른 확진자인 수강생 D는 옆에 앉은 다른 수강생 E에게 감염시켰습니다. 이때 수강생 C와 E는 A학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학원 #강사확진자 #코로나19감염 #수강생 #손해배상

A

A학원에서 체온계나 마스크 착용, 손세정제 등의 위험 제거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C나 E수강생은 A학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선 학원과 수강생의 법률관계는 사법상 계약에 따른 법률관계로 학원은 수강생의 생명, 신체, 건강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교육장소의 물적 환경을 정비하여야 하고, 수강생이 교육을 받는 과정에서 위험 발생의 우려가 있을 때에는 미리 위험을 제거할 수단을 마련하는 등 합리적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학원이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하여 수강생의 생명, 신체, 건강 등을 침해하여 손해를 입힌 때에는 불완전이행으로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문제가 된 감염발생과 학원계약에 따른 수강활동 사이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련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학원장이나 강사가 감염이 수강활동에서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예견하였거나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사고 위험을 미리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못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예견가능성은 수강활동의 때와 장소, 수강활동의 종류와 성질, 당해 사고와 관련된 수강활동 참여자들의 분별능력과 성행, 피해 수강생과의 관계 기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18. 12. 28 선고 2016다33196 판결 등 참조).

이 사안의 경우 B강사 또는 D수강생이 코로나19 감염자라면, C나 E수강생의 수강활동과 피해발생 사이에 관련성이 인정되고, 최근의 대량 감염상태에 비추어 예견가능성도 인정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A학원이 미리 체온계나 마스크 착용, 손세정제 등의 위험 제거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C나 E수강생은 A학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Q

09-1

대학교 온라인 수업 진행, 수업 일수 부족으로 인한 기납부 등록금의 반환 거부

대학생인 A는 코로나19로 인해 개강이 연기되고 온라인 수업으로 대체되어 대학 등록금을 일부라도 반환받고 싶습니다. 수업 일수가 줄어드는 만큼 학습권이 침해되었다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등록금 환불 혹은 일부 반환이 가능한가요?

#대학개강연기 #온라인수업 #동영상강의 #대학등록금환불
#대학등록금일부반환

A

현행법상 대학 등록금 환불 혹은 일부 반환이 불가능합니다.

고등교육법 제11조 제10항,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3조 제5항은 “학교의 수업을 전학기 또는 전월의 전기간에 걸쳐 휴업한 경우에는 등록금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해 개강을 2주 연기하고, 그 이후 기간은 등교에 의한 집합 수업 대신 원격 수업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전학기 또는 전월에 걸친 휴업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등록금 면제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한편, 고등교육법시행령 제11조는 “대학의 수업일수를 매 학년도 30주 이상으로 정하되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교육과정의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 학칙으로 매 학년도 2주 이내에서 학교의 수업 일수를 감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학이 정부의 4주 이내 개강 연기 권고에 따라 1~2주 개강을 연기한 것은 이 규정에 따른 것으로 법적인 문제가 없습니다.

또한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 제3호는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등록금의 납입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등록금을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를 천재지변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대학의 재량에 따라 등록금을 감액할 수 있을 뿐 강제로 감액을 요구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고등교육법

제11조(등록금 및 등록금심의위원회) ⑩제1항의 등록금의 징수, 제2항의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및 제8항의 행정적·재정적 제재 등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9. 15., 2013. 3. 23.>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1조(수업일수) ①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수업일수는 학교의 수업일수와 교과별 수업일수로 구분하여 정한다.

②제1항에 따른 학교의 수업일수는 매 학년도 30주 이상으로 정한다.

③학교의 장은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교육과정의 운영상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에 따른 학교의 수업일수를 충족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학년도 2주 이내에서 학교의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다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3조(등록금의 면제·감액) ①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등록금을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2.>

3.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등록금의 납입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등록금을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

⑤학교의 수업을 전학기(前學期) 또는 전월(前月)의 전기간(全期間)에 걸쳐 휴업한 경우에는 방학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학기 또는 해당 월의 등록금(입학금은 제외한다)을 면제한다. <개정 2010. 12. 2.>

Q

09-2

대학교 온라인 수업 진행, 수업 질 저하로 인한 기납부한 등록금의 반환 가능 여부

대학생인 A는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는 중에 서버가 터지고 양질의 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문제로 대학 등록금을 일부라도 반환받고 싶습니다. 양질의 수업을 받을 수 없는 만큼 학습권이 침해되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등록금 환불 혹은 일부반환이 가능한가요?

#온라인수업 #동영상강의 #수업질저하 #대학등록금환불
#대학등록금일부반환

A

현행법과 대법원 판례 태도에 따르면, 대학교 수업의 온라인 진행 및 수업 질 저하를 이유로 A가 등록금을 환불 또는 일부반환 받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교육기본법 제12조 제2항은 “교육내용·교육방법·교재 및 교육시설은 학습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개성을 중시하여 학습자의 능력이 최대한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마련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6조 제1항은 “학교와 사회교육시설의 설립자·경영자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을 위한 시설·설비·재정 및 교원 등을 확보하고 운용·관리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8. 7. 20. 선고 2016다34281 판결은 대학 측이 학생들에게 등록금을 환불하도록 한 첫 판례입니다. 학생들은 위 법률 규정을 근거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대법원은 대학교의 시설, 설

비의 미비 정도가 객관적으로 현저하고 학생들이 대학교를 선택할 당시의 기대나 예상에 미달함으로써 학생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었으므로 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위 판결을 코로나19에 따른 등록금 반환 문제에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① 현재 실시하는 온라인 강의의 질이 상대적으로 떨어진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증명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② 위 B대학교의 경우 등록금을 받아 적립금이나 이월금 명목으로 재단에 쌓아둔 불법행위가 인정된 사정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예외 없이 모든 대학이 온라인 강의를 실시할 수밖에 없는 기본적 사실관계를 고려하면 일반적인 경우, 기납부한 등록금의 환불 또는 일부반환에 대한 법적구제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교육기본법

제12조(학습자) ①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교육 또는 사회교육의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된다.

②교육내용·교육방법·교재 및 교육시설은 학습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개성을 중시하여 학습자의 능력이 최대한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마련되어야 한다.

제16조(학교 등의 설립자·경영자) ①학교와 사회교육시설의 설립자·경영자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을 위한 시설·설비·재정 및 교원 등을 확보하고 운용·관리한다.

②학교의 장 및 사회교육시설의 설립자·경영자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습자를 선정하여 교육하고 학습자의 학습성과 등 교육의 과정을 기록하여 관리한다.

③학교와 사회교육시설의 교육내용은 학습자에게 미리 공개되어야 한다.

Q 10

학원 휴강, 온라인 수업 전환 및 자가격리를 이유로 한 수업료 환불 가능 여부

1. A는 자격증 시험 준비를 하는 학생인데 코로나19로 인해 학원이 휴강하게 되면서 수업을 듣지 못했고 이후 온라인 수업으로 대체되면서 원하는 현장 강의를 수강할 수 없었습니다. A는 학원 수업료를 환불받고 싶은데 수업료 환불 혹은 일부라도 반환이 가능한가요?
2. 한편 A가 자가격리된 경우 다른 반환기준이 있나요?

#휴원 #학원온라인수업 #자가격리학원수업료 #학원수업료환불
#학원수업료일부반환

A

현행법상 학원 수업료 환불 혹은 일부 반환이 가능합니다.

우선 학원의 범위에 관하여,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 시행령 제3조의3 제1항 [별표2]에 따르면 학교교과 교습학원, 평생직업 교육학원 모두 학원에 해당하고 학원인 경우에만 학원법이 적용됩니다.

학원법 제18조, 학원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은 각 호에 교습비용의 반환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데, 학습자가 학원으로부터 격리된 경우(감염병에 관한 조치)뿐만 아니라(제1호),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학습을 포기한 경우에도 이에 해당합니다(제3호).

코로나19로 인한 자가격리자의 경우(학원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 제1호), 학원법 제18조, 학원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 [별표4] 반환기준에 따르면, “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 - (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을 일할계산한 금액 × 교습 시작일 또는 학습장소 제공 시작일부터 격리된 날의 전날까지 일수)”만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의사로 학습을 포기한 경우라면(학원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 제1호 제3호), 아래 학원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 [별표4]의 기준에 따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개정 2020. 3. 31.>

교습비 등 반환기준(제18조 제3항 관련)

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1. 제18조 제2항 제1호의 반환사유에 해당 하는 경우		학습자가 학원으로부터 격리된 날	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 - (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을 일할계산한 금액 × 교습 시작일 또는 학습장소 제공 시작일부터 학원으로부터 격리된 날의 전날까지의 일수)		
2. 제18조 제2항 제1호의2 및 제2호의 반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학원설립·운영자,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가 교습을 할 수 없거나 학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 - (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을 일할계산한 금액 × 교습 시작일 또는 학습장소 제공 시작일부터 교습을 할 수 없거나 학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의 전날까지의 일수)		
3. 제18조 제2항 제3호의 반환 사유에 해당 하는 경우	가. 교습기간 또는 학습장소 사용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1) 독서실을 제외한 학원, 교습소 및 개인 과외교습자의 경우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날	교습 시작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의 전액
				교습 시작 후부터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전까지	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후부터 1/2 경과 전까지	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후	없음
	2) 독서실의 경우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학습장소 사용을 포기한 날	학습장소 사용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의 전액	
			학습장소 사용 후	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 - (법 제15조 제3항 전단에 따라 게시된 1일 교습비 등 × 학습장소 사용 시작일부터 학습장소 사용을 포기한 날의 전날까지의 일수)	

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나. 교습기간 또는 학습장소 사용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 또는 학습장소 사용을 포기한 날	교습 시작 전 또는 학습장소 사용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의 전액
			교습 시작 후 또는 학습장소 사용 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 대상 교습비 등(교습기간 또는 학습장소 사용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에 나머지 월의 교습비 등의 전액을 합산한 금액
<p>비고</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총 교습시간은 교습기간 중의 총 교습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교습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원격교습의 경우 반환금액은 교습내용을 실제 수강한 부분(인터넷으로 수강하거나 학습기기로 저장한 것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CHAPTER 03

근로 관계

01. 근로자 자가격리 시 유급휴가 보장 여부
02. 회사의 영업 차질로 휴업하게 된 경우 휴업수당 지급 여부
03. 코로나19로 급여를 받지 못해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 실업급여 지급 여부
04. 코로나19로 인한 사용자의 연차휴가 우선사용 문제
05. 감염자에 대한 임금처리 및 매출감소 시 임금삭감 문제
06. 사용자의 연차휴가 사용 강요 또는 연차휴가 사용 거부
07. 사업주 자체판단으로 자택대기 및 휴업을 하는 경우 급여지급 문제
08. 코로나19에 따른 매출감소를 이유로 한 무급휴직
09. 근로자 희망에 따른 재택근무를 차별적으로 시행하는 문제
(특정부서나 특정근로자에게는 출근을 요구하는 경우)
10. 코로나19 창궐 지역으로 전직·전보된 경우 근로자의 대응방안
11. 코로나19로 인한 권고사직 및 해고
12. 코로나19로 인한 명예퇴직 신청 및 정리해고
13. 코로나19로 인한 퇴직 및 퇴직금의 평균임금 계산
14. 코로나19 대응 정부정책 소개
(고용유지지원금·가족돌봄비용지원·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지원·무급휴직
신속지원제도 개요)
15. 근로자가 코로나19에 감염된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 여부
 - 15-1.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코로나19에 감염된 경우
 - 15-2. 근로자가 출·퇴근 또는 회사의 회식·행사 중 코로나19에 감염된 경우
16. 채용결정 이후 출근 대기 기간 중 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한 법률관계

Q 01

근로자 자가격리 시 유급휴가 보장 여부

최근 A는 코로나19 의심 증상으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자가격리되어 직장에 출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생계가 걱정된 A는 “국가의 천재지변에 준하는 코로나19로 인해 출근할 수 없는 것으로 회사 측에서 유급휴가를 보장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반면 회사 측에서는 “사용자 측의 귀책사유와 무관한 것으로 유급휴가를 보장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1. A는 유급휴가를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2. 만일 A가 개인적인 여행, 활동, 집회·예배참가 등으로 전염되어 자가격리된 경우라면 어떠한가요?

#코로나19 #자가격리 #유급휴가 #천재지변

A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유급휴가를 보장 받을 수 없으나, 국가로부터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받는 경우에는 반드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의2 제1항은 “감염병으로 입원 또는 격리가 되는 노동자에 대하여 사업주는 유급휴가를 줄 수 있다고 정하고, 국가로부터 유급휴가를 지원받는 경우에 반드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A가 코로나19로 자가격리된 경우라도 회사 측이 반드시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회사가 국가로부터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받고 있다면 반드시 유급휴가를 보장해야 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 관할 지방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행정적으로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지침(2020. 1. 31.)」에 따르면 “관련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사업장의 설정에 맞게 연차휴가 외 추가 휴가·휴직 등 허용하도록 하여 이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한다.”고 하여 연차휴가의 사용을 강제하지 않고 되도록 유급휴가를 주도록 장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혹은 노동조합과 별도의 노사합의로 별도의 유급휴가 보장을 검토할 수도 있습니다.

보론으로서, 이는 근로자의 개인적인 활동이 원인이 되어 자가격리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강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의2(사업주의 협조의무) ①사업주는 근로자가 이 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 외에 그 입원 또는 격리기간 동안 유급휴가를 줄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가 국가로부터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 받을 때에는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Q 02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원자재, 부품 수급 차질로 휴업한 경우 휴업수당 지급 여부

A가 재직 중인 회사는 최근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물류 및 인력의 이동이 제한되자 원자재·부품·도급 등 공급·수급의 차질이 발생하였고 작업이 더 이상 불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이를 이유로 휴업을 한 경우 근로자 A는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신종코로나 #원자재수급차질 #휴업수당 #근로자구제

A

경영상의 이유로 휴업할 경우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인정된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노동위원회의 조정으로 휴업수당의 감액이 가능합니다(이는 별도의 노사합의로도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노동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의 귀책사유는 민법상 귀책사유는 물론 경영상 장애 등까지 포함된 ‘보다 넓은 의미의 귀책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원자재·부품·도급 등 공급·수급의 차질이 생겨 휴업을 하는 경우 이는 회사 측이 부담하는 위험범위 내에 있는 귀책사유로서 사업상 이유 또는 경영상 장애에 해당하는 바, 위 사유로 휴업을 한 경우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46조 제2항에 따라서 회사는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휴업수당을 감액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실제 중국인 단체관광 중단조치로 인해 중국 전담 여행사의 휴업 시 휴업수당이 전액 감액된 사례가 있습니다(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휴업1).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Q 03

코로나19로 급여를 제대로 받지 못해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 실업급여 지급 여부

근로자 A가 근무하는 회사는 장기간의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영상 어려움을 겪자 근로자 A에게 2월달 급여를 제대로 지급하지 못했습니다.

1. 근로자 A가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2. 만일, 이직확인서에 사실과 다르게 “일신상의 사유”로 자발적 퇴사하였다고 표기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신종코로나 #자발적퇴사 #실업급여 #임금체불

A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라도 임금체불이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하였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직확인서의 내용이 실제와 다를 경우 이직확인서 정정요청을 하여 정정 후 그 사유에 따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58조 제2호 다목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직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 1호 나목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A가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 일반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지만 2월달 급여에 대하여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있었고 그 이후에 퇴사를 하였다면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코로나19의 장기화로 퇴사하였음에도 이직확인서에 근로자의 “일신상의 사유”로 자발적 퇴사하였다고 거짓 표기된 경우 A는 근로복지공단에 이직확인서 정정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이직확인서 거짓 제출 시 사업주는 과태료 100만 원 부과). 정정 후 A는 최종적으로 등록한 이직확인서의 내용에 따라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외에, 자진해서 사직을 했다고 하더라도 다음의 사유가 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가. 2개월 이상의 휴업사실
- 나. 왕복 3시간 이상의 통근거리
- 다. 최저임금 미만의 사직인 경우
- 라. 질병으로 인한 사직인 경우(코로나19감염자, 의심자 등인 경우 포함)
- 마. 회사사정에 따른 권고사직인 경우

고용보험법

- 제58조(이직 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제40조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2.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피보험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다.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이직한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 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Q

04

코로나19로 인한 사용자의 연차휴가 우선사용 문제

코로나19로 학교와 유치원이 개학을 연기하자 근로자 A는 자녀를 직접 돌보기 위해서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하였습니다. 하지만 회사 측에서 연차휴가를 먼저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하나요?

#신종코로나 #개학연기 #가족돌봄휴가 #연차휴가강요

A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며 연차휴가의 사용을 사용자가 강요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휴가를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며,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연차휴가의 사용을 사용자가 강요하는 것은 근로자의 연차시가지정권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것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번 코로나19 관련 고용노동부 지침 또한 같은 취지로 “근로자의 의지와 관계없이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도록 강제 등은 불가”하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A가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에 따라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한 경우 사업주는 사업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사유가 없는 한 가족돌봄휴가를 허용하여야 하고 연차휴가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근로자는 이에 따를 필요가 없습니다. 사업주로서는 법의 규정에 따라 그 시기를 변경하도록 할 수 있는데, 그 사유는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정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근로자의 가족 돌봄 등을 위한 지원) ①사업주는 근로자가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이하 "가족"이라 한다)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식(이하 "가족돌봄휴식"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본인 외에도 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사업주는 근로자가 가족(조부모 또는 손자녀의 경우 근로자 본인 외에도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이하 "가족돌봄휴가"라 한다)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가족돌봄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신설 2019. 8. 27.)

Q 05

- ① 코로나19 감염자가 결근한 경우 임금처리
- ②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매출감소 시 임금삭감 문제

최근 근로자 A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었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입원·격리되어 회사에 출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매출하락이 이어져 재정이 어려운 사업주 B는 이를 이유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사업주 B는 임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코로나감염 #매출하락 #임금지급 #임금삭감 #임금체불

A

근로자가 코로나19에 감염되어 결근하게 된 경우 사업주는 국가가 지원하는 유급휴가비나 생활지원비 중 하나를 신청할 수 있고, 이에 따라서 사업주의 임금지급 의무가 달라질 것입니다. 다만 사업장 내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유급병가' 규정이 있는 경우 당해 규정의 내용에 따르면 됩니다. 또한 임금은 근로계약의 내용에 해당하므로 사용자의 일방적 임금삭감은 불가능합니다.

근로자가 코로나19에 감염되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원·격리된 경우 국가에서 유급휴가비 또는 생활지원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코로나에 감염되어 결근하는 경우 사업주는 '유급휴가비'를 신청하여 유급휴가비를 지원받아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할 수 있고, 또한 근로자가 '생활지원비'를 지급받도록 하여 사업주로 하여금 유급휴가비를 부여할 의무를 면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별도로 규정을 하고 있다면 이에 따르면 됩니다.

다음으로 임금은 근로조건에 중핵에 해당하는 것으로 근로기준법 제4조에 의해 근로자와 사용자가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해야 하는 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따른 동의를 받고 임금을 삭감한 경우라도 근로기준법 제96조 및 제97조 그리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3조에 따라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정한 임금 규정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조(근로조건에의 결정)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제96조(단체협약의 준수) ① 취업규칙은 법령이나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되는 단체협약과 어긋나서는 아니 된다.

제97조(위반의 효력)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관하여는 무효로 한다.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따른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3조(기준의 효력) ① 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의 부분은 무효로 한다.

Q 06

코로나19로 사용자가

- ① 연차휴가 사용을 강요할 수 있는지,
- ②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을 거부할 수 있는지

1. 코로나19가 장기간 지속되자 사업주는 사업장의 안전을 유지하고 혹시 모를 코로나19 감염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서 코로나19 미확진자(의심자)인 근로자 A와 감염우려자인 근로자 B에게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사업주가 연차휴가 사용을 강요할 수 있나요?
2. 또한 다른 근로자인 감염우려자 C가 자발적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 코로나 사태로 인한 비상상황을 이유로 연차휴가 사용을 거부할 수 있나요?

#코로나감염 #코로나예방 #연차휴가강요 #연차휴가거부

A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며 사용자가 연차휴가의 사용을 강요할 수 없습니다. 또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 뿐이고 연차휴가 사용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본문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휴가를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므로 근로자의 의지와 관계없이 강제

로 사용하도록 할 수 없고 방역당국의 대책이 아닌 사용자의 임의로 연차휴가를 부여한 경우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에 해당하므로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단서에 따르면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의 성질, 작업의 바쁜 정도, 동 시기 휴가청구자 숫자 등을 고려하여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경우에 휴가부여 시기를 조정하는데 그쳐야 하며, 휴가 자체를 부여하지 않는 것은 법 위반입니다.

결국 미확진자인 근로자 A와 감염우려자인 근로자 B에게 연차휴가의 시기지정권을 침해하여 연차휴가의 사용을 강요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본문에 위반하여 허용되지 않으며, 근로자 C가 자발적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 코로나19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될 때에 한해 연차휴가 사용 시기를 조정할 수 있을 뿐 연차휴가의 사용 자체를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Q 07

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 사업주의 자체판단으로 자택대기 및 휴업을 하는 경우 급여지급 문제

코로나19가 장기간 지속되자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 사업장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사업주 A가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근로자 B에게 자택대기나 휴업을 실시한 경우 급여를 지급하여야 하나요?

#코로나사태 #코로나확산방지 #급여지급 #자택대기및휴업

A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근로자가 입원 또는 격리된 경우가 아니라 사업주의 자체 판단으로 근로자를 자택 대기하거나 휴업하는 경우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가격리통지를 받지 않았음에도 근로자의 감염 가능성을 사업주가 임의로 판단하거나 감염을 의심하면서 출근을 금지할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임의로 자택대기나 휴업을 명한 경우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사업상 필요성보다 중대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근로기준법 제 23조 제1항에 따르는 휴업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출근하여 정상적으로 근로한 근로자이건 자택대기한 근로자이건 급여는 지급되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조사 대상 유증상자’가 아닌 경우 민법 제538조 제1항에 따라 임금전액을 지급하여야 하고, ‘조사 대상 유증상자’인 경우에는 출근 시 전염의 우려가 있으므로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에 따른 휴업수당을 주어야 합니다. 사업주는 휴업수당에 대하여 정부시책에 따른 보전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사업주 A의 자체판단으로 근로자 B에게 자택대기나 휴업을 명한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자 B가 ‘조사대상 유증상자’가 아니라면 임금전액을, ‘조사대상 유증상자’라면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제46조(휴업수당) ①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민법

제538조(채권자귀책사유로 인한 이행불능) ①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에 당사자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도 같다.

대법원 2016.10.27. 2015다5170 판결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지 못한다고 하여 해고를 제한하고 있으므로, 해고사유가 인정되더라도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된다(대법원 1998.11.10. 선고 97누18189 판결 등 참조). 이 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는 학위 논문 전체를 기준으로 한 연구부정행위의 정도, 사용자가 사전에 학위논문의 그와 같은 하자를 알았다더라면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거나 적어도 동일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으리라는 등 고용 당시의 사정뿐 아니라, 고용 이후 해고에 이르기까지 그 근로자가 종사한 근로의 내용과 기간, 학위 논문의 하자로 인하여 근로의 정상적인 제공에 지장을 초래하는지, 학위 논문의 하자가 드러남으로써 노사간 및 근로자 상호간 신뢰관계의 유지나 안정적인 기업 경영과 질서유지에 미치는 영향 그 밖에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Q
08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매출감소를 이유로 한 사용자의 무급휴직

코로나19가 장기간 지속되어 소비자들의 경제활동이 위축되자 사업주 A는 매출감소의 직격탄을 맞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매출감소로 인한 손해를 상쇄하고자 사업주 A는 직원들에게 무급휴직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사용자의 강제적 무급휴직이 가능한가요?

#코로나확산 #경영상어려움 #무급휴직 #강요

A

사용자가 매출감소, 판매부진 등 경영상 장애를 이유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 무급휴직을 실시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휴업에 해당하는 것이고 매출감소, 판매부진 등은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바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귀책사유는 민법상 귀책사유는 물론 매출감소, 판매부진 등 경영상 장애로 인한 경우도 사용자의 귀책에 포함되고 휴업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 취업이 거부되거나 불가능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사업주 A가 경영상 장애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서 무급휴직을 실시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볼 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을 실시하는 것으로 이 경우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매출감소, 판매부진 등이 지속되어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고회피 노력의 일환으로 고용조정이 아닌 노사합의를 통해 무급휴직을 실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최근 매출감소를 이유로 정리해고가 가능할 것인지 등에 대해 논의가 확대되고 있음도 확인하여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부의 공식 입장은 가급적 고용을 유지하는 것으로 권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Q
09근로자의 희망에 따른 재택근무를
실시하면서, 다른 특정부서나 특정근로자
에게만 출근 요구

사업주 A는 코로나19가 장기간 지속되자, 사업장의 위험을 예방하고자 근로자들이 희망하는 경우 재택근무를 할 수 있도록 방침을 정하였으나, 업무의 특수성이나 작업방식을 고려하여 특정 부서와 특정근로자들에게는 실질적으로 출근을 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출근 요구를 받은 부서나 근로자는 위법함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코로나사태 #재택근무 #출근요구 #업무특수성

A

재택근무와 관련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의 규정이 있다면 이를 준수하여 재택근무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근로자의 건강 보호가 아니라 회사의 배려차원에서 재택근무가 일부 실시되는 것이라면 일부 근로자나 부서에 대한 재택근무 제한 자체가 법 위반은 아닙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예방을 위하여 회사가 재택근무를 실시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회사 내에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불가피한 상황 시) 재택근무와 관련한 규정이 있다면 그 규정에 따라서 특정부서나 특정근로자에 대한 재택근무를 제한하는 것 또한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주가 배려차원에서 재택근무를 실시하는 것이라면¹⁾ 회사가 희망자에 대해서 자유롭게 재택근무를 할 수 있다고 폭넓게 공지했더라도 주요부서 등 특정부서나 특정근로자에 대한 재택근무를 제한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1) 이번에 일부 IT업계, 게임산업계에서 사업주의 재량적 판단으로 6일~2주간의 재택근무를 실시한 바도 있습니다.

Q
10코로나19 창궐 지역으로 전직·전보된
경우 근로자의 대응방안

최근 근로자 A는 회사로부터 코로나19가 창궐한 외국에 가서 업무를 수행하도록 명령을 받았으나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근로자 A는 외국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피하고자 합니다.

근로자로서는 어떠한 방안을 강구할 수 있나요?

#코로나창궐 #업무배치 #전직전보 #근로자대응책

A

코로나19가 창궐한 외국으로의 업무배치는 전직(전보)에 해당하므로 전직이 정당인지, 전직과정에 차별이 있었는지를 살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이나 법원에 소송(보전소송으로서 전직금지 가처분신청 포함)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정당한 이유 없이 전직 등 그 밖의 징벌을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전직은 배치전환 즉 근무 장소의 변경이 포함되므로 코로나가 창궐한 외국으로의 업무배치는 전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상 전직권한 여부, 정당한 경영상 필요성의 정도 등을 살펴 전직의 정당성을 판단한 후 정당성이 없다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거나 법원에 보전소송을 포함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6조는 남녀의 성(성별), 국적, 신앙,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차별을 금지하고 국가인권위원회법 또한 고용(배치 등)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차

별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직과정에서 근로자간 차별이 있었다면 노동위원회에 차별 시정 신청도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사용자는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 근로계약상 부수적 의무로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하고 있고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 제1항은 사업주의 쾌적한 작업환경의 조성 및 근로조건 개선의무를 부여하는 바, 근로자 A는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보장할 것을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합당한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민법 제390조에 따라 채무불이행 책임을 묻거나 관련 법규 위반으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사 본안소송에 앞서서 보전소송으로서 코로나19가 창궐한 외국으로 업무배치가 될 경우 코로나19 감염으로 생명·신체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이유로 전직금지 가처분 신청까지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제6조(균등한 처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사업주 등의 의무) ①사업주(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와 제78조에 따른 물건의 수거·배달 등을 증가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6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함으로써 근로자(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제78조에 따른 물건의 수거·배달 등을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6조에서 같다)의 안전 및 건강을 유지·증진시키고 국가의 산업재해 예방정책을 따라야 한다.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Q

11

코로나19로 인한 권고사직 및 해고

근로자가 30명이 넘는 큰 식당에서 일하는 A는 코로나19 사태로 식당을 찾는 손님들의 발길이 뚝 끊어지자 사장님으로부터 일을 그만두는 것이 어떻겠냐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갑작스러운 권고사직에 도저히 일을 그만둘 수 없었던 A는 이를 거절하였고, 회사는 이에 곧 A를 해고할 것이라 엄포를 놓았습니다. 이러한 해고가 정당한 해고일까요?

#코로나19 #코로나식당 #코로나권고사직 #근로기준법 #정당한해고

A

권고사직으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는 합의에 의한 것이므로 A씨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만약 A가 권고사직을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사업자가 A를 해고한다면 A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사건의 예처럼 사업자가 직접 해고하지는 않지만, 근로자에게 사직할 것을 권유하고 그것을 근로자가 받아들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권고사직'이라 합니다. 하지만 권고사직의 핵심은 근로자가 받아들여 합의로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것인데, 사업자의 권고를 받아들일지 아닐지는 오로지 근로자의 의사에 달려있습니다.

만약 사업자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해고한다면 아래와 같이 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 말하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부당해고가 됩니다.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고,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로 인정된다면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내려 근로자를 부당해고 이전으로 복직시킬 수 있습니다.

아울러 본 사례는 아니지만, 부당한 해고와 관련하여서는 5인 미만 사업장(적용제외사업장)인지, 해고서면통지가 이루어졌는지, 해고예고수당(1개월치)은 수수되었는지 등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Q
12

코로나19로 인한 명예퇴직 신청 및 정리해고

국내 최대의 여행사에 근무하고 있는 A는 코로나19로 여행객 수가 급감하자 회사를 살리기 위해 격일 근무도 실시해보고, 자진하여 임금삭감에도 동참하였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길어지자 회사 내 “정리해고를 할 것이다, 명예 퇴직자 신청을 받을 것이다.”라는 흥흥한 소문이 돌았고, 오늘 아침 명예 퇴직자 신청을 받는다는 공고문이 게시되었습니다. 명예퇴직을 거부할 경우, 정리해고 대상자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정리해고가 정당하나요?

추가적으로 외국과의 거래에 차질이 생긴 물류회사가 경영상 위기에 봉착하여 근로자를 정리해고 한 경우 이는 정당하나요?

#항공권취소 #환불 #취소수수료

A

코로나19로 근로기준법상 정리해고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면 정당한 정리해고가 될 수 있으나, 위처럼 명예퇴직신청을 거부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해고한다면 부당해고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외국과의 거래에 차질이 생긴 경우, 정리해고 판단에 있어 회사의 경영상 필요성을 폭넓게 인정하여 해고가 정당할 여지도 있습니다.

명예퇴직이란 정년연령에 도달하지 않는 근로자들에게 근속연수나 연령 등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면 그의 자발적 의사에 따라 규정상의 퇴직금 이외에 금전상 보상이나 가산퇴직금 또는 위로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등

우대조치를 하여 정년 전에 사직의 형태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제도를 말합니다.

즉, 명예퇴직은 근로자가 명예퇴직 신청(청약)을 하면 사용자가 요건을 심사한 후 이를 승인(승낙)함으로써 합의에 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입니다.

권고사직과 마찬가지로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명예퇴직이 이루어질 수 없고, 명예퇴직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한다면 부당해고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이 사건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24조의 정리해고의 정당성 여부도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정리해고의 경우 실체적 요건으로서 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하며, 절차적 요건으로서 ② 해고 회피 노력, ③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기준 설정, ④ 근로자대표에의 통보·협의 등 엄격한 요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합니다.

또 대법원 역시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하고,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여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하고,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대표에게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여기서 위 각 요건의 구체적 내용은 확정적·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구체적 사건에서 다른 요건의 충족 정도와 관련하여 유동적으로 정해지는 것이므로 구체적 사건에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가 위 각 요건을 모두 갖추어 정당한

지 여부는 위 각 요건을 구성하는 개별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5두56144 판결).”는 입장입니다.

그러므로 위 사안처럼 단순히 명예퇴직 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정리해고를 한다면 부당해고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고,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로 인정된다면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내려 근로자를 부당해고 이전으로 복직시킬 수 있습니다.

보론으로 외국과의 거래를 주업으로 하는 물류회사의 경우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사태 확산에 따라 섀다운 등의 상황이 발생하고 있고 이는 매출의 하락에 직결되므로 이는 정리해고의 요건인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의 판단에 있어 중요한 부분에 해당하는 바, 경영자의 판단이 존중될 수도 있음을 양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①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인수·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②제1항의 경우에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후략)

Q 13

코로나19로 인한 퇴직 및 퇴직금의 평균임금 계산

A는 코로나19로 10년간 근무한 회사가 어려워지자, 새로운 직장을 알아보기 위해 2020년 4월 1일 회사에서 퇴직하려고 합니다. A가 얼핏 들기론 퇴직금을 계산할 때 최종 3개월분 임금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A는 지난 몇 달간 코로나19로 회사가 자체적으로 휴업하여 임금을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 대로 퇴직금을 계산하게 되면 A는 매우 불리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코로나19퇴직 #퇴직금계산 #코로나명예퇴직얼마 #평균임금

A

본래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 임금을 수령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이 있다면 그 기간을 제외하고 계산하여야 합니다.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하여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수령할 수 있고,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에 의해 퇴직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업무 외 부상·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등은 평균임금 산정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원칙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4·8호).

따라서 평균임금 산정대상에서 제외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이전 3개월 중에서 제외되지 않는 기간 및 그 기간에 지급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만약 제외되는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제외되는 기간의 최초일(휴업시작일 등)을 평균임금의 산정 사유가 발생한 날로 보아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²⁾.

구체적인 예를 들어, A가 근무한 회사가 매출감소 등으로 자체 판단하여 2020년 2월 1일부터 2020년 3월 31일까지 휴업을 실시하였고, A가 2020년 4월 1일에 퇴직한 경우 2010년 4월 1일 입사한 근로자 A의 평균임금(월 기본급 200만 원, 별도수당 없음)은 '2020년 1월 급여 200만 원 ÷ 31일 = 64,516원³⁾이 되는 것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2) 평균임금산정 특례고시 제1조 제1항.

3) 2.1~3.31의 휴업기간과 해당기간 지급된 금품은 산정대상에서 제외함.

Q 14

코로나19 대응 정부시책 소개 (고용유지지원금·가족돌봄비용지원·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지원·무급휴직 신속지원제도 개요)

국가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한 사업주와 근로자의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① 코로나19 대응 고용유지지원금, ② 가족돌봄비용지원, ③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지원, ④ 무급휴직 신속지원제도를 확대·개편하여 근로자와 사업주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대응고용유지지원금 #가족돌봄비용지원 #간접노무비지원
#무급휴직신속지원제도 #근로자고통

A

1. 코로나19대응 고용유지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고용유지를 하는 사업주에게 일정한 비용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2. 가족돌봄비용지원은 코로나19로 어린이집·유치원 등이 개학을 연기하여 가족돌봄휴가(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비용을 보전해주는 것입니다.
3.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지원제도는 우선지원 대상 기업이나 중견기업의 사업주가 재택근무나 선택근무제를 실시하는 경우 그 활용횟수에 따라 비용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4. 무급휴직 신속지원제도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급격한 경영사정 악화로 불가피하게 무급휴직을 실시하는 경우 이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1. 코로나19대응 고용유지지원금

○ 제도의 의미

코로나19에 따른 경영악화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함에도 유급으로 휴업⁴⁾, 휴직⁵⁾ 등의 고용유지 조치를 실시한 사업주에게 당초 노동자에게 지급하는 것입니다. 당초 정부는 휴업수당의 75%를 지원하였으나 90%까지 늘리기로 결정했습니다(지원기간 6개월 → 9개월로 연장).

○ 지급요건

코로나19에 따른 경영악화에도 불구하고 고용조정에 같음해 ① 완전 휴업을 하거나, ② 전체 근로시간의 20% 이상을 초과하여 휴업하는 경우, ③ 1개월 이상 휴직을 실시하는 경우에 지급합니다.

○ 적용기간

2020년 2월 1일부터 2020년 7월 31일 사이에 이루어진 고용유지 조치에 적용됩니다. 구체적으로 고용유지 조치가 2020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이루어진 경우,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는 상향 전 지원 비율(약 60%)이 적용되고, 2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는 상향된 지원비율(75%)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3월 말 정부는 다시금 휴업수당의 90%까지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 신청 절차

①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계획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할 것 ② 고용유지 조치를 할 것 ③ 고용센터에 매월 지원금을 신청 ④ 고용센터의 사실관계 확인 후 지원금 지급

4) 휴업: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상 근로를 제공할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 근로제공이 거부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를 말한다.

5) 휴직: 근로자가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부적당한 경우, 근로자의 지위는 유지하면서 직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시키는 사용자의 처분을 뜻한다.

2. 가족돌봄비용 긴급 지원

○ 제도의 의미

코로나19 확진자 및 의사환자 돌봄, 어린이집·유치원·학교 휴업 및 개학 연기 등의 사유로 자녀의 긴급한 가정돌봄이 필요하여 가족돌봄휴가(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1인당 일 5만 원을 최대 10일간(부부 합산 최대 100만 원) 코로나 종료 시까지 한정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지원대상

근로자 1인당 최대 10일간 지원됨에 따라, 맞벌이 근로자는 최대 20일간 지원되고, 외벌이 근로자는 최대 10일간 지원됩니다.

○ 적용대상

국내 첫 코로나19 확진 판정(2020년 1월 20일) 이후 코로나19 상황 종료 시까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원합니다. 따라서, 상황 초기에 지역적인 휴원·휴교로 인해 가족돌봄휴가를 이미 사용한 근로자에게도 지원됩니다.

3.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지원제도

○ 제도의 의미

우선지원 대상 기업이나 중견 기업의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서 유연근무제를 허용한 경우, 근로자의 주당 유연근무제 활용 횟수에 따라 주 3회 이상 사용 시 1주 10만 원(연간 520만 원), 주 1~2회 사용 시 1주 5만 원(연간 260만 원)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 지원요건

근로자가 유연근무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취업규칙, 인사규정 등)를 마련하고, 전자·기계적 방식으로 출퇴근 관리를 하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다만, 코로나19에 대응하여 한시적으로 '재택근무'는 이메일, 모바일 메시지를 통한 업무 시작 및 종료시각을 사업주에게 보고하는 방식도 인정됩니다.

○ 연간 최대 지원 가능 인원

1년간 지원 인원은 사업참여신청서를 제출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연도 말일을 기준으로 피보험자 수의 30% 한도로 하고, 70명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시차출퇴근제는 50명까지).

○ 유연근무제 도입방식

시차출퇴근제와 선택근무제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 포함)에 유연근무 사항을 규정해야 하며, 재택근무제와 원격근무제는 근로계약서에 변경된 근무장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야 합니다.

4. 무급휴직 신속지원제도

○ 제도의 의미

신속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여 노사합의(개별 근로자 동의 포함)로 유급휴업 1개월 실시 후 30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하는 제도입니다. 기존의 무급휴직 지원제도의 일반절차를 유지하여 사업장의 경영사정을 감안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가 기존의 제도와 무급휴직 신속지원제도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고용노동부 2020년 6월 15일자 보도자료 참조).

일반절차	→ 유급휴업 3개월	→ 무급휴직 90일 이상 (30일 전 신고)	최대 180일 1일 최대 6.6만 원
신속지원 프로그램	→ 유급휴업 1개월	→ 무급휴직 30일 이상 (7일 전 신고)	최대 90일 150만 원 한도 (월 50만 원)

○ 지원수준 및 기간

최대 150만 원(월 50만 원), 최대 90일까지 지원됩니다.

○ 적용대상

피보험자격 취득 시기가 '2020년 3월 1일 이전인 근로자'가 그 적용대상입니다.

* 사업주가 무급휴직 제도를 악용할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하여 코로나19 위기경보가 심각으로 상향된 시점(2020. 2. 23.) 등을 고려하여 적용대상이 규정된 것입니다.

○ 시행기간

2020년 7월 1일 ~ 2020년 12월 31일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근로자의 가족 돌봄 등을 위한 지원) ①사업주는 근로자가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이하 "가족"이라 한다)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이하 "가족돌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본인 외에도 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 2. 1., 2019. 8. 27.>

Q

15-1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에 코로나19에 감염된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

보건의로 및 집단수용시설 종사자인 A와 방재·방역 종사자 B는 코로나19가 발생하자 업무수행의 일환으로 코로나19 감염자를 치료, 관리, 방역하였고 그 과정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되었습니다.

또한 산재보험법에 임의가입하여 꽃집을 운영하는 C⁶⁾도 꽃을 사러 온 고객과의 접촉으로 코로나19에 감염되었습니다. 이 경우 A, B, C는 모두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나요?

#코로나감염 #산재적용 #치료방재방역 #업무수행 #비보건의로종사자

A

보건의로 및 집단수용시설 종사자로서 진료 등 업무수행 과정에서 감염자와 접촉하여 발병한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비보건의로 종사자로서 공항·항만의 검역관 등과 같이 감염위험이 높은 직업군에 해당하거나 업무수행 과정에서 감염자와의 접촉이 확인되어 업무와 질병 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도 산재보험 적용이 가능합니다.

6) 산재보험 특례적용확대에 따라 중소기업 사업주는 산재보험에 임의 가입이 가능합니다.
7) 근로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1호 가목8)에 따르면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던 중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산업재해를 인정합니다. A는 보건의로 종사자로서 코로나19 감염자를 치료·관리하는 것이 근로계약상의 업무이고, 실제 코로나19 감염자와의 접촉이 상시적으로 발생하는 바 업무와 질병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 업무상 재해가 성립될 수 있을 것입니다.

반면, 비보건의로 종사자의 경우 근로복지공단이 2020년 2월 11일 발표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산재보상 업무처리방안>을 확인해야 합니다. 공단은 업무상 질병 조사 대상 및 업무상 질병 인정 요건으로서 아래를 제시하였습니다9).

비보건의로 종사자의 업무상 질병 조사 대상

- 해당 바이러스 감염원을 검색하는 공항·항만 등의 검역관
- 중국 등 고위험 국가(지역) 해외출장자
- 출장 등 업무상 사유로 감염자와 함께 같은 비행기를 탑승한 자
- 업무수행 과정에서 감염된 동료 근로자와의 접촉이 있었던 자
- 기타 업무수행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감염환자와 접촉한 자
- ※ 현지법인 근무자의 경우 산재 적용 여부 조사 후 산재 요양 여부 판단

업무상 질병 인정 요건

- 위 조사대상에 해당하는 근로자로서 아래에 모두 해당하면 업무상 질병 인정 가능
 - ① 업무활동의 범위와 바이러스 전염경로가 일치될 것
 - ② 업무수행 중 바이러스에 전염될 만한 상황을 인정할 수 있을 것
 - ③ 바이러스에 노출되었다고 인정될 것
 - ④ 가족이나 친지 등 업무 외 일상생활에서 전염되지 않았을 것

8)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애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업무상 사고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9) 이는 지난 메르스 사태 당시(2015년 7월 12일), 고용노동부 및 근로복지공단이 배포한 「메르스 관련 질의 응답(Q&A)」에서도 “병원종사자의 업무 수행 중 질병에 감염되었다면 산재 처리가 가능”이라고 답변한 것을 더욱 상세히 한 것임. 실제로 산재 승인처리된 사건으로서는 부산 지역 근로자 건(부산소재 컴퓨터 회사 직원이 대전의 한 병원에 파견근무를 수행하다가 감염된 사례)이 있음.

위 요건에 따르면 코로나19 감염위험이 높은 직업군에 속하는 B나 단순 비보건의료인 C의 경우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감염환자와 접촉한 자로 업무상 질병 조사 대상자가 될 것이고, 그 밖에 업무활동범위와 전염경로가 일치하고, 방역을 하거나 영업을 하는 과정에서 감염자와 접촉하였으므로 바이러스에 노출되어 전염될 만한 상황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산업재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감염 산재 인정 첫 사례 나왔다...구로콜센터 확진자
(뉴시스 김중택 기자 2020.04.10.)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감염된 근로자를 산업재해로 인정한 첫 사례가 나왔다.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은 10일 서울 구로구 콜센터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된 A씨에 대해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 산재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이번 사례를 두고 콜센터 상담 업무를 수행한 A씨가 밀집된 공간에서 근무하는 업무 특성상 반복적으로 비말 등 감염 위험에 노출된 점을 고려해 업무와 신청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코로나19 등 감염성 질병은 산재 인정까지 역학조사를 거친 감염경로 확인 등에 장시간이 소요되지만, 이번 신청 건에 대해서는 신속한 산재 승인이 결정됐다. 공단 측은 자치단체 홈페이지 등 유관기관 정보를 활용해 명확한 발병 경로를 확인, 역학조사 생략 등의 방법을 활용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산재 인정에 따라 A씨는 코로나19 치료로 일하지 못한 기간 동안 평균 임금 70%에 상당하는 휴업 급여를 지급받게 된다. 휴업 급여액이 1일 최저 임금액인 6만8720원 미만일 경우 최저임금액 기준으로 지급된다. 공단은 산재 신청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주 확인 제도를 폐지하고 서식을 간소화했다. 불가피한 경우 병원 진단서 첨부만으로도 산재 신청이 가능하며, 요양 중인 산재보험 의료기관을 통한 신청 대행도 가능하다. 강순희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앞으로도 코로나19 산재 신청을 포함해 업무상 재해를 입은 산재 노동자가 적기에 재해 보상을 받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애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업무상 사고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Q
15-2

1. 출퇴근, 2. 회사의 회식·행사 중에 코로나19에 감염된 경우 산업재해보상 보험의 적용

근로자 A가 일반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이 아닌 출퇴근, 회식, 회사 행사 중에 코로나19에 감염되었다면 산업재해로 인정받아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나요?

#업무이외의사유 #코로나감염 #산재인정여부 #지배관리

A

1.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거나 혹은 통상적인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 코로나19에 감염된 경우 상당인 과관계가 인정되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에서 이탈한 경우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에 해당한다면 산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코로나19 감염의 원인이 된 행사나 회식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었다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산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1. 출퇴근 중 코로나19에 감염된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출퇴근재해는 ①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하거나, ② 그 밖의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¹⁰⁾로 규정하고 있는데, 산재

판단에 있어 사업주의 지배관리나 통상적인 경로·방법의 이탈 여부가 중요합니다.

다만, 통상적 출퇴근 경로를 이탈한 경우라도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5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산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감염인과의 접촉’ 그리고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으로 출근한 사실’을 입증하여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산재로 인정받을 것입니다.

2. 회식이나 회사행사 중에 코로나19에 감염된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라목은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 마목은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바목은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로 인한 부상·질병·장해를 업무상의 재해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0조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행사나 회식을 회사의 지시 혹은 승인하에 참가한 경우인지, 당해 행사나 회식을 근로시간의 연장으로 볼 수 있는지를 살펴 업무상 재해를 파악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코로나19 감염의 원인이 된 행사나 회식을 사업주의 지시나 승인으로 참여하였거나 근로시간(연장)으로 본다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는 것으로 보아 업무상 재해가 인정될 것입니다.

10) 사고: 여기서 말하는 사고란 코로나 감염자와의 접촉을 뜻합니다. ‘감염인과의 접촉’은 노동자의 의도치 않은 사고로 볼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애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업무상 사고
 - 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 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 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3. 출퇴근 재해
 - 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 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5조(출퇴근 중의 사고) ②법 제37조제3항 단서에서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일상생활에 필요한 용품을 구입하는 행위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직업교육훈련 기관에서 직업능력 개발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이나 훈련 등을 받는 행위
3. 선거권이나 국민투표권의 행사
4. 근로자가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아동 또는 장애인을 보육기관 또는 교육기관에 데려주거나 해당 기관으로부터 데려오는 행위
5.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서 질병의 치료나 예방을 목적으로 진료를 받는 행위
6. 근로자의 돌봄이 필요한 가족 중 의료기관 등에서 요양 중인 가족을 돌보는 행위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행위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라고 인정하는 행위

Q 16

채용결정 이후 출근 대기 기간 중 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한 법률관계

근로자 A는 어린이집 교사로 채용이 결정된 뒤 출근 대기 기간 중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은 경우 근로관계 등은 어떻게 되나요?

#출근대기 #코로나확진

A

어린이집 교사로 채용이 확정된 상태이므로 채용을 취소하거나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채용 내정의 단계를 지나 채용이 확정된 상태이므로 어린이집 근로자인 A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를 하게 되면 부당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에 확진되었다는 사정 그 자체만으로는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한편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은 근로자 A에 대하여 사용자는 유급휴가를 보장하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의2에 따라 국가로부터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②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의2(사업주의 협조의무) ①사업주는 근로자가 이 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 외에 그 입원 또는 격리기간 동안 유급휴가를 줄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가 국가로부터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 받을 때에는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유급휴가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유급휴가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국가는 제1항에 따른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범위 및 신청·지원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CHAPTER
04

배상·보상
문제

01. 자가격리 권고조치 위반자의 손해배상책임
02. 회사 또는 국가의 손해배상 또는 손실보상책임
(코로나19 창궐지역으로 업무상 출장을 가게 되어 감염된 경우)
03. 의료진의 신천지 교회 상대 손해배상 청구 거부
(신천지 교인이 확진사실을 숨기고 수술에 응하여 의료진이 감염된 경우)
04. 2차 감염자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책임
05. 확진자 이동경로 공개로 영업손실이 발생한 경우 국가의 손실보상책임
06. 병원의 검사 권유를 거부하고 확진판정을 받은 자의 손해배상책임
(확진판정을 받은 자와 접촉한 다수의 사람이 확진판정을 받은 경우)
 - 06-1. 환자가 코로나19 검사거부 시 의료기관이 입원을 거부할 수 있는지 가부
07. 정신병원 및 요양병원 등 집단 감염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거부
08. 국가 등과 의료기관의 손해배상책임 성립 요건

Q 01

자가격리 권고를 위반하여 여행 중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가부

미국 고교 유학생 A와 어머니 B가 정부의 자가격리 권고기간에 제주도 여행을 하고,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경우,¹⁾ 제주도 및 피해업체 등²⁾이 모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자가격리권고위반 #코로나19확진 #손해배상

A

자가격리 권고가 법적의무는 아니더라도 입국 전후나 여행 중 상황 등에 비추어볼 때 주의의무나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의 과실이 인정될 수 있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여 보입니다.

① A는 미국에서 입국할 경우 설사 당시에는 증상이 없었더라도 코로나19 전파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를 기울였어야 하고, ② A와 B는 코로나19로 인한 국내 상황을 충분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제주도 여행을 강행하였으며, ③ A는 여행 도중 숙소 인근 병원을 방문할 정도로 오한, 근육통 등을 호소하였는바, 코로나19 증상을 충분히 인지하였다고 볼 수 있고, ④ A는 적어도 위와 같은 증상 호소 및 병원

1) 참고로 A는 2020. 3. 15. 미국에서 귀국한 뒤, 2주간 자가격리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머니 B와 함께 같은 달 20일부터 24일까지 4박 5일 동안 제주도를 여행하고 서울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A와 B는 각각 같은 달 25일과 26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2) 위 사례에서 실제로 제주도 및 피해업체 2곳, 자가격리자 2명 등(원고)은 모녀(피고)를 상대로 1억 3,2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방문 이후에는 감염전파를 염려하여 더욱 주의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지키지 않았으며, ⑤ 자기격리 권고가 법적의무는 아니더라도 주의의무나 신의성실의 원칙 등을 고려하여 볼 때 과실은 존재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하여 보입니다.

다만 과실이 인정되더라도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 여부 등 제반사정을 토대로 입증되어야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배상금액은 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02

코로나19 창궐지역으로 업무상 출장을 가게 되어 감염된 경우, 회사 및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또는 피해보상 청구 가부

회사의 업무상 코로나19가 유행 중인 지역으로 출장을 갔다가 감염된 경우,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나 국가에 대한 피해보상이 가능할까요?

#업무상출장 #보호의무 #손해배상 #피해보상

A

1. 사용자가 감염 방지를 위한 별다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이로 인하여 근로자가 코로나19에 감염되었다면 과실이 인정되어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민법 제750조상의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어 보입니다.
2. 코로나19에 감염되어 격리 및 치료 등을 받게 될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가로부터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고, 또한 감염병환자 등의 진료 및 보호에 드는 경비는 국가가 부담하게 됩니다.

1. 회사의 손해배상책임

대법원은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인 의무로서 근로자에 대한 보호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에게 근로자가 입은 신체상의 재해에 대하여 민법 제750조 소정의 불법행위책임을 지우기 위하여는 사용자

에게 당해 근로로 인하여 근로자의 신체상의 재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회피를 위한 별다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음이 인정되어야 하고, 위와 같은 과실의 존재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근로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2000. 3. 10. 선고 99다60115 판결 참조).

사례에서 사용자는 당해 근로자가 코로나19가 창궐 중인 지역으로 출장을 가게 될 경우, ① 경험칙상 근로자에게 코로나19 감염이라는 신체상의 재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충분히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예상되므로, ② 사용자는 감염을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 등 안전조치를 취할 의무(보호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감염 방지를 위한 별다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이로 인하여 근로자가 코로나19에 감염되었다면 과실이 인정되어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민법 제750조상의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보다 면밀한 검토를 위해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 개별적 검토를 통한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자료 확인이 필요합니다.

2. 국가에 대한 피해보상

코로나19에 감염되어 격리 및 치료 등을 받게 될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가로부터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고, 또한 감염병환자 등의 진료 및 보호에 드는 경비는 같은 법 제67조 제1호에 의해 국가가 부담하게 됩니다.

다만 국민은 코로나19에 대한 정보를 국가에게 공개하고, 국가의 치료·격리 조치 등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4.3.18, 2015.7.6>
2. 감염병환자등의 진료 및 보호

제6조(국민의 권리와 의무) ①국민은 감염병으로 격리 및 치료 등을 받은 경우 이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개정 2015. 7. 6.>
③국민은 의료기관에서 이 법에 따른 감염병에 대한 진단 및 치료를 받을 권리가 있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신설 2015. 7. 6.>

제67조(국고 부담 경비) 다음 각 호의 경비는 국가가 부담한다. <개정 2010. 1. 18., 2015. 7. 6., 2015. 12. 29., 2018. 3. 27., 2019. 12. 3.>
1.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른 감염병환자등의 진료 및 보호에 드는 경비

Q
03

신천지 교인이 확진사실을 숨기고 수술에 응하여 의료진이 감염된 경우, 의료진의 신천지 교회 상대 손해배상 청구 거부

코로나19 확산의 근원지로 주목된 신천지 교회와 관련하여, 신천지 교인 A는 코로나19에 감염된 상태에서 간 이식 수술을 하는 바람에 간을 이식받은 모(母) B는 물론 수술한 의사 C까지 감염시킨 경우 C가 신천지 교회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가능할까요?

#코로나19확진 #신천지교회 #신천지교인 #타인감염

A

신천지 교인 A가 아닌 신천지 교회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는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C는 코로나19 확진 사실을 숨기고 타인에게 감염시킨 신천지 교인 A가 아닌 신천지 교회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즉, 신천지 교회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① 코로나19 감염의 경로가 해당 특정 종교(신천지 교회)의 교인이라고 특정이 가능한 경우, 또는 ② 신천지 교회가 교인에게 명시적·묵시적으로 지시한 정황 등이 입증되어야 가능합니다.

따라서 C는 신천지 교인 A의 책임을 신천지 교회에게 확대하여 묻기는 어렵고, 또한 실질적으로 신천지 교회를 통해 코로나19 감염이 전파되

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과실이 있는 신천지 교인 A를 상대로 한 소송은 가능하나, 배상 금액은 코로나19에 감염되었더라도 개인마다 경중의 차이 및 피해금액 산정의 어려움 등을 고려할 때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Q
04

중국을 방문한 사실이 없는 자가 감염된 경우, 감염사실을 알고도 돌아다니 확진자 및 그 확산을 막지 못한 국가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가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중국을 방문한 적이 없던 사람이 감염(2차 감염)된 경우, 감염 사실을 알고도 돌아다니 확진자(1차 감염자) 및 코로나19 확산을 막지 못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확진자 #바이러스전파 #2차감염 #국가배상

A

- 1차 감염자가 코로나19에 확진된 사실을 알고도 역학조사를 회피하거나, 코로나19가 유행 중인 지역에 다녀온 사실이나 증상을 알리지 않고 타인과 접촉한 경우라면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책임을 물으려면 국가배상법 제2조의 요건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1. 1차 감염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회피하

는 행위(제18조 제3항 제1호)’를 하면 형사처벌을 받는다고 규정(제79조 제1호)하고 있습니다.

만약 1차 감염자가 자신이 코로나19에 확진된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병원을 방문하지 않은 경우에는 역학조사를 회피한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차 감염자가 코로나19 감염 가능성을 인지하지 못한 경우에는 고의적인 인식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바, 과실 인정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즉 1차 감염자가 코로나19가 유행 중인 지역에 다녀온 사실이나 증상이 있음에도 알리지 않고 누군가를 만나는 등의 행위를 하였을 때는 예외적으로 과실이 인정되어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2.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책임

국가배상법 제2조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등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염자가 국가에 손해배상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① 공무원의 감염자에 대한 검사, 안내 등의 행위가 법령을 위반, ② 공무원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될 정도의 과실 존재, ③ 공무원의 행위와 감염 사이의 상당한 인과관계 존재 등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코로나19의 경우에도 2차 감염자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려면, 정부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진단 검사 및 역학조사를 지체 없이 실시했는지, 국민에게 환자의 이동경로 등의 정보를 신속히 공개했는지, 정부의 관리지침이 감염자 및 의심 감염자 관리를 위해 적절하게 수립되었는지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개별 사실관계에 적용하여 그 배상책임을 따져보아야 할 것입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역학조사) ③누구든지 질병관리본부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는 역학조사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 7. 6.>

1.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회피하는 행위
2.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
3.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은폐하는 행위

제7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7. 6., 2017. 12. 12., 2020. 3. 4.>

1. 제18조제3항을 위반한 자

Q 05

정부가 코로나19 확진자의 이동경로를 공개하여 막대한 영업 손실이 발생한 경우, 사업장의 국가를 상대로 손실보상 청구 가부

정부가 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간 이동경로를 공개함에 따라 막대한 영업 손실이 발생한 경우, 민간사업장이 국가를 상대로 손실보상 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이동경로공개 #확진자 #영업손실 #손실보상

A

민간사업장 등이 입은 영업 손실에 대해서는 보상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해당 민간사업장을 ① 일시적으로 폐쇄, ② 일반 공중의 출입 금지, ③ 해당 장소 내 이동 제한, ④ 그 밖에 통행차단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는 감염병환자 등이 발생·경유하거나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그 사실을 공개하여 요양기관(의료기관, 약국, 보건소 등)에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는 보상을 예정(제1항 제5호)하고 있으나, 위 요양기관 이외의 민간사업장 등이 입은 영업 손실에 대해서는 보상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해당 민간사업장을 ① 일시적으로 폐쇄, ② 일반 공중의 출입 금지, ③ 해당 장소 내 이동 제한, ④ 그 밖에 통행차단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등을 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손실보상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제70조 제1항 제4호).

실제로 2015년경 메르스 사태 이후 정부의 건물 폐쇄 등에 따라 휴업한 상점에 대하여 손실보상이 이루어진 적이 있으며, 다만 민간사업장이 자발적으로 임시 휴업한 경우에는 제외되었습니다.

따라서 현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민간사업장의 영업 손실은 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손실보상)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실을 입은 자에게 제70조의2의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29., 2018. 3. 27.>

4. 제47조제1호, 제4호 및 제5호, 제48조제1항, 제49조제1항제4호, 제6호부터 제10호까지, 제12호 및 제13호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
5. 감염병환자등이 발생·경유하거나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사실을 공개하여 발생한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에 따른 요양기관의 손실로서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손실에 준하고, 제70조의2에 따른 손실보상심의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손실

Q 06

병원이 폐렴증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권유하였으나 거부한 자가 확진판정을 받았고 그와 접촉한 다수의 사람이 확진된 경우, 그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가부

A는 B병원에 입원 치료 중 폐렴증상이 나타나서 B병원은 A에게 코로나19 검사를 권유하였습니다. 하지만 A는 “코로나19 확진자를 만난 적도 없고, 해외에 나가지도 않았다.”면서 검사를 거부하였습니다. 그러나 결국 A는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았고, A와 접촉한 다수의 사람이 확진된 경우, A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까요?

#검사거부 #확진자 #2차감염 #손해배상

A

A의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될 수도 있으므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례에서 B병원은 A에게 ‘코로나19 우려가 있으니 검사를 해 보라’고 권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한 채, A가 사람이 밀집한 장소에 출입하여 다수의 국민이 코로나19로 확진되었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고의 여부를, 그리고 A가 코로나19 감염 가능성을 인지하지 못하였더라도 폐렴 증상이 있어 약물치료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다수의 국민에게 전파시켰다면 과실 등이 인정될 수도 있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감염병 병원체 검사를 거부한 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제80조), 입원 또는 격리조치를 거부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제79조의 3)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이 강화되었습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입원치료를 받지 아니한 자
2. 제41조제2항을 위반하여 입원 또는 치료를 거부한 자
3. 제41조제3항을 위반하여 자가 또는 감염병관리시설에서 치료를 거부한 자
4. 제42조제1항·제2항제1호·제3항 또는 제7항에 따른 입원 또는 격리 조치를 거부한 자
5. 제47조제3호 또는 제49조제1항제14호에 따른 입원 또는 격리 조치를 위반한 자

제8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3. 27., 2020. 3. 4.>

- 2의2. 제13조제2항에 따른 감염병 병원체 검사를 거부한 자
5. 제42조에 따른 강제처분에 따르지 아니한 자(제42조제1항·제2항제1호·제3항 및 제7항에 따른 입원 또는 격리 조치를 거부한 자는 제외한다)
6. 제45조를 위반하여 일반인과 접촉하는 일이 많은 직업에 종사한 자 또는 감염병환자등을 그러한 직업에 고용한 자
7. 제47조(같은 조 제3호는 제외한다) 또는 제49조제1항(같은 항 제3호 중 건강진단에 관한 사항과 같은 항 제14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조치에 위반한 자

Q

06-1

환자가 코로나19 검사거부 시 의료기관이 입원을 거부할 수 있는지 거부

현재 A는 B병원 신규 입원 환자 전원에 대하여 코로나19 검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A가 검사를 거부할 경우 B병원이 환자의 입원을 거부할 수 있을까요?

#검사거부 #확진자 #진료거부

A

코로나19 검사를 거부하는 입원 예정 환자에 대한 입원을 거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의료법상 의료인이 진료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의료법 제15조).

그런데, 보건복지부는 의료인이 진료 요청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유권해석하고 있습니다(대한의사협회 2017. 6. ‘의료법 주요조문 해설’ 참조).

1. 의료인이 질환 등으로 진료를 할 수 없는 경우
2. 의료기관의 인력·시설·장비 등이 부족하여 새로운 환자를 진료할 수 없는 경우
3. 예약된 진료 일정으로 인해 새로운 환자를 진료할 수 없는 경우
4. 난이도가 높은 진료행위에서 이에 필요한 전문지식 또는 경험이 부족한 경우

5. 다른 의료인이 환자에게 이미 시행한 치료(투약, 시술, 수술 등)내용을 알 수 없어 적절한 진료를 하기 어려운 경우
6. 환자가 의료인의 진료행위에 따르지 않거나 의료인의 양심과 전문 지식에 반하는 진료행위를 요구하는 경우
7. 환자나 환자의 보호자가 위력으로 의료인의 진료행위를 방해하는 경우
8. 의학적으로 해당 의료기관에서 지속적인 입원치료가 불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환자에게 가정요양 또는 요양병원·1차의료기관·요양 시설 등을 이용하도록 권유하고 퇴원을 지시하는 경우

그런데, 입원 예정 환자에 대한 진료와 다른 환자들 및 의료진의 안전을 위하여 코로나19의 검사가 반드시 필요한데, 입원 예정 환자가 코로나 19의 검사를 거부하는 경우, 위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의료진의 진료행위를 따르지 않은 경우 진료거부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본다)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46조에 비추어, 코로나 19의 검사를 거부하는 입원 예정 환자에 대해 입원을 거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반대로 위와 같은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진료를 거부하는 것은 의료법상 처벌대상이 되는 진료 거부행위에 해당할 것입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감염병환자등의 관리) ①감염병 중 특히 전파 위험이 높은 감염병으로서 제1급감염병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감염병에 걸린 감염병환자등은 감염병관리기관에서 입원치료를 받아야 한다.

③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자가(自家) 또는 감염병관리시설에서 치료하게 할 수 있다.

1.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입원치료 대상자가 아닌 사람
2. 감염병환자등과 접촉하여 감염병이 감염되거나 전파될 우려가 있는 사람

제46조(건강진단 및 예방접종 등의 조치)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건강진단을 받거나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예방접종을 받게 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0. 1. 18., 2015. 7. 6.〉

1. 감염병환자등의 가족 또는 그 동거인
2. 감염병 발생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또는 그 지역에 출입하는 사람으로서 감염병에 감염되었을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
3. 감염병환자등과 접촉하여 감염병에 감염되었을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

제79조의3(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입원치료를 받지 아니한 자
2. 제41조제2항을 위반하여 입원 또는 치료를 거부한 자
3. 제41조제3항을 위반하여 자가 또는 감염병관리시설에서 치료를 거부한 자
4. 제42조제1항·제2항제1호·제3항 또는 제7항에 따른 입원 또는 격리 조치를 거부한 자
5. 제47조제3호 또는 제49조제1항제14호에 따른 입원 또는 격리 조치를 위반한 자

제8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입원치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입원 또는 치료를 거부한 자

의료법

제15조(진료거부 금지 등) ①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 〈개정 2016. 12. 20.〉

②의료인은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선의 처치를 하여야 한다.

Q
07청도 대남정신병원 및 요양병원 등
집단 감염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가부

정부의 행정명령이 있을 후 집단감염이 발생한 요양병원 등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까요?

#행정명령 #집단감염 #정신병원 #요양병원 #손해배상

A

요양병원 등이 정부의 행정명령(방역지침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손실보상과 재정적 지원 등의 제한은 가능하나(제70조 및 제70조의3), 손해배상 청구의 경우는 ① 요양병원 등이 정부의 방역지침에 명백히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거나, ② 요양병원 등이 역량 부족 또는 실수로 방역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등의 사실관계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개별 사안마다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요양병원 등에 대한 행정명령(주요 지침사항은 방역관리자 지정, 외부인 출입제한, 간병인에 대한 매일 발열 증상 확인 및 기록, 유증상자즉각 업무배제, 간병인 마스크 착용 등)을 강화하고, 이를 위반하여 집단감염이 발생할 경우 해당 기관에 대한 손실보상 및 재정적 지원을 제한, 추가 방역조치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까지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요양병원 등이 정부의 행정명령(방역지침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손실보상과 재정적 지원 등의 제한은 가능하나(제70조 및 제70조의3), 손해배상 청구에 대하여는 일률적으로 확인할 수는 없고 ① 요양병원 등이 정부의 방역지침에 명백히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거나, ② 민사소송의 경우 고의가 아니어도 과실이 있으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바, 요양병원 등이 역량 부족 또는 실수로 방역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등의 사실관계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개별사안마다 손해배상 청구 여부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Q
08국가 등과 의료기관의 손해배상책임
성립 요건

코로나19에 관하여 국가 등과 의료기관의 감염병 예방에 대한 부실대응 및 국가의 감염병 관리상 과실책임의 성립 요건은 무엇인가요?

#감염병예방 #국가 #의료기관 #부실대응 #손해배상

A

국가 등과 의료기관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1. 국가 등의 손해배상책임 성립 요건

국가 등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에 의해 '감염병의 예방 및 방역대책, 감염병환자 등의 진료 및 보호, 예방접종계획의 수립 및 시행, 감염병에 관한 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 감염병 병원체 검사·보존·관리' 의무, 제34조의2 제1항에 의해 감염병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에 대한 정보공개 의무, 제42조에 의해 감염병 확진자에 대한 강제치료 및 입원조치, 감염병 의심자에 대한 자가격리조치, 제46조에 의해 강제건강진단 및 예방접종조치, 제47조에 의해 감염병환자나 병원체 오염 의심장소에 대한 폐쇄, 출입금지, 이동제한조치, 제49조에 의해 교통차단, 집회 및 예배 등 금지조치 등을 취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국가 등이 이를 위반하여 감염병에 이환시켰거나 감염병을 악화시켜 손해가 발생한 경우 배상책임이 있습니다.

2015년 메르스 감염의심자에 대하여 질병관리본부에 진단검사를 요청 하였으나, 당해 환자가 다녀온 장소가 메르스 발병 국가가 아니라는 이유로 거부한 뒤 메르스 감염이 확진된 사건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법 2018. 2. 9. 선고 2017나9229판결은 “질병관리본부의 공무원들이 메르스 의심환자 신고를 받고서도 지체 없이 진단 검사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메르스 발생 국가가 아니라는 이유로 진단검사를 거절·지연한 것은 감염병에 관한 방역 등에 관한 행정권한 행사의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서 현저하게 불합리하다. 구 감염병예방법 제18조 제1항에 의하면 질병관리본부장은 감염병이 발생하여 유행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역학조사를 하여야 하고, 메르스 의심환자가 신고되면 지체 없이 관할 보건소의 역학조사반이나 중앙/시·도 역학조사반을 현장에 파견하여 환자 및 보호자를 면담하는 방법 등으로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감염경로를 추정하며 접촉자 및 공동노출자를 확인하여 유행 발생 또는 전파 가능성을 확인하도록 되어 있다. 검사 거절과 지연으로 의심환자 신고 후 약 33시간 뒤 검체를 채취하였고 신고 후 약 31시간 뒤에 2시간가량 이루어진 역학조사에서 접촉자 등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국가의 위자료배상책임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2. 의료기관의 손해배상책임 성립 요건

의료기관은 법 제11조 제1항에 의해 감염병환자 등을 발견한 경우 보건소장에게 신고할 의무가 있는바, 이를 위반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이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2018. 2. 23. 선고 2015가소6648782판결은 “의료기관장은 감염병환자에 대하여 관할 보건소에 신고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데, 즉시 신고하지 않고 7일 경과한 후에 신고하였다. 의료기관에서 즉시

신고하였다면 좀 더 빨리 메르스 감염 여부를 검사하여 치료를 받을 수 있었을 것인데, 신고를 늦게 하여 감염 여부 확인과 치료를 받는 시기가 더 늦어지게 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병원으로서 위 신고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하여 위자료배상을 명하였습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4. 3. 18., 2015. 7. 6.>

1. 감염병의 예방 및 방역대책
2. 감염병환자등의 진료 및 보호
4. 감염병에 관한 교육 및 홍보
5. 감염병에 관한 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
6. 감염병에 관한 조사·연구

11조(의사 등의 신고) ①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제16조제6항에 따라 표본감시 대상이 되는 제4급감염병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이 있으면 소속 의료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해당 환자와 그 동거인에게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감염 방지 방법 등을 지도하여야 한다. 다만,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그 사실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 18., 2015. 12. 29., 2018. 3. 27., 2020. 3. 4.>

1. 감염병환자등을 진단하거나 그 사체를 검안(檢案)한 경우

제34조의2(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①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확산으로 인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면 감염병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알아야 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 게재 또는 보도자료 배포 등의 방법으로 신속히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4.>

제42조(감염병에 관한 강제처분) ②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급감염병이 발생한 경우 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감염병의심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공무원은 감염병 증상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나 진찰을 할 수 있다. <신설 2020. 3. 4.>

1. 자가(自家) 또는 시설에 격리
2. 유선·무선 통신,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기기 등을 이용한 감염병의 증상 유무 확인

CHAPTER 05

보험 관계

01. 해외여행자보험 보상범위(코로나19로 해외여행 일정이 중단된 경우 등)
02.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보상범위(자가격리 위반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받은 경우 등)
03. 웨딩보험 보상기준(코로나19로 결혼이 취소되는 경우 등)
04. 건강보험 및 실손의료보험 보상범위(코로나19 검사비 및 진료비 등)
05. 병원 가입 보험사의 보상범위
(환자가 병원 내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된 경우 병원의 손해배상책임)
06. 코로나19로 인한 생계 곤란으로 보험료 납입이 어려울 경우 대처 방안
07. 확진자로 인하여 건물 오염 피해 또는 영업손실이 발생한 경우 배·보상
 - 07-1. 재산종합보험 또는 화재보험 보상범위
 - 07-2. 확진자의 손해배상책임
08. 재난배상책임보험 보상범위(영업장, 건물 등에서 확진자가 발생한 경우 그 확진자 또는 건물에 출입한 사람이 입은 손해 등)

Q 01

해외여행 일정이 코로나19로 중단된 경우 여행자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지 여부

해외여행 중 코로나19로 일정이 중단된 경우 여행자보험으로
부터 보상받을 수 있나요?

#코로나19 #여행자보험 #해외여행 #천재지변 #기타유사한사태
#전염병 #감염병

A

해외여행자보험의 통상적인 약관의 경우 약관해석상 피보험자가 위 약관의 특약 1호(코로나19로 인하여 3일 이상 입원한 경우), 3호(코로나19를 천재지변으로 볼 수 있는 경우), 4호(코로나19를 전쟁 등과 유사한 사태로 볼 수 있는 경우) 사유로 인해 여행을 불가피하게 중단(축소)하고 귀국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부담한 비용은 보상받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해외여행자보험의 경우, 보통 ‘해외여행 중 중단사고발생 추가비용 특별약관’ 또는 유사한 내용을 담보대상으로 하는 특약이 부가되어 있는 경우가 있으며 위 특약은 보험금 지급사유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해외여행 도중에 아래의 사유로 여행일정을 불가피하게 중단(축소)하고 귀국하게 되었을 경우 피보험자가 추가적으로 부담한 비용을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험가입 금액을 한도로 보상하여 드립니다.

1. 피보험자 및 여행동반 가족이 상해 또는 질병으로 3일 이상 입원한 경우
2. 보험기간 내 피보험자의 3촌 이내의 친족 또는 여행동반자의 사망
3. 지진, 분화,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
4.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따라서 약관해석상 피보험자가 위 특약 1호(코로나19로 인하여 3일 이상 입원한 경우), 3호(코로나19를 천재지변으로 볼 수 있는 경우), 4호(코로나19를 전쟁 등과 유사한 사태로 볼 수 있는 경우) 사유로 인해 여행을 불가피하게 중단(축소)하고 귀국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부담한 비용은 보상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한편 이러한 약관해석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해당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하되, 개개의 계약당사자가 기도한 목적이나 의사를 참작함이 없이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보험단체 전체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다45777 판결) 사전적 의미 및 관계 법령 등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의미 등도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먼저 코로나19가 위 3호의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사전적 의미에서의 '천재지변'이란 '지진, 홍수, 태풍 따위의 자연 현상으로 인한 재앙'을 의미하는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정의)는 재난을 자연재난(1호 가목)과 사회재난(1호 나목) 등으로 나누고 있는데, 천재지변은 위 사전적 정의를 고려할 때 위 제1호 가목의 자연재난과 동일한 의미로 해석됩니다. 한편, 위 제1호 나목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은 사회재난에 해당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보건복지부는 2020년 1월경부터 코

로나19를 위 법상의 '1급 감염병'으로 분류하여 관리해오고 있다는 점에서 코로나19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자연재난과는 구별되는 '사회재난'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유사 법령 규정의 의미에 더하여 이 건 약관이 같은 호에서 열거하고 있는 다른 사유, 즉 '지진, 분화, 해일'과의 체계적 관련성을 고려하면, 결국 이 건 약관에서 의미하는 '천재지변'이라 함은 불가항력적인 자연현상에 의한 재해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전염병)은 '천재지변'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코로나19가 위 4호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에 해당되는지를 살펴보면, 이 건 약관 규정과 유사한 법 규정으로 여권법이 있는데, 동법 제17조(여권의 사용제한 등)는 "①외교부장관은 천재지변·전쟁·내란·폭동·테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 위난상황(危難狀況)으로 인하여 국민의 생명·신체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민이 특정 국가나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하는 것을 중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해당 국가나 지역에서의 여권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방문·체류를 금지(이하 '여권의 사용제한 등')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28조(국외 위난상황)는 법 제17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 위난상황'에 대하여, 천재지변, 전쟁, 내란이나 폭동, 대규모 테러, 대규모 폭발사고 등과 함께 "6. 대규모 감염병의 발생으로 해당 국가의 보건·의료기능 등이 마비되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대규모 감염병의 경우, 관계 법령에서 '천재지변·전쟁·내란·폭동·테러 등'의 범주에 포함하여 동질한 수준의 위험으로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대규모 감염병에 해당되는 코로나19는 이 건 특약 제1조 4호의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에서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에 해당된다고 볼 여지가 높고, 그렇게 보는 것이 약관 해석원칙에 관한 대법원 판례에도 부합할 것으로 보입니다.

〈약관규정과 여권법 규정 비교〉

약관 제1조 3호, 4호	3. 지진, 분화,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 4.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여권법 제17조 제1항	천재지변·전쟁·내란·폭동·테러 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 가. 자연재난: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한파, 낙뢰, 가뭄, 폭염, 지진, 황사(黃砂),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소행성·유성체 등 자연우주 물체의 추락·충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 나. 사회재난: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에너지·통신·교통·금융·의료·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이하 “국가기반체계”라 한다)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

여권법

제17조(여권의 사용제한 등) ① 외교부장관은 천재지변·전쟁·내란·폭동·테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 위난상황(危難狀況)으로 인하여 국민의 생명·신체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민이 특정 국가나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하는 것을 중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해당 국가나 지역에서의 여권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방문·체류를 금지(이하 “여권의 사용제한 등”이라 한다)할 수 있다. 다만, 영주(永住), 취재·보도, 긴급한 인도적 사유, 공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의 여행으로서 외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여권의 사용과 방문·체류를 허가할 수 있다.

여권법 시행령

제28조(국외 위난상황) 법 제17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 위난상황”이란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발생한 위난(危難)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황을 말한다.

6. 대규모 감염병의 발생으로 해당 국가의 보건·의료기능 등이 마비되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

Q 02

자가격리 위반과 관련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받은 경우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지 여부

자가격리 위반 중에 방문한 식당,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를 받은 경우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나요?

#코로나19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자가격리위반
#지방자치단체 #손해배상청구

A

피보험자가 코로나19 자가격리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자가격리 규정을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는 약관상 면책 조항에 해당되어 자가격리 위반자는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서 보상을 받을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피보험자의 일상생활에 기인하는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의 장애 또는 재물의 손해에 대한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피보험자가 부담하게 되는 불법행위 책임을 다소 광범위하게 보상하는 성격의 보험이라는 점에서 피보험자의 자가격리 위반이라는 위법 행위로 인하여 제 3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위 보험에 따라 보상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약관의 해석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해당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하되, 개개 계약 당사자가 기도한 목

적이나 의사를 참작함이 없이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객관적·확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위와 같은 해석을 거친 후에도 약관 조항이 객관적으로 다의적으로 해석되고 그 각각의 해석이 합리성이 있는 등 당해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야 하나, 당해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그리고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객관적이고 확일적으로 해석한 결과 그 약관 조항이 일의적으로 해석된다면 그 약관 조항을 고객에게 유리하게 제한 해석할 여지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07다5120 판결 등 참조).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약관은 면책 조항(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으로 ‘지진, 분화,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약관규정은 앞서 검토한 해외여행자보험 사례에서의 ‘지진, 분화,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 및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와 내용이 완전히 일치하는바, 동일하게 해석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약관 엄격 해석 원칙에 근거하여 위 면책 약관을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본래 문언 그대로 일상생활에 기인한 우연한 사고로 인한 위험을 인수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 코로나19의 전 세계적인 확산과 규모, 사태의 양상, 의미 등을 고려할 때 이 같은 코로나19가 당해 보험의 목적인 ‘일상생활에서 기인한 위험’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아울러 그 위험의 본질적 측면에서도 일상 위험과는 수준이나 정도를 달리한다는 점에서도 결국 위와 같이 면책 조항을 해석하는 것이 이 건 보험목적의 취지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피보험자가 코로나19 자가격리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자가격리 조치 규정을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는 약관상 면책 조항인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를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손해에 해당되어, 결국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서 보상을 받을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한 사고도 면책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보험약관상 면책 사유인 고의에 관하여 대법원은 “...보험약관상 면책사유인 ‘피보험자 등의 고의에 의한 사고’에서의 ‘고의’라 함은 자신의 행위에 의하여 일정한 결과가 발생하리라는 것을 알면서 이를 행하는 심리 상태를 말하고, 여기에는 확정적 고의는 물론 미필적 고의도 포함된다고 할 것(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다31401 판결, 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다67020 판결 등 참조)”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지만, 만일 피보험자가 정부당국의 지침에 따라 코로나19 감염이 상당히 우려되는 자가격리 권고 대상자로서 자가격리 위반 시 감염사고의 발생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용인하는 상태로 나아간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즉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는 경우라면, 약관상 ‘피보험자의 고의’ 면책에도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Q
03코로나19로 결혼이 취소되는 등의 경우
관련 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지 여부

코로나19로 결혼이 취소되고, 신혼여행도 떠나지 못한 경우
관련 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나요?

#코로나19 #결혼식취소 #신혼여행중단 #신혼여행취소 #웨딩보험

A

피보험자가 단지 코로나19의 감염을 우려하여 결혼식을 취소한 경우라면 위 보험에 가입하였다더라도 보험금 지급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위 보험 약관은 '면책 사유'로 '피보험자 및 대상가족의 전염병으로 인한 결혼식의 취소'를 규정하여 담보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설령 코로나19로 피보험자 또는 대상가족이 사망하여 결혼식이 취소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웨딩보험 약관규정에 따라 보상받을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웨딩보험의 경우 '여행불편 특별약관' 등의 특약 형태로 신혼여행이 취소, 축소, 지연됨에 따라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경우가 있는데, 가입된 웨딩보험 증권상 위 특약이 부가되었는지 여부 및 구체적인 보상 해당 여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혼식 취소 위험 등 결혼식과 관련된 위험을 담보하는 보험상품으로 '웨딩보험'이 있습니다. 다만, 웨딩보험은 약관상 보험금 지급사유로서 '1. 결혼식 및 축하연 장소에서 형법상 방화죄, 살인죄, 강도죄의 강력범죄가 발생하였을 경우, 2. 대상가족의 상해사망으로 결혼식을 진행하기가 불가능한 경우, 3. 피보험자가 보험가입 이후 최소 8주가 경과한 뒤에 정리해

고로 인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할 자격이 생긴 경우' 등의 사유로 결혼식 및 축하연이 취소된 경우만을 보상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보험자가 단지 코로나19의 감염을 우려하여 결혼식을 취소한 경우라면 위 보험에 가입하였더라도 보험금 지급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위 보험 약관은 '면책 사유'로 '피보험자 및 대상가족의 전염병으로 인한 결혼식의 취소'를 규정하여 담보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바, 설령 코로나19로 피보험자 또는 대상가족이 사망하여 결혼식이 취소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전염병으로 인한 사망은 이 건 보험의 담보대상에서 애초에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코로나19가 질병에 해당되는지, 상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둘러싼 법적 논의를 별론으로 하더라도, 웨딩보험 약관규정에 따라 보상받을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웨딩보험의 경우 '여행불편 특별약관' 등의 특약 형태로 신혼여행이 취소, 축소, 지연됨에 따라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가입된 웨딩보험 증권상 위 특약이 부가되었는지 여부 및 구체적인 보상 해당 여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컨대, 위 특약은 '피보험자가 한국에 거주하는 그 직계가족의 사고로 인한 신체상해 또는 병 때문에 한국으로 즉각 돌아와야만 할 경우, 회사는 추가된 여행 또는 숙박 경비 및 보장된 여행이 시작된 후 피보험자가 미리 납입하고 추징당했으나 어떤 경우에도 회수가 안 되고 환불받을 수 없는 비용'을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하여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만일 신혼여행 중 직계가족이 코로나19로 위독하여 피보험자가 즉각 한국으로 돌아와야만 하는 경우에 해당된다면 이 건 특약에 따라 보상이 가능할 것이고, 반면, 여행국가의 입국거부, 입국금지 조치 등에 의하여 신혼여행이 취소된 경우라면 특약상 면책 사유인 '정부의 규제나 통제 또는 조치'에 의한 여행취소에 해당되므로 웨딩보험에서는 보상받지 못한다고 할 것입니다.

Q
04코로나19 검사비 및 진료비 등에 대한
건강보험 및 실손의료보험 보상 여부

코로나19 검사비 및 진료비, 입원치료비 등에 대하여 건강보험
및 실손의료보험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코로나19 #건강보험 #실손의료보험 #전염병 #감염병

A

확진환자¹⁾는 입원치료비를, 의사환자 및 조사대상 유증상자는 진단검사비를 건강보험 또는 국고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의사환자는 자가격리가 원칙이나 고위험군 및 중등도 이상으로 분류되어 격리입원하는 경우에는 입원치료비를 지원받으며,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신고된 사례 중 원인미상폐렴 등으로 선제적 격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병실입원료에 한해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다만 본인의 지병이나 본인에게 새로 발병한 질환 등으로 입원, 진찰, 검사 및 치료 등에 드는 경비는 코로나19의 치료가 아니므로

1) 확진환자, 의사환자 및 조사대상 유증상자에 대한 사례정의(2020. 3. 15. 기준)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확진환자(Confirmed case)

임상양상에 관계없이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 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자

※ 자가진단 항목 : 진단검사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유전자(PCR) 검사, 바이러스 분리
나. 의사환자

확진환자의 증상발생 기간 중 확진환자와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37.5℃ 이상)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호흡곤란, 인후통 등)이 나타난 자

다. 조사대상 유증상자

- ① 의사의 소견에 따라 원인미상 폐렴 등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자
- ② 중국(홍콩, 마카오 포함) 등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지역 전파 (*)가 있는 국가를 방문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37.5℃ 이상)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자
(* WHO 홈페이지 (local transmission) 또는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 참조)
- ③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집단발생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으며, 14일 이내 발열(37.5℃ 이상)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자

건강보험이나 국고로 코로나19와 같은 수준으로는 지원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하여 입원 또는 통원 치료(검사 포함)를 받은 경우, 건강보험 또는 국고로 지원받은 부분은 실손의료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없으나 피보험자가 직접 부담한 비용에 대해서는 보상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가. 국민건강보험 또는 국고 지원 여부

- 1) 국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제1호, 제4조 제2호에 따라 감염병환자 등의 진료 및 보호에 드는 경비를 부담하는데, 코로나19는 임상양상, 역학적 특성에 대한 정보가 구체적으로 밝혀질 때까지 '제1급감염병 신종감염병증후군'을 적용하여 대응하는 바, 확진환자는 입원치료비를, 의사환자 및 조사대상 유증상자는 진단검사비를 건강보험 또는 국고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2) 또한 코로나19 대응지침상 의사환자는 자가격리가 원칙이나 고위험군 및 중등도 이상으로 분류되어 격리입원하는 경우에는 입원치료비를 지원받으며,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신고된 사례 중 원인미상폐렴 등으로 선제적 격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병실입원료에 한해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 3) 단, 특별자치도지사 등 지자체의 장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및 제42조에 따른 입원치료비 외에 본인의 지병이나 본인에게 새로 발병한 질환 등으로 입원, 진찰, 검사 및 치료 등에 드는 경비는 본인이나 그 보호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법 제69조), 코로나19의 치료가 아닌 위 비용은 건강보험이나 국고로 코로나19와 같은 수준으로는 지원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나. 실손의료보험 보상 여부

- 1) 실손의료보험은 피보험자가 ①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요양급여(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를 합한 금액의 80~90%에 해당하는 금액 및 상급병실료 차액에서 50%를 뺀 금액을 지급하고(질병입원 의료비 담보), ②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거나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요양급여(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를 합한 금액에서 항목별 공제 금액을 뺀 금액을 지급하되(질병통원의료비 담보) “피보험자가 실제로 부담한 금액”을 보상합니다.

- 2) 따라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입원 또는 통원 치료(검사 포함)를 받은 경우, 건강보험 또는 국고로 지원받은 부분은 실손의료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없으나 피보험자가 직접 부담한 비용에 대해서는 보상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2. 감염병환자등의 진료 및 보호

제67조(국고 부담 경비) 다음 각 호의 경비는 국가가 부담한다.

1.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른 감염병환자등의 진료 및 보호에 드는 경비

제69조(본인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는 경비)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1조 및 제42조에 따른 입원치료비 외에 본인의 자비이나 본인에게 새로 발생한 질환 등으로 입원, 진찰, 검사 및 치료 등에 드는 경비를 본인이나 그 보호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Q 05

환자가 병원 내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된 경우, 병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병원이 가입한 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한지 여부

환자가 병원 내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된 경우, 병원 측의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병원이 가입한 보험사에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코로나19 #병원내감염 #병원에대한손해배상청구 #의사배상책임보험
#병원배상책임보험

A

의료기관이 감염병 예방 및 감염환자에 대한 관리의무를 위반하여 환자가 병원 내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되었다면 환자는 병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인데, 손해배상의 일반법리상 의료기관의 귀책사유(주의의무 위반, 고의·과실), 귀책사유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등 불법행위책임의 요건 사실은 환자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의료기관의 감염병 예방 및 감염환자 관리상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역시 의사 및 병원배상책임보험이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보험회사에 대해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가. 병원 내 감염병과 관련한 병원의 손해배상책임 여부

1) 의료법은 병원감염 예방을 위하여 의료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감염병의 예방을 위하여 해당 의료기관에 소속된 의료인 및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감염병이 유행하는 경우 환자, 환자의 보호자, 의료인, 의료기관 종사자 및 경비원 등 해당 의료기관 내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에게 감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은 병원감염 예방을 위하여 감염관리위원회와 감염관리실을 설치·운영하고 감염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 인력을 두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 법은 감염병환자의 관리에 있어서도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자로 하여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4항에 따른 감염병환자 등의 진료 기준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바(의료법 제36조 제9호), 호흡기 감염병의 경우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감염병환자를 감염병관리기관이나 특별자치도지사 등 지자체의 장이 지정한 의료기관의 음압시설이 갖추어진 1인실 또는 단독 시설에 입원시켜야 하고, 입원치료 중인 사람에 대하여 병실 이탈 및 이동을 제한하며, 의료진을 포함한 입원실 출입자들을 최소한으로 제한하는 한편, 방문자에 대하여 1회용 장갑 등의 개인보호구를 착용하게 하며, 손 씻기 등 감염병 전파를 차단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하는 등의 주의의무를 부담합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의 3항 및 4항 참조).

2) 따라서 의료기관이 위와 같이 감염병 예방 및 감염환자에 대한 관리 의무를 위반하여 환자가 병원 내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되었다면 환자는 병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인데, 손해배상의 일반법리상 의료기관의 귀책사유(주의의무 위반, 고의·과실), 귀책사유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등 불법행위책임의 요건 사실은 환자 측에서 입증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코로나19의 예방 또는 관리와 관련하여 병원의 주의의무 위반 및 고의·과실 여부는 앞서 살펴본 의료법, 감염병예방법, 병원의 감염병 예방 또는 관리(진료)지침, 해당 감염병에 대한 질병관리본부의 사례정의 및 관리지침에 비추어 환자의 증상, 감염경로, 확진과정 및 이후의 격리조치 등 치료과정의 구체적인 내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병원 측이 환자의 증상이나 이력을 살펴 해당 사람이 코로나19 의심환자이거나 조사대상 유증상자임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격리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않았다면 예방조치를 해태한 과실이 인정될 수 있고, 확진환자가 발생한 이후에는 음압병동으로의 이송이나 보호자, 접촉자 등에 대한 위험고지 및 증상확인 등의 조치를 다하지 않았다면 피해확산 방지 의무를 해태한 과실이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코로나19의 병원감염과 관련하여 병원직원 등에 의한 감염에 대해서 병원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문제될 수 있는데, 앞서 살펴 보았듯이 감염병예방법은 감염병의 예방을 위하여 해당 의료기관에 소속된 의료인 및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보건복지부 병원감염관리지침에도 직원감염의 예방을 마련할 주의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병원이 의료기관 종사자의 코로나19 감염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었음

에도 업무배제 등의 조치를 다하지 않아 해당 종사자로부터 환자가 감염되었다면 감염 예방 조치를 다하지 않은 과실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 3) 다만, 감염병 예방 및 감염환자 관리 및 진료에 대한 주의의무는 의료행위를 할 당시 의료기관 등 임상의학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의사가 행한 의료행위가 그 당시의 의료수준에 비추어 최선을 다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의사에게 환자를 진료함에 있어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는데(대법원 1999. 3. 26. 선고 98다 45379, 45386 판결 참조), 코로나19는 임상양상, 역학적 특성이 분명히 밝혀지지 않은 감염병으로서 질병관리본부의 사례정의 및 관리지침이 계속적으로 변동되어 온 점, 현재의 사례정의에 따르더라도 의심환자나 유증상자의 경우 확진환자와의 접촉 여부나 코로나19 지역 전파가 있는 국가의 방문 여부 등을 병원이 직접 탐지하기 어려워 대상자의 문진에 의존하여 판단하게 되는 점 및 일반적으로 시술이나 처치 등 그 시행 여부가 분명한 의료행위에 수반한 병원감염의 경우에도 병원 측의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가 드문데 확진 이후에야 감염경로가 확인되는 감염병에 있어 병원의 과실이 인정되기는 더욱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병원의 과실, 특히 사전 감염예방에 대한 과실을 입증하기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 4) 만일 병원에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경우, 코로나19는 임상양상, 역학적 특성이 분명히 밝혀지지 않은 감염병인 점, 현재까지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백신이 없고 치료를 위한 항바이러스제도 개발되지 않아 감염환자에 대하여는 대증적 치료를 할 수 밖에 없는 사정 및 피해자의 기왕증 등을 고려하여 책임의 제한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나. 의사 및 병원배상책임보험 보상 여부

- 1) 의사 및 병원배상책임보험은 피보험자가 수행하는 의료행위와 관련하여 과실에 의해 타인의 신체에 해를 입혀 발생하는 의료사고로 인하여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인데, 직접적인 수술 또는 처치가 아닌, 병원 내 감염병 예방 또는 감염환자 관리를 의료행위라고 볼 수 있을지 및 그와 관련한 주의의무 위반을 의료사고라고 볼 수 있는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생각건대, 이 건 보험이 의료행위라는 전문영역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담보한다는 점, 의료기관이 부담하는 병원감염 방지를 위한 주의의무 및 감염병환자의 관리·진료를 위한 주의의무는 환자의 증상, 감염병의 특성 등을 고려한 고도의 의학적 판단에 기초해 이루어진다는 점을 고려하건대, 의료기관의 감염병 예방 및 감염환자 관리상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역시 의사 및 병원배상책임보험이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된다고 보입니다.

한편, 해당 보험은 약관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보상하지 않는 손해’로서 감염병 중 후천성 면역결핍증 또는 감염에 기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를 규정할 뿐 다른 감염병이나 질병에 의한 손해를 보상하지 않는 손해로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한 바, 이 건 코로나19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할 근거는 없어 보입니다.

- 2) 이 경우, 피해자는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라 피보험자인 병원이 책임을 질 사고로 입은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액의 한도 내에서 이 건 의사 및 병원배상책임의 보험자인 보험회사에 대해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도 있는데, 확진환자의 경우 입원치료비를, 입원대상자나 자가격리자의 경우 생활지원비나 유급휴가비를, 사망자의 경우 장례

비를 국가가 지급하는 바, 피해자가 보험회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는 보험금은 입원 또는 자가격리 기간에 해당하는 휴업손해 중 생활 지원비나 유급휴가비를 공제한 금액과 코로나19로 인한 후유장애 또는 사망으로 인한 일실수익 및 위자료로 한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의료법

제36조(준수사항) 제33조제2항 및 제8항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9. 의료기관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제4항에 따른 감염병환자등의 진료 기준에 관한 사항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3. 입원치료의 방법

- 가. 호흡기를 통한 감염의 우려가 있는 감염병(이하 “호흡기 감염병”이라 한다)을 제외한 감염병의 경우 입원치료 기간 동안 감염병관리기관이나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의료기관의 1인실(세면대와 화장실을 갖추어야 한다. 이하 같다)에 입원시켜야 한다. 다만, 1인실 입원이 곤란할 경우에는 같은 질함을 잃는 사람이나 재감염의 우려가 적은 환자와 공동 격리한다.
- 나. 호흡기 감염병의 경우 입원치료 기간 동안 감염병관리기관이나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의료기관의 1인실에 입원시키되, 그 1인실은 문을 닫은 상태에서 음압시설(陰壓施設)이 갖추어져 있고 공기 순환이 독립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다만, 음압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단독 시설에 입원시켜야 하고, 단독 시설 입원이 곤란할 경우에는 옆 병상의 환자에게 호흡기를 통해 전파되지 않도록 차단 조치를 한 상태에서 공동 격리한다.
- 다. 입원치료 중인 사람에 대하여 입원치료 기간 동안 병실 이탈 및 이동을 제한하도록 한다.
- 라. 입원치료 중인 사람의 분비물 및 배설물 등은 철저히 관리하고, 오염된 물품은 소독을 해야 한다.
- 마. 의료진을 포함한 입원실 출입자들을 최소한으로 제한하고, 방문자에 대하여 1회용 장갑 등의 개인보호구를 착용하게 하며, 손 씻기 등 감염병 전파를 차단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게 해야 한다.
- 바. 환자의 진료에 사용되는 의료기구는 1회용 기구를 사용한 후 폐기처분하고, 1회용으로 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은 체온계 등의 물품은 환자 전용으로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4. 입원치료의 절차 등

- 가. 입원치료 대상 환자 등을 진찰 또는 진단한 의료인이나 감염병관리기관 또는 의료기관의 장은 환자를 입원시설에 입원시키고, 지체 없이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 나. 신고를 받은 관할 보건소장은 입원치료 여부를 지체 없이 확인해야 한다.
- 다. 입원치료 대상자의 입원치료 기간은 감염병환자등으로 밝혀진 시점부터 증상 및 감염력이 소멸된 시점까지로 한다.
- 라. 입원시설의 장 및 시설에 종사하는 의료인은 치료를 통하여 입원 해제가 가능한 사람에 대해 입원을 해제하고, 그 내용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하며, 관할 보건소장은 지체 없이 입원 해제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 마. 증상이 소멸되었으나 감염력이 있는 회복기 병원체보유자의 경우에는 보건소장의 관리하에 지속적인 치료를 받도록 하고, 감염력이 소멸될 때까지 의료기관에 입원치료를 받거나 자가치료를 하도록 해야 한다

상법

제724조(보험자와 제3자와의 관계) ②제3자는 피보험자가 책임을 질 사고로 입은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액의 한도내에서 보험자에게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Q
06

코로나19로 인한 생계 곤란으로 보험료 납입이 어려울 경우의 대처 방안

코로나19로 인한 생계 곤란으로 보험료 납입이 어려울 경우 보험료 납입을 유예할 수 있나요? 보험료 미납으로 인하여 계약이 해지된 경우 해지된 보험계약을 부활시킬 수 있나요?

#코로나19 #보험료체납 #계약해지 #계약의부활 #보험료납입유예

A

일부 보험사들은 코로나19로 인한 생계곤란으로 보험료 납입이 어려운 경우를 대비하여 최대 6개월까지 납입유예 기간을 연장하여 주고 있는바, 상세한 사항은 가입한 보험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험료 미납으로 인하여 계약이 해지되었다고 하더라도, 계약자가 이미 납입했던 보험료를 돌려받지 않았다면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가. 손해보험 표준약관은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 보험회사가 14일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정하여 계약자(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 그 특정된 타인을 포함)에게 알리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2회 이상 보험료가 미납된 경우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이에 일부 보험사들은 코로나19로 인한 생계곤란으로 보험료 납입이 어려운 계약자들에게 최대 6개월까지 납입유예 기간을 연장하여 주고

있으나, 상세한 사항은 가입한 보험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또한 보험료 미납으로 인하여 계약이 해지되었다고 하더라도, 계약자가 이미 납입했던 보험료를 돌려받지 않았다면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 전 알릴 의무 및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며, 회사가 부활 청약을 승낙한 때에는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에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월평균 정기예금이율 + 1% 범위 내에서 각 상품별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함으로써 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표준약관

제27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과 계약의 해지) ①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는,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정하여 계약자(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 그 특정된 타인을 포함합니다)에게 다음의 내용을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다만, 계약이 해지되기 전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하여 회사는 계약상의 보장을 합니다.

1.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
2.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그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

제28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①제27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과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계약자가 제33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라 보험료를 돌려받지 않은 경우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가 그 청약을 승낙한 때에는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에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월평균 정기예금이율 + 1% 범위내에서 각 상품별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②제1항에 따라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제15조(계약 전 알릴의무), 제17조(사기에 의한 계약), 제18조(보험계약의 성립), 제25조(제1회 보험료 등 및 회사의 보장개시) 및 제30조(계약의 해지)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Q

07-1

확진자로 인한 건물 오염 피해 또는 그로 인하여 영업손실이 발생한 경우, 재산종합보험이나 화재보험으로 담보받을 수 있는지 여부

확진자로 인한 건물 오염 피해 또는 그로 인하여 영업손실이 발생한 경우 재산종합보험이나 화재보험으로 담보받을 수 있나요?

#코로나19 #건물오염 #영업손실 #재산종합보험 #화재보험

A

재산종합보험의 경우 건물 오염 손해는 ‘면책위험’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건물 오염 등으로 인하여 영업손실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위험이 담보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화재보험의 경우 감염병 병원체 오염으로 인한 손해는 화재나 벼락으로 인하여 보험의 목적(건물 등)에 발생한 손해가 아니므로 화재보험으로 담보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비록 영업손실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해당 보험으로 담보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1. 쟁점

이와 관련하여서는, 건물의 오염 피해란 어떠한 손해를 의미하는지,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는 있는지, 그러한 손해가 발생하게 된 원인 및 손해의 유형이 해당 보험에서 담보하는 것인지 등이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2. 건물 오염 피해의 의미 및 손해 발생 여부

확진자로 인한 건물 오염 피해는 감염병 병원체에 의해 건물이 오염됨에 따른 피해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고, 건물 자체의 손해는 소독이나 방역에 따른 비용 상당액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건물 폐쇄나 출입금지 등에 따른 영업손실 등은 건물 자체의 손해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때 만약 비용의 부담자가 건물주 등(관리·운영자 포함, 이하 ‘건물주 등’)이 아니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라면 건물주 등에게 방역비 상당액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겠지만, 현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은 감염병 유행에 대한 방역 조치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은 감염병 병원체에 오염된 장소에 대한 소독을 명하도록 되어 있고(제47조 제5호), 공중위생에 관계있는 시설 또는 장소에 대한 소독 등의 조치를 명하도록 하고 있으며(제49조 제1항 제8호), 공동주택, 숙박업소 등 여러 사람이 거주하거나 이용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자에게 소독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제51조 제2항).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청소나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는 의무를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이는 평상시의 감염병 예방을 위한 정기적인 소독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종합하여보면, 방역비용은 원칙적으로 해당 건물주 등이 부담하여야 하는 것으로 사료되므로 일단 방역비 상당액의 손해는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할 것입니다. 다만, 만약 정책적 혹은 배려 차원에서 지자체 등이 비용을 부담하였다면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3. 보험에서 담보하는 손해인지 여부

가. 재산종합보험의 경우

1) 건물 자체 손해의 경우

재산종합보험의 경우 물적 피해는 ‘재산종합위험 담보(제1부문)’에서 보상하게 되는데, 재산종합보험은 전위험(all risk) 담보방식이므로 면책으로 정하여지지 않은 모든 손해를 보상하고, 이때의 보험사고는 보험기간 중에 보험의 목적(건물 등)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사고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어떤 경우를 면책위험으로 정하고 있는지가 중요한데, ‘면책위험’ 중 하나로 “직접, 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원인에 관계없이 누출 및 오염, 오탁으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건물 오염 손해는 위 ‘면책위험’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재산종합보험에서 담보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2) 그로 인한 영업손실의 경우

재산종합보험의 경우 영업손실은 ‘기업휴지위험 담보(제3부문)’에서 보상하게 되는데, 보상의 전제는 ‘재산종합위험 담보(제1부문)’에서 보상 가능한 사고의 결과로 영업을 중단 또는 휴지되었을 경우에, 그러한 중단 또는 휴지로 인하여 생긴 손해액을 보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건물 오염 손해는 ‘재산종합위험 담보(제1부문)’에서조차 보상하는 손해가 아니므로 건물 오염 등으로 인하여 영업손실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기업휴지위험 담보(제3부문)’에서 담보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 화재보험의 경우

1) 건물 자체 손해의 경우

화재보험은 화재나 벼락으로 인하여 보험의 목적(건물 등)에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는 바, 감염병 병원체 오염으로 인한 손해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화재보험으로 담보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2) 영업손실의 경우

일반적으로 화재보험의 경우 기업휴지손해 특별약관에 가입하는 경우 영업손실에 대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으나, 이 역시 화재나 벼락으로 인한 사고 발생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감염병 병원체에 의한 건물 오염으로 인하여 영업손실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기업휴지손해 특별약관에 따라 담보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Q 07-2

확진자로 인한 건물 오염 피해 또는 그로 인하여 영업손실이 발생한 경우, 확진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확진자 등이 영업시설에 출입하여 건물이 오염됨에 따라 영업장이 폐쇄되는 등으로 영업손실 기타 손해를 입은 경우 확진자 등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코로나19 #건물오염 #영업손실 #확진자 #손해배상책임

A

확진자가 본인이 확진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건물 등을 오염시키거나 건물을 오염시켜서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건물 등을 출입하거나 이용한 것이라면, 확진자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확진자가 본인이 확진자라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건물 등을 오염시키거나 건물 오염 등에 따른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단지 본인의 필요에 따라 건물 등을 출입하거나 이용한 것일 경우에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과실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볼 것입니다. 다만,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일부 제한될 여지는 있습니다. 그리고 확진자는 아니나 자가격리 대상인 사람이 건물 등에 출입하거나 이용한 경우,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였고 결과적으로 건물 등을 오염시키는 결과를 발생시켰다면 이 역시 과실이 없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므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

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확진자도 아니고 자가격리 대상도 아닌 사람이 건물 등에 출입 또는 이용하였다가 나중에 알고 보니 전염된 사람이었고 그에 따라 건물 등이 오염된 경우에는 확진자의 과실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므로 손해배상 청구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건물 등에 출입하거나 이용한 확진자 또는 자가격리 대상 중 나중에 확진자로 밝혀진 사람이 복수일 경우 누구에 의해 건물 등이 오염되었는지 명백히 밝히기 어려울 것이므로, 민법 제760조 제2항에 따라 공동불법행위로서 연대하여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1. 쟁점

건물주 등에게 방역비 상당액이나 영업손실 등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러한 손해에 대하여 확진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가 하나의 중요한 쟁점이 되는데, 확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확진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아래와 같이 몇 가지 상황으로 구분할 수 있고 각 상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상황별 검토

가. 확진자가 본인이 확진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건물 등을 오염시키거나 건물을 오염시켜서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건물 등을 출입하거나 이용한 것이라면, 확진자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확진자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나. 확진자가 본인이 확진자라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건물 등을 오염 시키거나 건물 오염 등에 따른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단지 본인의 필요에 따라 건물 등을 출입하거나 이용한 것일 경우, 적어도 본인의 출입 또는 이용에 따라 건물 등이 오염될 수 있고 나아가 영업을 중단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였거나 인식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봄이 타당할 것이므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과실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볼 것입니다. 다만,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일부 제한될 여지는 있습니다.
- 다. 확진자는 아니나 자가격리 대상인 사람이 건물 등에 출입하거나 이용한 경우, 자가격리 대상인 사람은 본인이 감염되었을 가능성에 대하여 인식하고 있는 상태에서 건물 등을 출입하거나 이용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였고 결과적으로 건물 등을 오염시키는 결과를 발생시켰다면 이 역시 과실이 없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므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라. 확진자도 아니고 자가격리 대상도 아닌 사람이 건물 등에 출입 또는 이용하였다가 나중에 알고 보니 전염된 사람이었고 그에 따라 건물 등이 오염된 경우에는 확진자의 과실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므로 손해배상 청구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마. 위 가항 내지 다항에서 만약 건물 등에 출입하거나 이용한 확진자 또는 자가격리 대상 중 나중에 확진자로 밝혀진 사람이 복수일 경우 누구에 의해 건물 등이 오염되었는지 명백히 밝히기 어려울 것이므로, 민법 제760조 제2항에 따라 공동불법행위로서 연대하여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Q 08

영업장이나 건물 등에서 확진자가 발생한 경우, 그 확진자 또는 건물에 출입한 사람이 입은 손해를 건물소유자가 가입한 재난배상책임보험으로 담보할 수 있는지 여부

영업장이나 건물 등에서 확진자가 발생하고 그 확진자 또는 건물에 출입한 사람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건물소유자가 가입한 재난배상책임보험에서 그 손해가 담보될 수 있나요?

#코로나19 #재난배상책임보험 #건물소유자손해배상책임

A

재난배상책임보험에서 보상하는 사고의 유형은 ‘화재, 붕괴, 폭발’로 발생한 손해이므로 코로나19 감염은 여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재난배상책임보험으로 담보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거하여 일정한 시설을 소유·관리 또는 점유하는 자는 해당 시설에서 발생하는 화재, 붕괴, 폭발 등으로 인한 타인의 생명·신체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하고, 재난배상책임보험이 바로 그러한 보험에 해당합니다.

통상적인 재난배상책임보험은 ‘피보험자가 소유, 관리 또는 점유하는 시설(보험증권에 기재된 곳에 한함)에서 화재, 붕괴, 폭발로 발생한 타인의 생명·신체나 재산상의 손해에 대하여 피보험자의 과실 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을 지는 법률상의 손해배상금’

을 보상하게 됩니다.

피보험자(건물주 등)의 과실 여부를 불문한다는 점에서 피보험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과실이 없는 경우라도 보상하게 되나, 보상하는 사고의 유형은 ‘화재, 붕괴, 폭발’로 발생한 손해여야 합니다.

그런데 코로나19 감염은 여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결론적으로 재난배상책임보험으로 담보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CHAPTER 06

인권침해 문제

01. 외국인에 대한 인권침해

01-1.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의 마스크 구입 제한

01-2.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의 재난기본소득 지급 제한

01-3. 외국인에 대한 혐오표현 및 차별행위

02. 자가격리 대상자의 선거권 보장

03. 수용자에 대한 부당한 처우

04. 확진자 등 정보공개에 따른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권리 침해

05. 집회 및 시위의 자유 제한

06. 언론보도에 따른 허위사실 유포 및 편견·혐오의 조장

07.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생계지원 신청 등 거부, 지원중단, 반환명령

08. 격리 대상자의 요건, 절차 및 처우

09. 부당한 강제처분

10. 장애학생을 위한 온라인 학습 지원장비 등 제공에 관한 법적근거

11. 자가격리 대상자의 가정폭력 피해

12. 탈가정 청소년의 긴급재난지원금 대상 해당 여부

Q

01-1

국내 (장기)체류 중인 외국인의 마스크 구입 제한

A는 한국의 대학에서 3년 넘게 학교를 다니고 있는 외국인 유학생입니다. A는 유학생으로 한국에 입국할 당시 학교에서 가입을 의무화 한 B보험사의 민간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하였습니다. A는 공공 마스크를 구입하기 위하여 외국인 등록증을 지참하여 약국에 방문하였는데, 약국에서는 A가 건강보험증을 가지고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마스크를 구입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외국인 #건강보험가입 #공공마스크구입제한

A

민간에서 마스크를 구하기가 쉽지 않아 방역의 공백이 발생하게 되자 정부는 공적공급마스크(이하 ‘공공마스크’)를 약국 등에서 5부제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공공마스크 구입을 위해서는 개인 신분을 확인하고 1주일간 1인당 2매로 제한하여 구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내국인의 경우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과 같은 신분증을 제시하면 구매할 수 있습니다.

국내 체류하는 외국인은 신분증인 외국인 등록증과 함께 건강보험증을 제시하거나, 건강보험 가입 여부가 확인되어야 구입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의 경우 지난 2019년 7월부터 건강보험법 개정으로 인하여 국내 6개월 이상 체류하는 외국인(재외국민 포함)은 건강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됩니다(약 120만 명 추산).

의료기관인 약국에서는 외국인 등록증만 있다면 외국인의 건강보험 가입 여부 조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단지 외국인 체류자가 건강보험증을 지참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판매하지 않는 것은 부당합니다(약국이 아닌 농협 하나로마트와 우체국에서 공공마스크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건강보험증 조회가 어렵고, 이는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 약국에서 건강보험증 제시를 요구하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종합상담센터(1577-1255)에 문의하고,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부당하게 판매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국가인권위원회(1331)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부는 외국인 유학생의 경우에는 민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있고, 건강보험료 산정기준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외국인 유학생의 건강보험 의무가입을 2021년 3월까지 유예하였습니다. 따라서, 외국인 유학생의 경우에는 현재 제도적으로 건강보험에 신규 가입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농어촌 지역에서 일하는 농촌 이주 노동자 등은 지역가입과 직장가입 모두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고, 국내 체류기간이 6개월 미만인 장기체류 외국인의 경우에도 건강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난민지위 인정을 신청한 난민 신청자들이나, 미등록 이주민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외국인의 경우 국내 사정에 밝지 못하여 온라인 등에서 마스크를 구하기가 쉽지 않고, 상대적으로 방역장비 공급 필요성은 더 높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구조적인 방역의 공백은 고스란히 공동체 전체의 위험요인이 되며, 더불어 외국인에 대한 부당한 차별과 혐오가 확산될 수 있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적극적인 공공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건강보험공단 '2013~2017년 건강보험료 현황'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전체 가입자의 건강보험 재정수지는 5년간 1조 1,000억 원 흑자를 기록했으며, 건강보험 의무가입이 시작된 이후에 흑자 폭은 더 커졌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다면, 외국인의 경우에는 건강보험 흑자재정을 이용해서라도 건강보험 가입이 제도적으로 제한된 체류 외국인에게 공공마스크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종래 시행되었던 정책에 대한 그 당시의 답변으로, 현재 마스크 구입에 대한 제한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를 참고 바랍니다.

Q

01-2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의 재난기본소득 지급 제한

A는 서울시에 12년 째 거주하고 있는 중국 국적의 외국국적 동포이고, B는 경기도에서 한국 국적 남성과 혼인하여 두 딸을 양육하고 있는 혼인이주 여성이며, C는 이집트 국적의 난민신청자로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입니다.

서울특별시장은 지난 2020년 3월 18일 <서울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서울시 재난 긴급 생활비 지원’을 발표하였고, 경기도지사도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의 지급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는 외국인 중 내국인과 혼인관계가 있는 자만 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외국국적 동포 또는 영주권자는 제외하였고, 경기도의 경우에는 외국인 전부에 대해 지원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A, B, C는 이러한 차별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외국인 #재난기본소득 #지원대상제한

A

차별적 정책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인권침해, 부당차별) 절차를 이용해 다투어 볼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의 근거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관련법에 따른 각 지자체 조례를 근거하고 있으며, 기존 복지

지원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그 주요 목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지원대상과 관련하여 ‘기본소득’의 이념에 따라 고소득자, 미성년자 등 기존에 사용되어 왔던 공동체의 선별 기준에 따라 지원 대상을 제외하거나 차별하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지원 대상을 결정함에 있어서 “한국국민과 가족관계를 이루는 외국인”만 그 지원 대상으로 하고 나머지를 배제(서울시)하거나, 단지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무조건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배제(경기도)하는 것은 우리 헌법과 국가인권위원회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차별 및 인권침해에 해당될 여지가 높습니다.

이러한 차별적 정책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인권침해, 부당차별) 절차를 이용해 다투어 볼 수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침해 또는 차별시정 진정접수는 온라인으로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https://case.humanrights.go.kr>)에 접속한 이후 “진정 접수” 페이지에서 신청인의 이름과 연락처 등을 기재하고, 진정 내용을 기재하면 됩니다.

Q

01-3

외국인에 대한 혐오표현 및 차별행위

A는 한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중국 국적 외국국적 동포입니다. A는 지하철에서 친구와 중국어로 대화를 하고 있었는데, 옆에 있던 승객이 “너 같은 중국 사람들 때문에 한국에 코로나 19가 생겼다.”라고 말하며 삿대질을 하였습니다.

B는 중국 국적 외국인 유학생입니다. B는 학교 앞 카페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입구에 “중국인 출입금지”라는 안내문이 붙어 있었습니다.

C는 한국인과 결혼하여 이주한 중국 국적 혼인이주 여성입니다. C는 중학생 두 아이를 키우고 있고, 아이들은 방학동안 학교에서 방과 후 수업을 듣고 있는데, 어느 날 아이들이 학교에 가고 싶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선생님이 수업 중에 “코로나19를 막기 위해 중국사람을 한국에서 쫓아내야 한다.”는 말을 했고, 수업이 끝난 이후에 친구들이 C의 아이들에게 “너는 중국사람 가족이니까 중국으로 돌아가라.”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D는 한국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입니다. 건설현장에서 주로 일하는 D는 관리자로부터 “코로나19로 일감이 없으니 일단 집에서 쉬어라.”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 중에서 외국인들만 집에서 쉬라고 하고, 한국사람은 그대로 출근하고 있었습니다.

#외국인 #혐오표현 #인권침해



A의 사례와 같이 제3자가 성별·인종을 이유로 공개적인 장소에서 외국인에게 모욕적인 표현을 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311조에 따른 모욕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B의 사례의 경우에는 공공기관이 아닌 사인(私人)에 의한 행위이긴 하지만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평등권 침해 차별행위에 해당 가능성이 높습니다.

C의 사례의 경우 학교라는 공공기관에서 이루어진 행위이고, 이에 따라 구체적인 피해자가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구제 필요성이 매우 높지만, 실제 현행법에서는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구제수단이 부족합니다.

D의 사례의 경우 고용현장에서 발생한 차별행위로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구제방안과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차별시정 진정을 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위 사례들은 외국인 상담기관에 실제 접수된 사례들입니다. 사례와 같이 인종·국적을 이유로 소수자에 대한 모욕적인 표현을 하거나, 적대적·혐오적 감정을 표현하거나, 고용관계 혹은 재화서비스의 제공에 차별적인 처분을 하는 행위를 포괄하여 규제하는 법률(차별금지법)은 아직 우리나라에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개별 법령들에서 제한적으로 규제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A의 사례와 같이 제3자가 성별·인종을 이유로 공개적인 장소에서 외국인에게 모욕적인 표현을 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311조에 따른 모욕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판례는 “모욕”의 개념에 대해 “사실과 관

계없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고, 실제 외국인에 대한 혐오적 표현을 모욕죄로 처벌한 사례(ex. 짱개, 더러워 냄새난다, 갑동이 새끼, 불법체류자들 등)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현장에서 112 등 경찰에 신고하여 사건을 접수하고, 주변 목격자들의 진술을 확보하여 증거로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만, 사례에서와 같이 경멸적 표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여지가 많습니다. 이 경우 형사처치가 아닌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인권침해 행위 또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따른 조사대상이 되는지 검토가 필요한데,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인권침해’는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에 의한 침해행위(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를 그 대상으로 하고, ‘차별행위’의 경우에는 그 대상을 사인(私人)으로 확대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 범위에 있어 고용 또는 재화의 공급과 이용과 관련된 경우로 한정(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하고 있어 사인에 대한 공공장소에서의 혐오 표현의 경우에는 적절한 권리구제 방법이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할 여지는 있습니다.

2. B의 사례의 경우에는 공공기관이 아닌 사인(私人)에 의한 행위이긴 하지만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평등권 침해 차별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법인, 단체 또는 사인으로부터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를 조사대상으로 하고 있고(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제1항 제2호),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대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출생지, 등록기준지, 성년이 되기 전의 주된 거주지 등을 말한다),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용모 등 신체 조건, 기혼·미혼·별거·이혼·사별·재혼·사실혼 등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前科), 성적(性的) 지향, 학력, 병력(病歷) 등을 이유로 아래와 같은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구체적인 내용 중 하나로 “재화·용역·교통수단·상업시설·토지·주거시설의 공급이나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B의 사례에서와 같이 사인 간 행위라도 '상업시설'의 이용과 관련하여 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정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하여, 국가위원회가 조사 후 권고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피해당사자는 해당 상황을 사진 등을 찍어 증거로 확보하고, 국가인권위원회 온라인 진정신청 또는 콜센터(1331)에 신고를 하면 됩니다.

3. C의 사례에서는 학교라는 공공기관에서 이루어진 행위이고, 이에 따라 구체적인 피해자가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구제 필요성이 매우 높지만, 실제 현행법에서는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구제수단이 부족합니다.

우선, 선생님의 “코로나19를 막기 위해 중국사람을 한국에서 쫓아내야 한다”는 수업 중 발언은 인종 또는 국적에 따른 혐오적 표현으로 볼 수 있지만 앞서 살펴본 형법상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인권침해 조사대상 행위에는 해당되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더불어, 해당 발언을 한 교사에 대한 징계신청 요구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선생님의 혐오발언 이후에 아이들이 구체적인 피해자에게 한 구체적인 혐오표현은 현행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학교폭

력에 해당되는지 문제됩니다. 위 법에 따른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따돌림’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이루어 질 것을 요구합니다. 결국, 위 규정에 따른 ‘명예훼손·모욕’에 해당되지 않는 이상, 1회적 혐오표현은 따돌림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4. D의 사례와 같이 고용현장에서 발생한 차별행위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구제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는 국적·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제6조)고 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제114조) 하고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사례에 따라서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제23조)에 해당할 수 있는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차별시정 진정을 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인 간 차별행위라도 “고용(모집, 채용, 교육, 배치, 승진, 임금 및 임금 외의 금품 지급, 자금의 융자, 정년, 퇴직, 해고 등을 포함한다)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조사대상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 2. 3.>

3.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출생지, 등록기준지, 성년이 되기 전의 주된 거주지 등을 말한다),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용모 등 신체 조건, 기혼·미혼·별거·이혼·사별·재혼·사실혼 등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前科), 성적(性的) 지향, 학력, 병력(病歷) 등을 이유로 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현존하는 차별을 없애기 위하여 특정한 사람(특정한 사람들의 집단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행위와 이를 내용으로 하는 법령의 제정·개정 및 정책의 수립·집행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이하 “차별행위”라 한다)로 보지 아니한다.
 - 가. 고용(모집, 채용, 교육, 배치, 승진, 임금 및 임금 외의 금품 지급, 자급의 용자, 정년, 퇴직, 해고 등을 포함한다)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 나. 재화·용역·교통수단·상업시설·토지·주거시설의 공급이나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 다. 교육시설이나 직업훈련기관에서의 교육·훈련이나 그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제30조(위원회의 조사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당한 사람(이하 “피해자”라 한다)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위원회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다. <개정 2011. 5. 19., 2012. 3. 21.>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초·중등교육법」 제2조, 「고등교육법」 제2조와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또는 구금·보호시설의 업무 수행(국회의 입법 및 법원·헌법재판소의 재판은 제외한다)과 관련하여 「대한민국헌법」 제10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에서 보장된 인권을 침해당하거나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
2. 법인, 단체 또는 사인(私人)으로부터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6조(균등한 처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 제11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 7. 27., 2008. 3. 28., 2009. 5. 21., 2012. 2. 1.>

1. 제6조, 제16조, 제17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제2항, 제47조, 제53조제3항 단서, 제67조 제1항·제3항, 제70조제3항, 제73조, 제74조제6항, 제77조, 제94조, 제95조, 제100조 및 제103조를 위반한 자

Q
02

자가격리 대상자의 선거권 보장

A는 2020년 4월 5일 해외 출장을 마치고 귀국하였습니다. 우리나라 정부는 코로나19의 해외 유입을 최대한 차단하기 위해서 2020년 4월 1일 0시부터 모든 국가에서 오는 해외 입국자에 대해서 2주간 자가격리를 의무화하였습니다.

2020년 4월 15일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일인데, 자가격리 대상자인 A는 주권자로서 투표에 참여하는 방법을 문의하였으나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A는 이러한 사실을 미리 알았더라면 해외 출장 전에 부재자 투표 신청을 하였을 텐데, 정부에서 부재자 투표 신청 기간이 지난 뒤에서야 위와 같은 자가격리 조치 확대를 발표해서 투표에 참여할 수 없게 된 부분에 대해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선거 #자가격리 #기본권의조화

A

자가격리 대상자의 경우에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선거권이 있음은 당연합니다.

자가격리 대상자의 경우에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선거권이 있음은 당연합니다. 다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 제41조에서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환자 등과 접촉하여 감염병이 감염되거나 전파될 우려가 있는 사람’에게 자가격리 할 수 있도록 결정할 수 있고, 감염병예방법 제47조에서는 ‘감염병 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감염병예방법 제79조의3은 위 조항에 따른 자가격리 조치를 거부하거나 위반하는 경우에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 2020년 4월 1일 0시를 기준으로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해외 모든 국가에서 입국하는 입국자에 대해 2주 동안 자가격리를 의무화하는 조치를 취하였다면, A는 선거일에도 자가격리를 유지하여야 하는 법률상 의무가 있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부의 자가격리자 확대 방침이 법률에 근거하여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이러한 공권력의 행사가 헌법이 보장하는 선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는 있습니다.

특히, 국민의 선거권 행사는 국민주권의 현실적 행사수단으로서 한편으로는 국민의 의사를 국정에 반영할 수 있는 중요한 통로로서 기능합니다. 헌법재판소는 국회의원과 대통령에 대한 선거권(이하 '국정선거권')을 비롯한 국민의 참정권은 국민주권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권리로서 다른 기본권에 대하여 우월한 지위를 갖는 것(헌재 1989. 9. 8. 선고 88헌가6 결정)으로 평가하기도 하였습니다. 따라서, 국민의 선거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의 경우에는 그러한 행위가 법률에 근거한다는 것(헌법 제24조)만으로 곧바로 정당화될 수는 없고, 헌법 제37조 제2항의 한계에 따라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하고 불가피한 예외적인 경우에만 그 제한이 정당화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도 선거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선거권을 제한하는 법률이나 공권력의 행사의 정당성을 심사하는 경우에 선거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그 제한을 엄격하게 심사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정부가 해외 입국자에 대해 2주간 자가격리를 의무화함에 따라서 자가격리자의 선거권을 박탈하는 공권력을 행사함에 따라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른 비례의 원칙을 지켰는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해외에서 코로나19가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해외 입국자 전부에 대한 자가격리를 확대하는 조치를 법률에 따라 시행하는 공권력의 행사는 그 목적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되지만, 민주주의 사회에서 보장되어야 하는 국민의 기본권을 전면적으로 박탈하는 것이 기본권의 침해 최소성 또는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 부합하는지는 의문입니다.

특히, 정부가 자가격리 조치의 확대를 시작한 4월 1일 이후 해외에서 입국한 유권자들은 총선에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하는데, 그 숫자가 하루 평균 3천여 명 수준으로, 최대 6만여 명의 투표권이 박탈됩니다. 또한, 해외에서 입국하지 않았더라도 확진자 등과 접촉 등이 의심되어 자가격리 기간 중에 있는 의료인, 동선이 겹치는 지역주민 등을 포함하면 총 10만 여명 혹은 그 이상의 국민들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됩니다. 이는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구의 인구기준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그 숫자가 결코 적지 않고, 무엇보다 이러한 자가격리 대상자들이 민주사회의 구성원으로 투표권을 제한되어야 하는 특별한 개인의 잘못이나 귀책사유가 없다는 점에서 투표권의 전면적 박탈은 매우 신중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국민의 건강권 보장과 사회 전체의 질서유지와 공공복리를 보장하는 범위 내에서 국민의 투표권을 제한적으로나마 행사할 수 있는 방법[예를 들어, ① 투표시간을 분리하고 지역별로 일부 투표소에 한정하여 투표 관리자들에게 충분한 수준의 방호복을 지급하는 등 방역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자가격리 대상자들의 투표권을 보장하거나, ② 자가격리 대상자들에게 부재자 투표 기간을 연장하거나 별도의 방법을 통

해서 우편 또는 거소지 투표를 보장할 수 있는 방법, ③ 접촉을 최소화할 수 있는 드라이브 스루(Drive Through) 방식의 야외 투표소 운영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선거 일정이 오래전에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조치를 전혀 강구하지 않은 정부의 공권력의 행사가 선거권의 과도한 제한으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이 경우 국민 등 선거권을 박탈당한 당사자는 헌법재판소에 이러한 공권력의 행사가 헌법이 정한 개인의 기본권 제한을 넘어서는 위헌적인 공권력의 행사라는 이유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 관련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재외국민(在外國民)의 선거사무를 일방적으로 중지한 결정에 대해서도 유사한 이유와 근거로 헌법에 보장된 선거권의 과도한 침해로 헌법소원심판청구 등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법률 제16917호)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를 ‘재외국민’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외국에 체류하면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 또는 포기한 자와 달리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로서 단지 국내가 아닌 외국에 거주 또는 체류하고 있을 뿐이므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그 법률상 지위는 국내 거주·정주하는 국민과 동일하므로 이를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헌법 제11조에 따른 평등권 침해도 문제가 됩니다.

* 지난 2020년 4월 15일에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전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결국 논란 끝에 무증상 자가격리자의 선거권이 보장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향후 있을 보궐선거 등에서 또다시 쟁점이 될 수 있는 문제로, 참고하기 바랍니다.

헌법

제24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감염병 유행에 대한 방역 조치)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6., 2020. 3. 4.>

1. 감염병환자등이 있는 장소나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되었다고 인정되는 장소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조치
 - 가. 일시적 폐쇄
 - 나. 일반 공중의 출입금지
 - 다. 해당 장소 내 이동제한
 - 라. 그 밖에 통행차단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2. 의료기관에 대한 업무 정지
3.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것

제79조의3(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입원치료를 받지 아니한 자
2. 제41조제2항을 위반하여 입원 또는 치료를 거부한 자
3. 제41조제3항을 위반하여 자가 또는 감염병관리시설에서 치료를 거부한 자
4. 제42조제1항·제2항제1호·제3항 또는 제7항에 따른 입원 또는 격리 조치를 거부한 자

Q 03

수용자에 대한 부당한 처우

A는 甲구치소의 수용자입니다. 최근 구치소장은 A에게 코로나19로 부족한 마스크 생산에 인력이 필요하다며 야간 및 휴일 작업을 부과하였습니다.

B는 乙교도소에 복역 중인 수용자로 재심재판을 준비하기 위해 변호인과 가족을 접견하려 했지만 불허되었습니다.

C는 丙구치소의 수용자로 다인실에 수용되어 있습니다. 최근 C가 수용되어 있는 다인실 수용자인 D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시설이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C에게 어떠한 조치도 취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A, B, C가 교정시설의 조치에 대해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 인가요?

#교정시설 #작업 #접견 #필요한조치

A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형집행법)은 제4조 및 제5조에서 수용자의 인권을 존중할 것과 차별을 금지할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개별조항을 통해 작업의 요건, 접견의 요건, 감염병 등에 관한 조치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과 법률이 정한 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수용자에 대한 부당한 처우에 대해서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및 국가배상청구의 제기가 가능하며, 나아가 행정처분에 이르지 않은 권력적 사실행위 등에 대해서는 헌법소원 심판청구가 가능합니다.

헌법재판소는 “국가가 형벌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피의자·피고인·수형자를 다른 모든 사람과 마찬가지로 존엄과 가치를 가지는 인간으로 대우할 것을 요구한다.”라고 판시하며(헌법재판소 2016. 12. 29. 선고 2013헌마142 결정) 행형에 있어 수용자가 가지는 인간으로서의 기본권 보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형집행법) 제4조도 “이 법을 집행하는 때에 수용자의 인권은 최대한으로 존중되어야 한다.”라고 규정하며, 수용자의 인권존중이 행형의 기본원칙임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형집행법 제65조는 작업은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기술을 습득하고 근로의욕을 고취하는 데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제1항), 나이나 건강상태 등을 작업부과에 고려해야 한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형집행법 제71조는 공휴일·토요일과 그 밖에 휴일에는 원칙적으로 작업을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 수용자에게 감염 예방 목적의 마스크 생산을 위해 야간·휴일 작업을 부과하는 것은 형집행법의 규정에 어긋날 소지가 있고, 나아가 헌법 제12조가 규정하는 강제노역에 해당하거나 헌법 제10조가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할 소지가 있습니다.

형집행법 제41조 제1항은 외부인과의 접견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면서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때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접견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변호인과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접견교통권은 헌법상 기본권에 해당합니다(헌법재판소 2019. 2. 28. 선고 2015헌마1204 결정). 따라서 기간의 제한이나 엄밀한 사유의 입증 없는 일방적 접견금지는 형집행법에 반하고 수용자와 변호인의 접견에 관한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습니다. 참고로 국제인권규범은 법률상 담은 감염병 상황에서도 반드시 보장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¹⁾

1) Inter-Agency Standing Committee, “COVID-19: FOCUS ON PERSONS DEPRIVED OF THEIR LIBERTY”, March 2020, p. 5.

형집행법 제35조는 소장에게 감염병이나 그 밖에 감염의 우려가 있는 질병의 발생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수용자에 대하여 예방접종, 격리 수용, 이송,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감염 상황에서의 건강권 보장에 관한 조치는 수용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의 문제로 차별 없이 적극적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확진자 발생 시 접촉 수용자에 대한 격리, 이송 등이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하고, 시설의 불비 등을 이유로 한 부작위 등 부당한 처우는 형집행법에 반하는 위법행위이자 기본권 침해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휴일·야간 작업부과, 접견불허조치 등에 대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위 처우 등을 취소하기 위한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으며 발생한 손해(집행이 완료된 경우 포함)에 대해서는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편 행정소송에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이르지 아니한 행정지도, 권력적 사실행위 등에 대해서는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조(인권의 존중) 이 법을 집행하는 때에 수용자의 인권은 최대한으로 존중되어야 한다.

제5조(차별금지) 수용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용모 등 신체조건, 병력(病歷), 혼인 여부, 정치적 의견 및 성적(性的) 지향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한다

제35조(감염병 등에 관한 조치) 소장은 감염병이나 그 밖에 감염의 우려가 있는 질병의 발생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용자에 대하여 예방접종·격리수용·이송,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2.>

제65조(작업의 부과) ①수형자에게 부과하는 작업은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기술을 습득하고 근로의욕을 고취하는 데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제71조(휴일의 작업) 공휴일·토요일과 그 밖의 휴일에는 작업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취사·청소·간호, 그 밖에 특히 필요한 작업은 예외로 한다.

Q
04

확진자 등 피해자 정보공개에 따른 개인 정보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권리 침해

A는 甲시 소속 시민으로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은 사람입니다. 甲시는 A가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기 일주일 전부터 확진판정을 받기까지의 동선과 A의 거주지, 종교 등을 공개하였습니다. 공개된 정보가 인터넷으로 알려지며 A의 실명이 공개되었고 이는 A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로 이어졌습니다. 또한 주변인들에게 알려지고 직장 내 불이익으로도 이어졌습니다.

한편 B는 A의 친구로 A가 확진판정을 받기 전 단순히 접촉했던 사람입니다. 甲시는 B의 동선과 거주지를 공개했고, 이는 B의 신원유출로 이어졌습니다. 감염병 상황에서 정보공개의 법적 근거와 이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한 문제 제기 방법은 무엇인가요?

#정보공개 #개인정보 #민감정보 #이의신청 #국가배상청구

A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2에 따라 감염병환자의 정보는 위기경보 발령 시 공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보의 공개가 개인을 식별 가능하게 하거나, 공개될 수 없는 민감한 정보를 공개한 경우라면 대한민국 헌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위 정보공개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공개대상자는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2는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는 경우 감염병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알아야 하는 정보의 공개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2에 의해 공개되는 정보의 내용, 공개의 수준과 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조항은 감염병예방법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7조는 사생활의 비밀에 대한 보호를 기본권으로서 보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는 이른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대한민국 헌법 제10조 및 제17조에 의해 보장되는 기본권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헌법재판소 2005. 7. 21. 선고 2003헌마282 결정).

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2에 따른 정보공개는 감염병환자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고 있으므로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사생활의 비밀과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약하는 공권력의 행사입니다. 위 정보공개에 의한 기본권 제한은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반드시 법률에 근거해야 하고 과잉금지 및 본질내용침해금지 원칙이 준수되어야 합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적정한 공개 자체는 필요하다 할지라도 내밀한 사적 영역에 근접한 개인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제한하는 국가적 조치는 엄격한 기준과 방법에 따라 섬세하게 행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며(헌법재판소 2007. 5. 31. 선고 2005헌마1139 결정), 민감한 개인정보의 공개로 인한 기본권의 제한이 그 필요성만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는 법리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즉 종교적 신조 등 민감한 정보의 공개에 따른 기본권 제한의 허용성은 엄격하게 검증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헌법재판소 2014. 8. 28. 선고 2011헌마28등 결정 참조).

위와 같은 헌법재판소의 법리에 비추어보면 감염병환자를 식별이 가능하게 공개하거나, 감염병예방법이 규정하지 않은 단순 접촉자 등의 동선 공개 등 과도한 정보공개는 과도한 기본권 침해로서 위법의 소지가 있습니다. 나이, 성별, 종교, 거주하고 있는 시설 등 개인의 내밀한 사적 영역에 해당하는 민감한 정보공개는 더욱 위헌·위법의 소지가 있습니다.

감염확진자 등에 대한 정보공개가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 제3호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이에 대해서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민감정보의 위법한 처리(제23조) 등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가 성립할 소지가 있습니다.

한편, 위 정보공개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공개된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또는 공개된 사항에 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2 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 정보공개 대상자는 위 정보공개를 취소하는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발생한 피해에 대한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헌법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①개인정보처리자는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이하 "민감정보"라 한다)를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3. 29.〉

1. 정보주체에게 제15조제2항 각 호 또는 제1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제59조(금지행위)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는 행위
2.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
3.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하는 행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의2(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①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확산으로 인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면 감염병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알아야 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 게재 또는 보도자료 배포 등의 방법으로 신속히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4.〉

②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공개된 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서면이나 말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신설 2020. 3. 4.〉

1. 공개된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2. 공개된 사항에 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 ③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신청한 이의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된 정보의 정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0. 3. 4.〉
- 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보공개와 이의신청의 범위,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3. 4.〉

[본조신설 2015. 7. 6.]

Q
05

집회 및 시위의 자유 제한

A는 최근 정부가 수립하고 있는 부당한 정책에 항의하기 위해 시민단체가 주최하는 기자회견과 소규모 집회에 참여하였습니다. 경찰들은 현장에서 A를 비롯한 참여자들을 채증했고, 참여자들에게 코로나19 상황에서 기자회견이나 집회는 불법이라며 해산을 명령했습니다. 해산에 불응한 A는 처벌받지 않을까 염려됩니다.

한편 B는 최근 시청광장에서 1인 시위를 하려 합니다. 그러나 시청광장에 집회를 금지한다는 사실을 듣고 1인 시위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감염병 상황에서 집회 및 시위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와 부당한 제한에 대한 문제제기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기자회견 #1인시위 #해산명령 #국가배상

A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따른 예방조치의 일환으로 시·도지사 등이 집회 등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제2호) 제80조 제7호에서 처벌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자회견을 비롯한 모든 형태의 집회가 금지, 해산의 대상이라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헌·위법한 금지 및 해산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의 제기과 헌법소원심판청구가 가능하고,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은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예방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며 제2호에서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의 제한과 금지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한편, 대한민국 헌법 제21조 제1항은 집회·시위·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시위·결사의 자유의 제한은 다른 중요한 법익의 보호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정당화되는 것이고, 그 해산은 원칙적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 명백하게 존재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될 수 있습니다. 즉 집회의 금지와 해산은 집회의 자유를 보다 적게 제한하는 다른 수단, 즉 조건을 붙여 집회를 허용하는 가능성을 모두 소진한 후에 비로소 고려될 수 있는 최종적인 수단인 것입니다(헌법재판소 2003. 10. 30. 선고 2000헌바67 등 결정).

집회·시위·결사의 자유가 가진 소통과 비판 등 민주사회의 핵심적 기능을 고려했을 때, 감염병 상황에서도 집회의 금지와 해산이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그 “필요성”과 “직접적 위협”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하고,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반드시 법률에 근거해야 하고 과잉금지 및 본질내용 침해금지 원칙이 준수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즉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예방조치 또한 집회의 대상, 장소, 제한의 방법을 정함에 있어 위 기준을 준수해야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감염 예방의 필요성이 충분히 입증 안 된 상태로 광범위한 장소에서의 집회 및 시위를 전면 금지하는 형태의 예방조치에 대해서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등을 제기하여 그 취소를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집회 또는 시위의 해산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서만 명할 수 있고, 대법원은 구체적으로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된 경우에 한하여 위 조항에 기하여 해산을 명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1도6294 판결 등). 즉 감염병예방법의 예방조치를 위반했다는 이유만으로는 위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특정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한 해산명령은 위법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법한 강제 해산의 집행에 대해서는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1인 시위는 원칙적으로 집시법 등이 규율하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형사상 타인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 여부는 별론, 집시법상 제지될 수 없습니다. 또한 일시성을 지니는 기자회견 역시 직접적 위험을 초래하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라 보기 어려우며 경찰개혁위원회가 2017년 9월 1일에 기자회견에 관여하지 말라는 권고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기자회견을 해산시키거나 1인 시위를 제지하는 공권력의 행사는 위법의 소지가 있고,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헌법

제21조 ①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①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6., 2015. 12. 29., 2020. 3. 4.>

1. 관할 지역에 대한 교통의 전부 또는 일부를 차단하는 것
2.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

Q 06

언론보도에 따른 허위사실 유포 및 편견·혐오의 조장

A는 제주도 출장에서 서울로 복귀하며 비행기를 이용하였습니다. A는 서울로 복귀한 뒤에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았고, 한 언론사가 A의 인적사항을 밝히며, A가 여행 목적으로 제주도를 다녀왔다는 허위사실을 보도하였습니다.

한편 B는 甲국가 국적을 가진 외국인으로 최근 코로나19 판정을 받고 치료를 받는 중입니다. 한 언론사는 B의 실명과 국적을 밝히며 B가 미등록 외국인이라는 허위사실을 보도하였습니다.

A와 B가 각 언론사 등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언론보도 #개인정보보호법 #명예훼손 #정정보도청구 #손해배상청구

A

언론사들은 「재난보도준칙」 등을 통한 자율규제와 방송법에 의한 법률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제에도 불구하고 발생된 피해에 대해서는 형사적으로 형법상 명예훼손죄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가 적용될 소지가 있습니다. 언론 피해자는 정정보도청구, 언론중재위원회 구제신청 등 다양한 행정구제절차를 이용할 수 있고, 민사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한편 인종을 차별하는 혐오표현을 사용한 보도 등에 대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코로나19는 감염병으로서 사회재난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관련 언론보도는 방송법 제33조에 따라 제정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 또한 한국기자협회 등은 재난에 관한 보도 피해를 막기 위한 「재난보도준칙」, 「코로나19 보도준칙」 등 자율규제를 위한 준칙들을 마련하여 언론사의 자율규제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법률규제와 자율적 규제 제도에도 불구하고 감염병 상황에서 언론사에 의한 피해자의 신원노출 및 혐오 조장 등 인권침해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언론사에 의한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자는 형사 고소·고발과 더불어 피해 회복을 위한 행정적·민사상 구제절차를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 제2호는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 사람은 같은 법 제71조 제5호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원과 사생활을 직접적으로 공개하는 보도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가 성립할 소지가 있습니다. 한편 개인정보는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의미합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호). 따라서 언론사가 신원과 사생활을 직접 공개하지 않더라도, 보도한 인적사항이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피해자가 식별될 수 있다면 여전히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는 성립할 수 있습니다.

언론의 허위사실 보도는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 제2항) 또는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형법 제309조)가 성립할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경우 비방의 목적이 입증되어야 하고,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또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데 대한 인식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언론사의 특성상 위 요건들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가 다수 존재합니다.

언론에 의한 피해는 행정적·민사상 구제절차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은 행정적 구제 절차로서 ① 언론보도를 통한 구제와, ②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한 구제 절차를 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언론중재법은 언론 피해자에게 정정·반론·추후 보도청구권(제14조 내지 제17조)과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 및 중재 신청권(제18조 및 제24조)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언론 피해자는 언론사를 상대로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사법적으로 관철하기 위해 민사상 정정보도청구 등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언론중재법 제27조). 또한 언론보도가 명예훼손 행위인 경우 그 피해자는 언론사를 비롯한 가해자들에게 정정보도 등 적당한 처분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64조). 더불어 언론 피해자는 발생한 피해에 대해 언론사 등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언론중재법 제30조 제1항, 민법 제750조), 침해의 방지·예방과 침해행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물건의 폐기 등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언론중재법 제30조 제3항 내지 제4항).

언론사가 감염병 상황에서 감염된 외국인의 국적과 체류자격 등을 공개하는 경우 이는 언론 피해자 개인은 물론 특정 국가의 다른 외국인에 대한 편견과 혐오를 조장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언론 피해자 및 제3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3. 24.>

1.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59조(금지행위)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
3.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하는 행위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손해의 배상) ①언론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인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거나 인격권 침해 또는 그 밖의 정신적 고통을 받은 자는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언론사등에 청구할 수 있다.

Q 07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생계지원 신청 등 거부, 지원중단, 반환명령

A는 1년 전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하여 긴급복지지원제도에 따라 생계지원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최근 A는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을 상실하였고, 재차 생계지원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러나 담당 공무원은 2년 이내의 재신청이라며 A의 신청을 거부했습니다.

B는 실직하여 소득을 상실해 긴급복지지원제도 생계지원을 받고 있는 도중 甲시장으로부터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으며 지원중단 및 지원비용 반환명령을 받았습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에 따른 수급권 신청 거부 및 제한은 어떠한 절차를 통해 다룰 수 있을까요?

#긴급복지지원제도 #인간다운생활을할권리 #사회적기본권 #이의신청

A

긴급복지지원법(긴급복지법)은 생계유지가 어려운 사람에게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생계지원 등을 긴급히 지원하는 사회복지제도입니다. 신청에 대한 거부와 중단 및 반환명령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고,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긴급지원제도는 긴급복지지원법(긴급복지법)에 따라 생계곤란 등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신속하게 보장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긴급복지법은 제2조에서 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요건을 정

하고 있지만, 더욱 구체적인 요건은 지침과 고시 등 하위법령을 통해 세부적으로 정해집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4조는 제1항에서 모든 국민에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고, 제4항에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는 종종 권리보다는 시혜로 평가되어 그 보장 여부가 단순히 재량의 영역으로 치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회적 권리가 다른 권리와 마찬가지로 법체계 내에서 온전히 실현되어야 한다는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사회권규약) 등 국제인권규범에 반하는 경향입니다.

즉 긴급지원제도에 따른 수급신청 거부와 중단의 문제는 단순히 입법부나 행정부가 재량적으로 정할 수 있는 문제라기보다는 수급지원대상자가 가진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는 문제로서 사법적으로 보다 세밀하게 다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긴급지원제도는 긴급복지법 제2조가 정하는 같은 위기사유로 2년 이내에 재지원할 수 없었지만, 코로나19 위기대응을 위해 한시적으로 지원 횟수가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2년 이내에 같은 위기사유로 지원을 받았던 사람도 긴급복지법에 따른 생계지원 등 수급권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거부를 당하는 경우 긴급복지법 제16조에 따라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정부는 최근 보건복지부고시 제2020-73호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에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무급휴직으로 소득을 상실하거나(제11호),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는 프리랜서의 소득이 급

격히 감소한 경우(제12호)를 신설하였습니다. 따라서 만약 무급휴직자 등이 수급신청을 거부당하는 경우에도 이의신청을 하거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행정소송을 제기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한편 긴급복지법 제15조는 시장 등이 사후조사를 통해 거짓이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는 경우 지체 없이 지원을 중단하고 비용반환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원기간 중 매우 낮은 수준의 소득이 발생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는 경우로 판단되는 등의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중단 및 반환명령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거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행정소송을 제기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한편 긴급복지법 및 관련 법령이 명백한 위기 사황을 범위에 포함하고 있지 않고 있는 경우 이에 대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에 긴급구제신청 및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헌법재판소에 관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헌법

제34조 ①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④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⑥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위기상황”이란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 구성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을 말한다. <개정 2010. 1. 18., 2012. 10. 22., 2014. 12. 30., 2018. 12. 11.>

1. 주소득자(主所得者)가 사망, 기출, 행방불명, 구급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放任)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을 당하여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을 하기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6.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副所得者)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입이 곤란하게 된 경우
 7.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8.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9.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전문개정 2009. 5. 28.]

제15조(지원중단 또는 비용환수)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4조제1항에 따른 심사결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조제3항에 따른 지원을 받은 것으로 결정된 사람에게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자체 없이 지원을 중단하고 지원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4조제1항에 따른 심사결과 긴급지원이 적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결정된 사람에게는 지원을 중단하고 지원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9조제2항에 따른 지원기준을 초과하여 지원받은 사람에게는 그 초과 지원 상당분을 반환하게 할 수 있다.

보전복지부고시(제2020-73호)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11.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12.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는 프리랜서인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

Q 08

격리 대상자의 요건, 절차 및 처우

A는 발열과 기침이 심해 검사를 받고 시설격리가 확정되어 생활치료센터에 격리되었습니다. B는 외국에서 입국하면서 자가격리대상자라는 통지와 함께 자가격리 중 외출금지 등 지켜야 할 생활수칙을 안내받았습니다. 그런데 A와 B 모두 격리 중 지켜야 할 것 위주로 설명을 들었을 뿐이고 자신의 삶 전반을 상당히 제약하는 격리와 관련하여 자신이 어떤 권리가 있는지에 대한 설명은 충분히 듣지 못하였습니다. A와 B가 격리 중 부당한 처우 등을 당하면 어떻게 문제제기를 할 수 있나요?

#격리 #인신구제청구 #변호인의조력을받을권리

A

격리대상자는 그 격리의 근거에 대하여 명확한 설명을 요청할 수 있고, 격리의 통지, 관련 공무원의 증표의 제시, 감염병환자가 아닌 것이 인정되면 즉시 격리 해제 등의 절차가 지켜지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헌법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고 인신보호법상 인신구제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격리는 강제성을 띤 행정처분으로 행정심판,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고, 격리의 개시, 유지, 종료 시 위법부당한 행정작용이 개입된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격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하고 개별 감염병에 관한 격리는 별도의 지침에 의합니다. 감염병예방법은 격

리대상자로 ① ‘감염병환자 등과 접촉하여 감염병이 감염되거나 전파될 우려가 있는 사람’(제41조 제3항), ② ‘감염병 발생지역에 거주 또는 출입하는 사람으로서 감염병에 감염되었을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제46조), ③ ‘조사거부자’(제42조 제7항), ④ ‘감염병의심자(감염병환자 등과 접촉하거나 접촉이 의심되는 사람, 검역법상 특정지역 체류 혹은 경유한 사람으로서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 감염병 병원체 등 위험요인에 노출되어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제42조 제2항, 제47조 제3호, 제49조 제1항 제14호, 제2조 제15의2호) 등을 들고 있습니다. 일반인의 입장에서 개별 격리조치가 이러한 법률에 명확하게 근거한 것인지 판단하기 쉽지 않습니다. 격리대상자는 이러한 격리의 요건이 어떻게 이해되어야 하는지, 개별적인 지침의 내용은 어떻게 이 법률요건에 근거한 것인지에 대한 해석을 보건복지부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행정절차법 제5조).

격리의 절차와 관련하여 감염병예방법령은 자가치료에 대해서 자가치료 대상자라는 사실을 알린다고만 규정하고 있고(제41조 제4항, 시행령 제23조 별표 2), 입원치료에 대해서는 통지서를 통해 입원일, 입원기간, 입원치료 장소 및 주소, 근거 법률조항, 거부 시 형사처벌 등을 통지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제43조, 시행규칙 제32조 별지 제22호 서식). 그러나 일반법인 행정절차법에 의해 격리대상자는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이에 대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의견제출기관의 명칭과 주소, 의견제출기한 등을 통지받을 권리가 있습니다(행정절차법 제21조). 또한 감염병예방법은 관련 공무원의 증표제시 의무도 규정하고(제42조 제5항), 감염병의심자 및 조사거부자의 인신보호법에 근거한 인신구제청구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제42조 제10항). 헌법재판소 2018. 5. 31. 선고 2014헌마346 결정은 행정기관에 의한 행정 구급에도 헌법 제12조 제4항이 보장하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인정됨을 확인한 바 있고 이는 감염병예방법상의 격리에도 적용됩니다.

위와 같은 실체적 혹은 절차적 요건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거나 절차상의 권리 행사가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 즉각적인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위법·부당한 행정작용으로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명백히 위법한 행정작용에 대해서는 직권남용죄 등 형사소송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또한 관련 기관의 인권침해 혹은 차별행위에 대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고(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관련 기관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권리를 침해당하거나 불편 또는 부담이 가해진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중앙정부) 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지자체)에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조 제5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감염병환자등의 관리) ③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자기(自家) 또는 감염병관리시설에서 치료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 1. 18.>

1.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입원치료 대상자가 아닌 사람
2. 감염병환자등과 접촉하여 감염병이 감염되거나 전파될 우려가 있는 사람

제42조(감염병에 관한 강제처분) ②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급감염병이 발생한 경우 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감염병의심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공무원은 감염병 증상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나 진찰을 할 수 있다. <신설 2020. 3. 4.>

1. 자기(自家) 또는 시설에 격리
 2. 유선·무선 통신,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기기 등을 이용한 감염병의 증상 유무 확인
- ⑦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조사거부자를 자기 또는 감염병관리시설에 격리할 수 있으며, 제4항에 따른 조사·진찰 결과 감염병환자등으로 인정될 때에는 감염병관리시설에서 치료받게 하거나 입원시켜야 한다. <신설 2015. 12. 29., 2020. 3. 4.>

제46조(건강진단 및 예방접종 등의 조치)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건강진단을 받거나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예방접종을 받게 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0. 1. 18., 2015. 7. 6.>

1. 감염병환자등의 가족 또는 그 동거인
2. 감염병 발생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또는 그 지역에 출입하는 사람으로서 감염병에 감염되었을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
3. 감염병환자등과 접촉하여 감염병에 감염되었을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

제47조(감염병 유행에 대한 방역 조치)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6., 2020. 3. 4.>

3.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것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①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6., 2015. 12. 29., 2020. 3. 4.>

14.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것

Q 09

부당한 강제처분

A는 문화예술단체의 상근자로 오래 전부터 서울 시내에서 개최되는 문화행사를 준비해왔습니다. 정부 정책인 사회적 거리두기의 취지를 최대한 존중하면서 소규모로 단기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행사를 진행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는 얘기를 들어 걱정입니다.

B는 단란주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최근 서울 강남 소재 대형 유흥업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면서 서울시는 해당 업소를 포함한 유흥업소 전반에 대하여 무기한 집합금지명령을 내려 기약 없이 영업을 할 수 없게 되어 걱정입니다.

C는 최근 입국해 격리 중입니다. 입국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자가격리 앱을 깔았는데 전자팔찌를 부착해야 한다는 얘기도 들려 걱정입니다. 이러한 강제처분의 근거와 기준, 부당한 강제처분에 대한 문제제기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강제처분 #예방조치 #행정지도

A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의심자 또는 조사거부자에 대해 법률이 정한 강제처분을 할 수 있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교육부장관, 육군·해군·공군 소속 부대의 장, 국방부직할부대의 장 등도 강제적인 예방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강제처분 또는 예방조치는 모두 기본권을 제한하는 조치로 헌법 제37조 제2항의 제

한과 헌법 제11조의 평등과 차별금지의 원칙하에 이루어져야 하고, 신체의 자유에 대한 제한 또한 헌법 제12조에 따른 적법절차의 원칙과 명확성의 원칙이 준수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기준에 위배되는 강제조치에 대해서는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통해 그 취소를 구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국가배상청구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권고의 형태를 띠거나 동의를 전제로 하는 행정지도의 경우에도 불이행 시 불이익이 예견되는 경우에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은 감염병에 대한 강제조치로서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① 감염병환자 등이 있는 장소에서의 조사 혹은 진찰, ② 인정된 감염병환자 등에 대한 동행치료 혹은 입원, ③ 감염의심자에 대한 조사나 진찰, 자가격리 또는 시설격리, 유선·무선 통신,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기기 등을 이용한 감염병의 증상 유무 확인, ④ 조사거부자에 대한 동행조사 혹은 진찰, 자가격리 또는 시설격리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제42조). 감염병예방법은 또한 감염병의 예방조치로서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① 관할 지역에 대한 교통의 전부 또는 일부를 차단하는 것, ②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 ③ 공중위생에 관계있는 시설 또는 장소에 대한 소독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는 것, ④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것(제49조), 그리고 ⑤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의 휴업, 휴교 또는 휴원 명령(제50조)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3월 21일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일부 시설·업종 운영 제한, 3월 29일 해외입국자 방역관리 강화방안, 서울시의

2월 26일 고시에 의한 도심 내 집회 제한, 3월 23일 사랑제일교회 집회금지명령, 대구시의 3월 7일 고시에 의한 도심 내 집회 등 제한 등이 위 감염병예방법 규정들에 근거한 조치입니다. 감염병 예방의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집회 금지, 자가격리 앱 설치, 전자팔찌 부착 등은 집회결사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 기본권에 대한 제한임이 명백함으로 헌법상 기본권 원칙의 일반원칙을 규정한 헌법 제37조 제2항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기본권 제한은 ①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등의 목적이 있어야 하고, ②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하고, ③ 과잉금지원칙(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피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이 지켜져야 하고, ④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헌법 제11조의 평등과 차별금지의 원칙이 지켜져야 하고, 신체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헌법 제12조에 따른 적법절차의 원칙이 준수되어야 할 것이고 법치주의로부터 파생되는 명확성의 원칙 등도 준수되어야 합니다. 특히 국제인권기준의 관점에서 보건을 위한 모든 조치는 “기간”이 제한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유엔 경제,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위원회, 일반논평 제14호: 도달 가능한 최고 수준의 건강에 대한 권리, 제29항).

이러한 기준에 위배되는 강제조치에 대해서는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통해 그 취소를 구할 수 있고 감염병예방법상 손실보상은 대상이 되지 않아 받을 수 없더라도 국가배상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편, 코로나19에 대한 정부의 대응 혹은 대응 논의에서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동의를 전제된 자가격리 앱 설치 혹은 전자팔찌 부착 등 강제적인 행정처분이 아닌 ‘지도, 권고, 조언 등’(행정절차법 제2조 제3호) 행정지도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조치가 다수 존재합니다. 우선 전자팔찌 부착에 대한 동의 등 엄밀한 의미로 자유의사에 의한 기초한 것이 될

수 없는 동의를 전제로 하는 조치는 행정쟁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소지가 있습니다. 한편 행정지도의 경우 ① 비례원칙, ② 임의성의 원칙, ③ 불이익조치금지의 원칙이 지켜져야 하고(행정절차법 제48조), 행정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행정쟁송의 대상이 되지 않지만 불이행 시 일정한 불이익조치를 예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헌법소송의 대상이 되고(헌법재판소 2003. 6. 26. 선고 2002헌마337, 2003헌마7·8(병합) 결정), 손해의 발생 시 국가배상청구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8. 7. 10. 선고96다38971 판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손실보상) ①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실을 입은 자에게 제70조의2의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29., 2018. 3. 27.>

1.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른 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 또는 격리소 등의 설치·운영으로 발생한 손실
 - 1의2. 제39조의3에 따른 접촉자 격리시설의 설치·운영으로 발생한 손실
2. 이 법에 따른 조치에 따라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등을 진료한 의료기관의 손실
3. 이 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폐쇄 또는 업무 정지 등으로 의료기관에 발생한 손실
4. 제47조제1호, 제4호 및 제5호, 제48조제1항, 제49조제1항제4호, 제6호부터 제10호까지, 제12호 및 제13호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
5. 감염병환자등이 발생·경유하거나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사실을 공개하여 발생한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에 따른 요양기관의 손실로서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손실에 준하고, 제70조의2에 따른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하는 손실

Q 10

장애학생을 위한 온라인 학습 지원장비 등 제공에 관한 법적근거

청각장애가 있는 중학생 A는 구화를 하여 평소 수업시간에 학교 선생님들의 입술모양을 읽으며 공부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온라인 개학을 하여 일부 수업이 수업자료와 선생님의 목소리만으로 진행되거나 선생님의 강의 화면연결이 자주 끊겨서 타인의 도움 없이 A 스스로 수업을 따라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A는 학교에서 온라인 수업에 대한 수어나 문자통역을 제공하여 스스로 수업을 듣고 공부를 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A의 학교 측은 비장애인 학생이 대다수인 상황에서 전례 없는 온라인 수업을 준비하는 것만으로도 버거운 상황이라 A를 위한 추가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A가 학교로부터 온라인 수업에 따른 학습지원장비 등을 제공받을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장애 #통합교육 #온라인개학 #정당한편의제공

A

A는 헌법과 장애인차별금지법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책임자인 학교장에 대하여 온라인 교육에 필요한 장애인보조기구 등 의사소통수단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헌법 제1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누구든지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제1항은 장애인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

유 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 등을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금지하고 있으며, 악의적으로 차별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제49조).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제3항은 정당한 사유에 대하여 “금지된 차별행위를 하지 않음에 있어서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 등이 있는 경우”와 “금지된 차별행위가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정당한 사유 중 “과도한 부담”이란 “편의 제공자가 해당 편의를 제공함에 있어 막대한 비용이 필요하고 경제적으로 심각한 타격을 입어 더 이상 사업을 유지하기 어렵게 되는 경우, 편의 제공자의 사업이나 다른 참여자들의 관련 활동을 상당히 훼손하거나, 편의 제공자의 사업 성격이나 운영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경우” 등을 의미하며, 단순히 편의제공으로 비용 부담이 발생하는 것만으로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²⁾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의 통합교육을 지향하는 취지에서 교육책임자의 차별금지(제13조)와 교육책임자의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제14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육책임자는 당해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장애인 및 그 보호자가 법률에 따른 편의제공을 요청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해서는 아니 되며(제13조 제3항), 특정 수업 등 모든 교내외 활동에서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의 참여를 제한, 배제, 거부하여서는 아니 됩니다(제13조 제4항). 구체적으로 교육책임자는 당해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장애인이 필요로 하는 경우 교육보조인력을 배치하거나(제14조 제1항 제2호), 장애로 인한 학습 참여의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한 확대독서기, 보청기기, 낮낮이 조절용 책상, 각종 보완대체 의사소통 도구 등의 대여 및 보조건의 배치나 휠체어의 접근

2)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결정, 고속시외버스 등 이용 시 휠체어 사용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 미제공, 2017. 7. 3.

을 위한 여유 공간 확보를 하여야 합니다(제14조 제1항 제3호). 시·청 각 장애인의 경우 교육에 필요한 한국수어통역, 문자통역(속기), 점자자료, 점자·음성변환용 코드가 삽입된 자료, 자막, 큰문자자료, 화면낭독·확대프로그램, 보청기기, 무지점자단말기, 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를 포함한 각종 장애인보조기구 등 의사소통수단 등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제공하여야 합니다(제14조 제1항 제4항). 또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에 대한 모든 차별을 방지하고 차별받은 장애인 등의 권리를 구제할 책임이 있으며, 차별 해소를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제8조 제1항).

A는 헌법과 장애인차별금지법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책임자인 학교장에 대하여 온라인 교육에 필요한 장애인보조기구 등 의사소통수단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학교 측이 주장하는 온라인 수업 준비의 어려움 등은 과도한 경제적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유가 있거나 수업 수행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로 보기 어렵습니다. A에게 정당한 편의제공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A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국가인권위원회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습니다(제38조,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더불어 A는 학교 등의 차별행위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46조).

헌법

제11조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차별행위) ①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장애인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

- 는 경우
2. 장애인에 대하여 형식상으로는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지 아니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하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한 제한·배제·분리·거부 등 불리한 대우를 표시·조장하는 광고를 직접 행하거나 그러한 광고를 허용·조장하는 경우. 이 경우 광고는 통상적으로 불리한 대우를 조장하는 광고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를 포함한다.
 5. 장애인을 돕기 위한 목적에서 장애인을 대리·동행하는 자(장애아동의 보호자 또는 후견인 그 밖에 장애인을 돕기 위한 자인이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장애인 관련자”라 한다)에 대하여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를 하는 경우. 이 경우 장애인 관련자의 장애인에 대한 행위 또한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 여부의 판단대상이 된다.
 6. 보조견 또는 장애인보조기구 등의 정당한 사용을 방해하거나 보조견 및 장애인보조기구 등을 대상으로 제4호에 따라 금지된 행위를 하는 경우
 - ②제1항제3호의 “정당한 편의”라 함은 장애인이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하게 같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한 편의시설·설비·도구·서비스 등 인적·물적 제반 수단과 조치를 말한다.
 -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별로 보지 아니한다.
 1. 제1항에 따라 금지된 차별행위를 하지 않음에 있어서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 등이 있는 경우
 2. 제1항에 따라 금지된 차별행위가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 이 경우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은 교육 등의 서비스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본다.

제13조(차별금지) ①교육책임자는 장애인의 입학 지원 및 입학에 거부할 수 없고, 전학을 강요할 수 없으며,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는 장애인이 당해 교육기관으로 전학하는 것을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 6. 7.〉

②제1항에 따른 교육기관의 장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7조를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0. 5. 11.〉

③교육책임자는 당해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장애인 및 그 보호자가 제14조제1항 각 호의 편의 제공을 요청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교육책임자는 특정 수업이나 실험·실습, 현장견학, 수학여행 등 학습을 포함한 모든 교내외 활동에서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의 참여를 한, 배제,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교육책임자는 취업 및 진로교육, 정보제공에 있어서 장애인의 능력과 특성에 맞는 진로교육 및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⑥교육책임자 및 교직원은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 특수교육 교원, 특수교육보조원, 장애인 관련 업무 담당자를 모욕하거나 비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교육책임자는 장애인의 입학 지원 시 장애인 아닌 지원자와 달리 추가 서류, 별도의 양식에 의한 지원 서류 등을 요구하거나,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면접이나 신체검사, 추가시험 등(이하 “추가서류 등”이라 한다)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추가서류 등의 요구가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시행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에게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교육과정에 정한 학업시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 5. 11.>

제14조(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①교육책임자는 당해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장애인의 교육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다음 각 호의 수단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2. 3., 2017. 12. 19.>

1. 장애인의 통학 및 교육기관 내에서의 이동 및 접근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기 위한 각종 이동용 보장구의 대여 및 수리
2.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가 필요로 하는 경우 교육보조인력의 배치
3. 장애로 인한 학습 참여의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한 확대 독서기, 보청기기, 높낮이 조절용 책상, 각종 보완·대체 의사소통 도구 등의 대여 및 보조건의 배치나 휠체어의 접근을 위한 여유 공간 확보
4. 시·청각 장애인의 교육에 필요한 한국수어 통역, 문자통역(속기), 점자자료 및 인쇄물 접근성바코드(음성변환용 코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표시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삽입된 자료, 자막, 큰 문자자료, 화면낭독·확대프로그램, 보청기기, 무지점자단말기, 인쇄물 음성변환출력기를 포함한 각종 장애인보조기구 등 의사소통 수단
5. 교육과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학습진단을 통한 적절한 교육 및 평가방법의 제공
6. 그 밖에 장애인의 교육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데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교육책임자는 제1항 각 호의 수단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장애학생지원부서 또는 담당자를 두어야 한다.

③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적용대상 교육기관의 단계적 범위와 제2항에 따른 장애학생지원부서 및 담당자의 설치 및 배치, 관리·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Q 11

자가격리 대상자의 가정폭력 피해

A는 코로나19로 인한 격리 기간에 배우자 B로부터 가정폭력을 당하여 이에 관한 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문의하였습니다. A와 B는 동시에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하여 자가격리 대상자가 되었고, 함께 사는 원룸에서 격리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B는 격리 생활에 불만을 표출하며 A에게 언어적, 육체적 폭력을 가하였습니다. A는 지역 보건소로부터 절대 집 밖을 나가면 안 되고, 격리 지역을 이탈하면 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을 들은 터라 집 밖으로 나가 도움을 요청할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A가 가정폭력 피해자로서 받을 수 있는 법적 보호 수단은 무엇인가요?

#여성 #가정폭력 #자가격리

A

A는 가족 구성원으로부터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당한 가정폭력의 피해자로서 가정에서 독립적인 생활을 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적절한 자가격리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것인바, 지자체 등은 A가 원한다면 생활치료센터 등 자택 외의 시설에서 격리기간을 마칠 수 있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불어 가정폭력방지법에 따라 A 또는 A의 법정대리인은 가정폭력행위자인 B를 고소할 수 있으며(제6조 등),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등의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동법 제8조, 제8조의2, 제29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감염병 발생 또는 유행 시 감염병환자 등의 접촉자를 격리하기 위한 시설(감염병 관리시설)을 지정하여야 하는데(제39조의3 제1항), 접촉자가 대량으로 발생하거나 위 지정된 접촉자 격리시설만으로 접촉자를 모두 수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법률로 정한 접촉자 격리시설이 아닌 시설을 일정기간 동안 접촉자 격리시설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제39조의3 제2항). 또한,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환자 등과 접촉하여 감염될 우려가 있는 사람을 자가(自家) 또는 감염병관리시설에서 치료하게 할 수 있습니다(제41조 제3항 제2호). 나아가 이들은 입원 또는 격리된 사람에게 치료비, 생활 지원 및 그 밖의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제70조의4 제1항), 입원 또는 격리되어 자녀에 대한 돌봄 공백이 발생하면 아이돌봄서비스 등의 필요한 조치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제70조의4 제2항).

정부 중앙방역대책본부·중앙사고수습본부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지자체용)’ 제7-4판에 따르면, 자가격리 대상자 중 적절한 자가격리가 어려운 경우(가정에서 독립적인 생활이 어려운 경우, 적절한 거주지가 없는 경우, 고위험군과 동거하는 경우 등) 및 지자체가 생활치료센터 입소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자 등은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할 수 있습니다(23쪽).

한편, 감염병확진환자 접촉자는 확진검사를 시행하여 음성으로 확인되더라도, 기존 자가격리 및 능동감시는 14일간 지속됩니다(34쪽). 일련의 격리 조치를 위반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제79조의3).

A는 가족 구성원으로부터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당한 가정폭력의 피해자로서 가정에서 독립적인 생활을 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적절한 자가격리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것인바, 지자체 등은 A가 원한다면 생활치료센터 등 자택 외의 시설에서 격리기간을 마칠 수 있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습니다. 격리기간 이후에는 A가 원하면 가정폭력피해자를 위한 보호시설에서 지내며 숙식, 심리치료, 법률서비스 연계, 자립자활교육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의3 제1항, 제8조).

더불어 가정폭력방지법에 따라 A 또는 A의 법정대리인은 가정폭력행위자인 B를 고소할 수 있으며(제6조 등),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등의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동법 제8조, 제8조의2, 제29조). 접근금지조치가 내려지는 경우 A가 자택에 머물고 가정폭력행위자인 B가 생활치료센터 등 자택 외의 시설에서 격리되도록 조치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A와 같이 가정폭력의 피해를 당한 경우 아래 세 곳에서 무료법률상담 및 무료법률구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대한법률구조공단 : 국번없이 132, <http://www.klac.or.kr>
2.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대표번호 : 1644-7077, <http://lawhome.or.kr>
3. 대한변호사협회 법률구조재단 : 02-3476-6515, <http://legalaid.or.kr>

이주여성은 다누리 콜센터를 통해 연계를 문의할 수 있습니다(1577-1366).

Q 12

탈가정 청소년의 긴급재난지원금 대상 해당 여부

A는 학대로 인해 원가정을 벗어난 탈가정 청소년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유일한 생계수단이었던 아르바이트 일자리가 끊긴 A는 본인이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문의 하였습니다. A의 입장은 “가족과는 서류상으로만 연결되어 있을 뿐이고 자립하여 1인 가구를 구성해 살고 있으므로, 1인 가구에 해당하는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에 해당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은 가구 단위로 지급되며, 가구는 2020년 3월 29일 기준, 세대별 주민등록 표상 가구원을 적용”하는데, “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는 주소지를 달리하더라도 동일가구로 본다.”는 입장입니다.³⁾ A는 정부의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 지원금 대상이 될 수 있는가요?

#탈가정 #청소년 #긴급재난지원금 #건강보험_피부양자

A

A는 가구 단위로 지급되는 긴급재난지원금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그 선정기준이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 재판소에 헌법소원이나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해 볼 수 있습니다.

3) 정부 관계부처 합동 보도자료,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기준 원칙 마련, 2020. 4. 3.

A는 가정을 나와 스스로 생계를 꾸리며 자립하였지만, 아직 미성년자로 주민등록표상 원가정의 가구원에 해당하는 바, 가구 단위로 지급되는 긴급재난지원금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기준 원칙이 가구원 해당 여부만을 기준으로 하여 탈가정 청소년 등을 보편적 복지체계에서 배제하고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원가정과 연락할 것을 강제한다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 헌법 제11조 평등권, 제17조 사생활의 자유 침해 등을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을 청구하거나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제1항)을 제기해볼 수 있습니다.

CHAPTER
07

임대차 관계

01. 영업이익이 급감한 임차인의 상가건물 임대차계약 해지
02. 임차인의 차임연체로 인한 임대인의 상가건물 임대차계약 해지
03. 상가건물 임차인의 차임감액청구권
04. 상가건물 임차인 퇴거 불응
05. 상가건물 임대인에 대한 정책지원
06. 상가임대차 차임증감에 관한 분쟁해결방법
 - 06-1. 상가건물 전대인(임차인)의 차임증액청구
07. 임대차계약 계약금 반환청구(코로나19 확진자 거주 주택)
08. 경제적 사정 악화로 인한 잔금지급의무 불이행과 임대차계약 해제
09. 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한 잔금지급의무 불이행과 임대차계약 해제
10. 주택 임차인의 차임감액청구권
11. 주택 임차인의 차임연체
12. 주택 임대차 보증금 반환

Q 01

영업이익이 급감한 임차인의 상가건물 임대차계약 해지

임차인 B는 2020년 1월 초순경부터 대구 범어동 소재 임대인 A 소유의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음식점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 건물의 임대차계약기간은 2020년 1월 초순경부터 2022년 2월 초순경까지이고, 보증금 5,000만 원, 월차임 1,000만 원입니다. 임차인 B의 영업이익은 지역적으로 코로나19가 집중적으로 발생하게 되어 월 100만 원 미만으로 급감하였고, 이에 임차인 B는 2020년 4월을 기준으로 계약해지 조건인 3기의 차임액을 넘는 4,000만 원의 차임을 연체하였습니다.

임대인 A는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에서 연체차임액을 공제하여 보증금 잔액이 소멸될 때까지 계약해지 통보를 보류하겠다고 합니다.

임차인 B는 연체차임을 공제한 후 잔존 보증금 1,000만 원이라도 보전하기 위해 임대인 A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하려는데 가능할까요?

#영업이익급감 #경제사정의변동 #상가임대차해지

A

임차인은 경제사정 변동을 이유로 상가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임차인은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나 법원의 민사조정절차를 통해 임대인과 교섭해 볼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경우는 ① 임대인이 임차인의 의사에 반하는 보존행위를 하여 임차인이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민법 제625조), ② 임차건물의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 없이 멸실하여 잔존부분으로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민법 제627조), ③ 임대인의 지위가 양도되는 경우(대법원 1998. 9. 2. 자 98마100 결정 참조) 등과 같이 임대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로 제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기간 중 경제적 불황으로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차임을 연체한 경우, 임대차계약해지는 임대인만 가능하고, 임차인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임차인이 경제적인 사정변경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기는 어렵습니다. 차선책으로 임차인은 다른 임차인을 주선하여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방법을 강구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불확실하거나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0조에 따라 상가건물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또는 법원에 조정신청을 하여 임대인과 원만한 합의를 유도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조정신청은 신청인과 피신청인 모두 동의하에 출석할 경우 진행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6개의 지부(서울, 수원, 대전, 대구, 부산, 광주) 및 서울시 등 각 시·도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민법

제625조(임차인의 의사에 반하는 보존행위와 해지권) 임대인이 임차인의 의사에 반하여 보존 행위를 하는 경우에 임차인이 이로 인하여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627조(일부멸실 등과 감액청구, 해지권) ①임차물의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없이 멸실 기타 사유로 인하여 사용, 수익할 수 없는 때에는 임차인은 그 부분의 비율에 의한 차임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 그 잔존부분으로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차임연체와 해지)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20조(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①이 법의 적용을 받는 상가건물 임대차와 관련된 분쟁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률구조법」 제8조에 따른 법률구조공단의 지부에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을 고려하여 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감에 관한 분쟁
2. 임대차 기간에 관한 분쟁
3. 보증금 또는 임차상가건물의 반환에 관한 분쟁
4. 임차상가건물의 유지·수선 의무에 관한 분쟁
5. 권리금에 관한 분쟁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가건물 임대차에 관한 분쟁

대법원 1998. 9. 2. 자 98아100 결정

임대차계약에 있어 임대인의 지위의 양도는 임대인의 의무의 이전을 수반하는 것이지만 임대인의 의무는 임대인이 누구인가에 의하여 이행방법이 특별히 달라지는 것은 아니고, 목적물의 소유자의 지위에서 거의 완전히 이행할 수 있으며, 임차인의 입장에서 보아도 신 소유자에게 그 의무의 승계를 인정하는 것이 오히려 임차인에게 훨씬 유리할 수도 있으므로 임대인과 신 소유자와의 계약만으로써 그 지위의 양도를 할 수 있다 할 것이나, 이 경우에 임차인이 원하지 아니하면 임대차의 승계를 임차인에게 강요할 수는 없는 것이어서 스스로 임대차를 종료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공평의 원칙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임차인이 곧 이익을 제기함으로써 승계되는 임대차관계의 구속을 면할 수 있고, 임대인과의 임대차관계도 해지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Q
02임차인의 차임연체로 인한 임대인의
상가건물 임대차계약 해지

임대인 A는 2020년 1월경 부산 소재 상가건물에 관하여 임차인 B와 계약기간 2020년 1월 초순경부터 2025년 1월 초순경까지, 보증금 5,000만 원, 월차임 1,00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로 임차인 B의 영업이익이 급감하자 2020년 4월 기준 연체차임의 누적액이 2,000만 원에 달하게 되었습니다. 임대인 A는 임차인 B의 연체차임액이 곧 3기의 차임액에 달하고, 머지않아 보증금도 소멸하게 될 것이 우려되었습니다. 이에 임대인 A는 2020년 4월경 임차인 B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하였는데 임대인 A의 계약해지통보는 유효한가요?

#영업이익급감 #차임연체 #상가임대차해지

A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에 따라 임대인은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므로, A는 향후 연체차임이 증가될 것이 예상된다는 이유만으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에 따르면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가 있을 경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하고,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인정됩니다. 즉,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고 있으며, 민법 제652조는 임대차에 관한 일

부 규정을 강행규정으로 하여 이에 위반하는 약정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무효로 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상가건물임대차의 경우 임대인의 계약해지사유로는 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이 규정한 대로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상당할 경우, ② 민법 제629조가 정한 대로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인이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차목적물을 전대하는 경우, ③ 민법 제637조가 정한 대로 임차인이 파산선고를 받는 경우 등으로 한정됨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의 향후 연체차임액이 3기에 상당할 것으로 예측된다는 것을 근거로 임대인의 일방적인 의사에 따라 계약해지통보를 하는 것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및 민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계약해지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임대인 A의 계약해지통보는 무효라 할 것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①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
5.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6.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 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 나. 건물이 노후·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 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8.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제10조의8(차임연체액과 해지)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민법

제629조(임차권의 양도, 전대의 제한) ①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한다.

②임차인이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637조(임차인의 파산과 해지통고) ①임차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임대차기간의 약정이 있는 때에도 임대인 또는 파산관재인은 제6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Q 03

상가건물 임차인의 차임감액청구권

임대인 A와 임차인 B는 2020년 2월경 제소전화해를 하였습니다. 임차목적물은 부산 소재의 건물이고, 계약기간은 2020년 1월경부터 2025년 1월경까지, 보증금 2억 원, 월차임 2,000만 원입니다. 동 계약은 임대인 A와 임차인 B가 종전과 같은 계약조건으로 갱신한 것이었습니다.

한편, 임차인 B는 제소전화해 과정에서 임대인 A에게 코로나 19로 영업이익이 급감하여 사업이 폐업 직전이라는 이유로, 제소전화해 비용을 자신이 부담하는 대신 월차임을 인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임대인 A는 건물유지보수 비용이 많이 들고, 임차인 B의 말대로 월차임을 낮추어 주면 다른 임차인도 낮추어 주어야 하며, 결국 자신의 임대사업도 피해를 보게 된다고 완강히 거절하였습니다. 임차인 B에게는 어떤 구제방법이 있을까요?

#영업이익급감 #경제사정의변동 #착한임차료 #월차임인하요구

A

임차인은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조정신청을 하여 임대인과 교섭해 볼 수 있습니다.

본건은 코로나19를 원인으로 임차인이 차임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는지가 핵심쟁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는 '차임이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

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 사정 등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당사자는 장래의 차임에 대해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울산 신공항청사의 개청과 함께 이 사건 식당과 스낵코너를 임대받은 원고들의 영업실적이 예상보다 저조하였다고 하여도 이는 경영예측과 이에 따른 투자의 실패로서 원고들 스스로가 이를 감수하여야 할 사정에 불과하고, 이 사건 식당과 스낵코너에 대한 사용료 약정이 임차물에 대한 공과부담 기타 경제사정 등의 변경으로 인하여 현저히 부담하게 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판시한 바 있고(대법원 2004. 1. 15. 선고 2001다12638 판결 참조), 하급심은 “IMF로 국가적 경제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임차인은 주변 상가의 임대료가 하락한 것을 이유로 임차한 점포의 임대료 감액을 청구하는 내용증명을 임대인에게 보내었으나 임대인이 이를 거부했고, 임차인의 연체차임액이 2기분에 달하자 임대인은 임차인과 작성한 제소전화해조서 정본에 기하여 명도집행을 하였는데 소송 중 임차인은 계약기간 중 임대인을 상대로 월차임감액청구한 것으로 항변했으나 이 사건 점포에 대한 약정차임이 임대차계약 체결 후의 경제적인 사정 변경으로 정의와 형평에 어긋날 정도로 불합리하게 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여 임차인의 임료 감액청구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 바 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1999. 10. 06. 선고 98가합92516판결 확정).¹⁾²⁾

이를 종합하여 보면, 임차인의 차임감액청구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① 계약 당시 예상하지 못하였던 경제위기로 인하여 경제사정이 현저히 변

1) 관련 판례들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아닌 민법 제628조(차임증감청구권) 규정이 적용된 사안입니다.
2) 민법 제628조(차임증감청구권) 임대물에 대한 공과부담의 증감 기타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약정한 차임이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당사자는 장래에 대한 차임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경되었을 것, ② 그 경제사정의 변경이 임차인에게 책임 없는 사유일 것, ③ 기존 차임 약정에 임차인을 구속시키는 것이 현저히 부당할 것 등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임대인이 차임감액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위 요건이 충족되었음을 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나 법원 조정절차를 통하여 임대인과 교섭해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6개의 지부(서울, 수원, 대전, 대구, 부산, 광주) 및 서울시 등 각 시·도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①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 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당사자는 장래의 차임 또는 보증금에 대하여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제1항에 따른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 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제20조(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①이 법의 적용을 받는 상가건물 임대차와 관련된 분쟁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률구조법」 제8조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지부에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을 고려하여 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감에 관한 분쟁
2. 임대차 기간에 관한 분쟁
3. 보증금 또는 임차상가건물의 반환에 관한 분쟁
4. 임차상가건물의 유지·수선 의무에 관한 분쟁
5. 권리금에 관한 분쟁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가건물 임대차에 관한 분쟁

Q
04

상가건물 임차인 퇴거 불응

임대인 A는 자신의 상가건물을 보증금 1억 원, 월차임 2,500만 원, 임대차계약기간을 2020년 1월경부터 2023년 1월경까지 정하여 임차인 B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임대인 A는 계약체결 당시 임차인 B의 사정을 고려해 보증금을 저가로 정해주었는데, 코로나19로 인하여 영업의 타격을 입은 임차인 B는 2020년 2월경부터 같은 해 5월경까지 월차임을 4회 연체하였고 같은 해 6월경에도 영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못하였습니다. 임대인 A는 임차인 B의 퇴거를 요구하였으나, 임차인 B는 조금만 기다려 달라며 차일피일 명도를 미루고 있습니다. 임대인 A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가건물 #영업타격 #월차임연체 #명도지연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A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할 경우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계약 해지 후에도 임차인이 상가건물을 계속 점유하면 건물명도소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신속한 절차를 위해서 임대인과 임차인 합의하에 제소전화해 결정문을 확보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또한 보다 원만한 분쟁해결을 위해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에 따라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할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계약 해지 후에도 상

가건물을 명도하지 않고 계속 점유한다면 임차인의 퇴거를 요구하고 상가건물의 인도를 구하는 건물명도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본 건과 같이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하고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임차인이 퇴거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상가건물의 목적물에 대한 명도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 도중 임차인이 임의로 상가건물을 타인에게 이전하면 기존 임차인을 대상으로 한 판결을 받을 실익이 없게 되는 상황에 처할 수 있는 바, 소송 진행과 함께 임차인이 점유를 타인에게 이전할 수 없도록 점유이전가처분 신청을 해두는 것도 필요합니다. 임대인이 명도소송에서 승소판결을 확보한 후에는 이를 기초로 임차인을 퇴거시키고 상가건물을 인도받는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임대인이 임차인의 차임연체가 지속될 것으로 예견될 경우 연체 차임액이 3기 상당액에 달하기 전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하에 제소전 화해조서를 작성하여 법원으로부터 위 결정문을 확보한 다음, 추후 제소전화해조서를 기초로 집행문을 받아 곧바로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실무상 제소전화해조서를 기초로 건물명도의 집행신청을 할 경우 약 5주의 기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한편, 임차상가건물의 반환에 관한 분쟁 등은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 위원회를 통하여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6개의 지부(서울, 수원, 대전, 대구, 부산, 광주) 및 서울시 등 각 시·도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차임연체와 해지)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20조(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①이 법의 적용을 받는 상가건물 임대차와 관련된 분쟁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률구조법」 제8조에 따른 대한 법률구조공단의 지부에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을 고려하여 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감에 관한 분쟁
2. 임대차 기간에 관한 분쟁
3. 보증금 또는 임차상가건물의 반환에 관한 분쟁
4. 임차상가건물의 유지·수선 의무에 관한 분쟁
5. 권리금에 관한 분쟁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가건물 임대차에 관한 분쟁

Q 05

상가건물 임대인에 대한 정책지원

상가임대인 A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 B에게 3개월간 차임을 30% 인하해주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이 경우 A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무엇일까요?

#착한임대인 #차임감액 #혜택 #정책지원

A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세액공제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진행하는 각종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의3(상가임대료를 인소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이 2020년 3월 23일에 신설되었고, 이에 따라 위 규정에 적용을 받는 임대사업자라면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 차임을 인하하여 지급받는 경우 임대료 인하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세 10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낮추는 경우 인하분 50만 원의 50%인 25만 원을 납부해야 할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가건물에 대한 임대료를 인소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공제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만일 서울시에 위치한 상가를 소유하고 있는 환산보증금 9억 원 이하 점포의 임대인이라면 서울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서울형 착한 임대인’으로 선정되어 건물보수, 방역, 홍보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자격 대상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가건물 점포에 대해 임대인과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임차인이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임대료 인하를 결정하면 총 인하액의 30% 범위로 최대 500만 원의 건물보수 및 전기안전점검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에 더해 상생협약 기간·인하액에 비례하여 상가 점포의 정기 방역을 지원받을 수 있고, 또한 스마트폰 부동산 앱 상에서 ‘착한 임대인 건물’ 홍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은 소재지 구청에 방문하거나 우편접수를 통해 할 수 있고, 각 자치구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통해 선정 결정이 이뤄지게 됩니다.

나아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착한 임대인 지원에 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바, 서울에 위치한 상가임대인이 아니라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지속적으로 문의를 하시거나 홈페이지를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의3(상가임대료를 인정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임대사업을 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가건물에 대한 임대료를 임차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상공인에 한정한다)으로부터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이하 이 조에서 “공제기간”이라 한다) 인하여 지급받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료 인하여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6조의3(상가임대료를 인정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법 제96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임대사업을 하는 자”란 「소득세법」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상가건물에 대한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자등록을 한 자(이하 이 조에서 “상가임대인”이라 한다)를 말한다.

②법 제96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가건물”이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제1항 본문에 따른 상가건물(이하 이 조에서 “임대상가건물”이라 한다)을 말한다.

③법 제96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상공인”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이하 이 조에서 “임차소상공인”이라 한다)를 말한다.

1.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2. 임대상가건물을 2020년 1월 31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임차하여 영업용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자
3. 별표 14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지 않는 자
4. 상가임대인과 「국세기본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5. 「소득세법」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

④법 제96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료 인하여액”이란 제1호에 따른 금액에서 제2호에 따른 금액을 뺀 금액(이하 이 조에서 “임대료인하여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보증금을 임대료로 환산한 금액은 제외한다.

1. 임대료를 인하기 직전의 임대상가건물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료를 기준으로 계산한 2020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이하 이 조에서 “공제기간”이라 한다)의 임대료. 다만, 공제기간 중 임대상가건물의 임대차계약을 동일한 임차소상공인과 갱신하거나 재계약(이하 이 조에서 “갱신등”이라 한다)하고 갱신등의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료가 인화된 경우 갱신등에 따른 임대차계약이 적용되는 날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는 갱신등에 따른 임대료를 기준으로 계산한 임대료를 말한다.
2. 임대상가건물의 임대료로 지급했거나 지급하기로 하여 공제기간 동안 상가임대인의 수입금액으로 발생한 임대료

Q
06

상가임대차 차임증감에 관한 분쟁해결방법

상가임차인 A는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급감에 따라 임대인 B에게 기존 차임을 계속 지급하기가 매우 어렵게 되었습니다. 법원에 감액청구를 하는 방법 외에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상가차임감액 #조정신청 #공정임대료

A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거나 서울시에 위치한 점포라면 서울형 공정임대료 산정 절차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는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 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장래의 차임 또는 보증금에 대하여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소송을 통한 경우 입증에 어려울 수 있고,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어 효율성을 기대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임차인은 서울 및 각 지방(수원, 대전, 대구, 부산, 광주)에 설치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차임 감액 조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조정절차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통지하거나 조정신청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아무런 의사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정절차가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만일 위 절차에서 조정이 성립된다면 민사상 합의로서의 효력을 가지며 강제집행도 가능합니다.

서울시에 위치한 점포를 운영 중인 임차인이라면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차임 감액 조정 신청과 동시에 또는 이전에 임대인과 함께 또는 신청 후 임대인 동의를 얻어 서울형 공정임대료 평가 신청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서울형 공정임대료 평가는 코로나19 발생 이후인 2020년 4월초부터 추진하는 제도로써 감정평가사 등 9명의 전문위원들이 물적사항, 권리관계 및 개별적 상황 등을 고려하여 공정임대료를 산정해주는 시스템입니다. 임차인은 임대료 산정 결과를 토대로 임대인과 협의하여 차임을 조정해 볼 수 있고, 만일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다면 그 산정 결과를 근거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차임 감액 조정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서울시에서 운영 중인 눈물그만상담 센터에 상가건물 공정임대료 평가신청서 작성 후 접수하면 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①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 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당사자는 장래의 차임 또는 보증금에 대하여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제1항에 따른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 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제20조(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①이 법의 적용을 받는 상가건물 임대차와 관련된 분쟁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률구조법」 제8조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지부에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을 고려하여 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감에 관한 분쟁
2. 임대차 기간에 관한 분쟁
3. 보증금 또는 임차상가건물의 반환에 관한 분쟁
4. 임차상가건물의 유지·수선 의무에 관한 분쟁
5. 권리금에 관한 분쟁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가건물 임대차에 관한 분쟁

Q

06-1

상가건물 전대인(임차인)의 차임증액청구

임차인 A는 건물 전부를 임차하여 그 중 일부를 전차인 B에게 전대하였습니다. 임차인 A는 전대차계약 체결 당시 전차인 B로부터 “전대차 기간 중 임의의 시점에 전대차계약을 해지해도 좋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임차인 A는 전대차계약기간 만료일까지 1개월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전차인 B에게 코로나19로 매출이 줄었다는 이유를 들어 차임증액을 요구하였습니다. 전차인 B도 코로나19로 매출이 40%가량 감소한 상태입니다. 임차인 A의 차임증액 청구는 정당한 것인가요?

#영업이익급감 #경제사정의변동 #전대차 #전차인 #차임증액

A

임차인 A는 전대차 기간이 만료되기 1개월 전까지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전차인 B는 종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갱신되었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하고(제1항), 임대인이 위 기간 이내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봅니다(제3항).

사안의 경우 임차인 A는 전대차 기간이 만료되기 1개월 전까지 차임 증액 등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전차인 B는 종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갱신되었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전차인 B는 임차인 A가 차임 증액을 요구하더라도 이에 응해야 할 의무는 없는 것입니다.

또한 임의의 시점에 전대차계약을 해지해도 좋다는 내용의 서약서는 강행법규를 위반한 내용으로써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법률규정과는 별개로 실질적인 관계에서 임차인 A는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강경한 태도를 보일 수 있고, 전차인 B가 그 방어를 위해 재판절차를 이용하는 경우 경제적·시간적 부담이 클 수밖에 없으므로, 상황에 따라서는 적절한 범위 내에서 협의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①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11조에 따른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

④임대인이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1년으로 본다.

⑤제4항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Q
07임대차계약 계약금 반환청구
(코로나19 확진자 거주 주택)

A는 부산에 거주하던 중 회사 업무로 서울에 출장을 가게 되어서 2020년 2월 중순, 단기 임대 아파트를 전화로 알아보고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입주 날짜는 2020년 3월 중순으로 하고 계약서는 이메일로 받아보고 중개인이 알려준 대로 집주인 B의 계좌로 계약금 500만 원을 입금했습니다.

그러던 중 코로나19가 심각해지고 대구에 이어 서울 지역까지 확산되면서, 코로나19 확진자의 이동경로를 통하여 위 단기임대아파트의 전(前) 임차인이 확진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A는 중개인에게 계약을 해제할 수밖에 없다고 하였으나 중개인과 집주인 B는 이번 계약을 코로나19와 결부시키지 말라며 계약 해제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A는 계약금 500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코로나확진자 #계약금반환 #위약금특약 #임대인고지의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A

A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해제를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계약금을 돌려받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B와 교섭해볼 수 있습니다.

계약이 일단 성립한 후에는 당사자의 일방이 이를 마음대로 해제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민법 제565조, 제567조에 따라 계약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

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차계약서에도 위 민법 규정처럼 “계약을 임대인이 위약하였을 때에는 계약금의 배액을 임차인에게 배상하고, 임차인이 위약하였을 때에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은 아무런 통지나 최고 없이 당연히 해제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의 규정을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편, 임대인은 민법 제623조에 따라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이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사유가 있다면 계약 체결 시 상대방에게 고지하여야 합니다.

만일 B가 임대차계약 체결 후에야 종전 임차인이 코로나19 확진자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B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종전 임차인이 코로나19 확진자라는 사정이 임차주택의 사용, 수익에 지장을 주는 사유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A가 전입하기 전에 방역조치가 가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A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해당 임대차계약을 해제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계약금을 반환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A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6개의 지부(서울, 수원, 대전, 대구, 부산, 광주) 및 서울시 등 각 시·도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조정절차는 분쟁의 양 당사자가 모두 승낙한 경우에만 그 절차가 개시

되는 한계가 있으나 사적으로 직접 교섭하는 것보다는 효과적일 수 있으므로 조정절차를 활용해 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민법

제565조(해약금) ①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567조(유상계약에의 준용) 본질의 규정은 매매 이외의 유상계약에 준용한다. 그러나 그 계약의 성질이 이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23조(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4조(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①이 법의 적용을 받는 주택임대차와 관련된 분쟁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률구조법」 제8조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지부에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을 고려하여 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감에 관한 분쟁
2. 임대차 기간에 관한 분쟁
3. 보증금 또는 임차주택의 반환에 관한 분쟁
4. 임차주택의 유지·수선 의무에 관한 분쟁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임대차에 관한 분쟁

Q 08

경제적 사정 악화로 인한 잔금지급의무 불이행과 임대차계약 해제

A는 2020년 2월 중순경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B와 아파트 전세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A는 코로나19로 인하여 매출이 급감하게 되면서 잔금지급기일에 잔금을 마련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B는 A의 잔금지급 불이행을 이유로 위 임대차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을까요?

#잔금지급불이행 #계약해제 #불가항력 #손해배상

A

B는 A의 잔금지급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해제를 할 수 있습니다.

A는 계약상 잔금지급기일이 도래하면 잔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를 지고, 이를 지체한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이 되어 B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잔금지급채무는 금전을 지급할 의무이고 이러한 금전지급의무는 통상 시중에 금전이 없어서 지급을 못한다든지 하는 매우 이례적인 상황을 가정하지 않는 이상 불가항력으로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는 상정하기 어렵습니다.

즉, A가 코로나19로 인하여 경제적 사정이 악화된 것은 주관적인 사정에 불과하므로, 이를 불가항력으로 잔금지급의무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B는 A에게 잔금지급의무의 이행을 최고하고 그럼에도 A가 이행을 하지 않는다면 해제권을 행사하여 위 임대차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Q
09

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한 잔금지급의무 불이행과 임대차계약 해제

2020년 2월 중순경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B와 아파트 전세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A는 계약체결 당시 B가 감기기운이 있었으나 별도의 증상을 보이지 않아 코로나19 환자로 의심하지 않았고, B로부터 중도금까지 이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A는 잔금지급기일을 하루 남기고 B로부터 “어제 보건당국으로부터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현재 자가격리 중이어서 나갈 수 없으니 잔금지급기일을 코로나19 완치 시까지로 미뤄달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A는 자신의 건물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들어오는 것이 꺼려져 받은 돈을 돌려주고 임대차계약을 해제하고 싶은데 이 경우 해제가 가능한가요?

#임차인의코로나확진 #임대인의계약해제

A

A는 B에게 주택을 인도할 준비가 다 되었음을 통지하고 잔금을 지급할 것을 최고하는 등 B를 채무불이행상태에 빠뜨리지 않는 한, B가 코로나19 확진자라는 이유만으로 계약해제를 할 수 없습니다.

B는 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하여 코로나19 완치 시까지 잔금지급기일의 연장을 요구하고 있지만, 잔금지급의무 자체를 불이행하겠다는 의사로 거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임대차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채무불이행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주택임대차계약에 있어 주택인도의무와 잔금지급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이므로, A가 주택인도의무를 언제라도 이행할 준비를 완료해 두었음에도 B가 잔금지급의무를 불이행한 경우라면 비로소 B가 채무불이행 상태가 됩니다.

즉, B는 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하여 자가격리 중이어서 잔금지급기일에 나갈 수 없다는 이유로 부득이하게 잔금지급의무를 지연하게 된 것이므로, A는 B에게 주택을 인도할 준비가 다 되었음을 통지하고 잔금을 지급할 것을 최고하는 등 B를 채무불이행상태에 빠뜨리지 않는 한 단순히 B가 코로나19 확진자라는 이유만으로 임대차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B가 A가 최고한 대로 잔금지급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A는 일방적으로 임대차계약을 해제할 수 없으며, 이 경우 A가 잔금을 받을 계좌를 정지시켜버리는 등의 수령거절 행위를 하더라도 B의 채무불이행이 되지 않습니다.

Q
10

주택 임차인의 차임감액청구권

임차인 A는 임대인 B와 아파트 전세계약(보증금 1억 원, 월세 50만 원)을 체결하고 살고 있습니다. 여행사 직원인 임차인 A는 코로나19로 인한 회사 사정으로 인하여 퇴사하게 되어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하게 되자 임대인에게 차임감액을 청구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임차인의 차임감액청구는 인정될 수 있을까요?

#코로나19 #경제적어려움 #차임감액청구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민사조정

A

임차인은 경제사정 등의 변동을 근거로 임대인에게 차임감액청구를 할 수 있고, 이와 관련하여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조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에 따라 당사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코로나19로 인하여 다니던 회사가 어려워져 결국 퇴사하게 되는 경우처럼, 갑작스러운 경제사정의 변경으로 임차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실직하게 되어 임차인이 소득상실상태에 이르게 된 경우에 임대차 계약에 있어 종래의 차임으로 당사자를 구속하는 것이 정의와 형평에 어긋나 불합리하게 됨으로써 종래의 차임이 상당하지 아니하게 되는지

는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현재의 대체적인 판례들은 경제사정 등의
변경으로 인한 차임감액을 인정하는데 대단히 소극적인 입장입니다.

한편, 차임증감에 관한 분쟁은 법원에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주택임
대차보호법 제14조에 규정하고 있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의 6개의 지부(서울, 수원, 대전, 대구, 부산, 광주) 및 서울시 등 각
시·도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은 분쟁의 양 당사자
가 모두 승낙한 경우에만 그 절차가 개시되는 한계가 있으나 당사자 간
의 사적인 교섭보다는 효과적일 수 있으므로 해당 제도의 활용을 적절
히 검토해 보는 것도 하나의 해결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소송이 아니더라도 법원에 조정을 신청하여 임대인과 원만한 합
의를 이끌어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당사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
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장래
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14조(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①이 법의 적용을 받는 주택임대차와 관련된 분쟁을 심의·
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률구조법」 제8조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
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지부에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
다.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을 고려하여 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감에 관한 분쟁
2. 임대차 기간에 관한 분쟁
3. 보증금 또는 임차주택의 반환에 관한 분쟁
4. 임차주택의 유지·수선 의무에 관한 분쟁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임대차에 관한 분쟁

Q 11

주택 임차인의 차임연체

주택 임대인 A는 임차인 B와 보증금 500만 원, 월세 50만 원, 매월 10일에 임대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임차인 B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이 있다며 2월 10일에는 월세 중 30만 원만을, 3월 10일에는 월세 중 20만 원만을 지급하더니 4월 10일이 되자 결국 월세를 하나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임대인 A는 코로나19로 인해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 B를 이해하면서도 점차 악화되는 상황에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고 싶습니다. 임대인 A에게 어떤 대응방법이 있을까요?

#2기차임연체 #주택임대차해지 #명도소송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제소전화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A

민법에 따라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계약 해지 후에도 임차인이 주택을 반환하지 않고 계속 점유한다면 임차인을 퇴거시키고 주택의 인도를 구하는 건물명도청구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40조(차임연체와 해지)는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에는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처럼 매월 50만 원의 차임을 지급하기로 하였다면 임대인 A는 임차인 B의 차임연체액이 2개월분 차임액 100만 원(=2월 10일 연체액 20만 원 + 3월 10일 연체액

30만 원 + 4월 10일 연체액 50만 원)에 달한 때에 비로소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여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임대인은 임차인을 상대로 주택에서 퇴거하고 주택의 인도를 구하는 건물명도청구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소송 도중 임차인이 임의로 주택의 점유를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면 기존 임차인을 대상으로 한 판결을 받을 실익이 없어 집니다. 따라서 소송의 진행과 함께 임차인이 임의로 점유를 이전할 수 없도록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을 해 두는 것을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이후 임차인을 상대로 건물명도청구 소에서 승소한 임대인은 해당 판결을 기초로 임차인을 퇴거시키고 주택을 인도받는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한편, 보통 장기로 진행되는 소송 대신 좀 더 간이한 제소전화해 제도를 활용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임차인과 합의가 된다면 임대차 계약 종료 시 주택에서 퇴거하고 인도하겠다는 내용으로 법원으로부터 제소전화해 조서를 받을 수 있고 화해조서의 화해조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퇴거 등을 하지 않는다면 임대인은 화해조서를 기초로 집행문을 받아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주택임대차 분쟁 당사자는 법원에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4조에 규정하고 있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발생한 분쟁에 대한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6개의 지부(서울, 수원, 대전, 대구, 부산, 광주) 및 서울시 등 각 시·도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은 분쟁의 양 당사자가 모두 승낙한 경우에만 그 절차가 개시되며, 조

정위원회의 조정안에 양 당사자가 수락하여 작성된 조정서에 특히 강제 집행 승낙의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면 해당 조정서에 기초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도 있으므로 주택임대차 분쟁의 태양에 따라 해당 제도의 활용을 적절히 검토해 보는 것도 하나의 해결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40조(차임연체와 해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에는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4조(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①이 법의 적용을 받는 주택임대차와 관련된 분쟁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률구조법」 제8조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지부에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을 고려하여 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감에 관한 분쟁
2. 임대차 기간에 관한 분쟁
3. 보증금 또는 임차주택의 반환에 관한 분쟁
4. 임차주택의 유지·수선 의무에 관한 분쟁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임대차에 관한 분쟁

Q 12

주택 임대차 보증금 반환

계약기간이 만료된 주택 임차인 A는 임대인 B에게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 B는 코로나19 때문에 집을 보러 오는 사람이 없다며 새 임차인을 구할 때까지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앞둔 임차인 A는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가도 되나, 전입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 막막하고 불안하기만 합니다. 임차인 A는 기약 없이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질 때까지 기다려야 할까요?

#임차권등기명령 #대항력 #우선변제권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A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차가 끝난 후에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은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임차권등기를 경료함으로써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고, 임차주택의 환가대금에서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항력 등) 제1항에 따라 임차권등기를 한 임차인 외에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임차인은 그 다음 날부터 임차주택의 양수인 등 임차주택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제3자에 대하여 자신의 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주장할 수 있는 대항력을 갖게 됩니다. 또한 위와 같이 대항력을 취득한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증서상에 확정일자를 취득하면 임차주택이 경매나 공매가 되는 경우에도 그 환가

대금에서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우선변제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

그런데 사례와 같이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채 이사를 가게 되면 임차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 확정일자를 통해 기존 취득하였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하게 되므로 임대인의 임의에 의한 보증금 반환 외에는 강제집행과 같은 법적 절차에서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 집니다.

이때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규정된 것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에 규정된 임차권등기명령 제도입니다. 임대차가 종료하였는데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 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1항).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라 임차권등기를 마치게 되면 기존 취득하였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5항).

한편,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사용·수익하는 것은 아니므로 차임지급의무를 면하는 한편 보증금 반환을 지체하고 있는 임대인에게 그 지연손해에 대한 배상책임도 물을 수 있습니다. 나아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비용 및 임차권등기 경로 비용에 대하여도 임대인에게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보증금반환에 관한 분쟁은 법원에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4조에 규정하고 있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6개의 지부(서울, 수원, 대전, 대구, 부산, 광주) 및 서울시 등

각 시·도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은 분쟁의 양 당사자가 모두 승낙한 경우에만 그 절차가 개시되며, 조정위원회의 조정안에 양 당사자가 수락하여 작성된 조정서에 특히 강제집행 승낙의 취치가 기재되어 있다면 해당 조정서에 기초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도 있으므로 주택임대차 분쟁의 태양에 따라 해당 제도의 활용을 적절히 검토해 보는 것도 하나의 해결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항력 등) ①임대차는 그 등기(登記)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賃借人)이 주택의 인도(引渡)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제3조의2(보증금의 회수) ②제3조제1항·제2항 또는 제3항의 대항요건(對抗要件)과 임대차계약증서(제3조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에는 법인과 임대인 사이의 임대차계약증서를 말한다)상의 확정일자(確定日字)를 갖춘 임차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 또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公賣)를 할 때에 임차주택(대지를 포함한다)의 환가대금(換價代金)에서 후순위권리자(後順位權利者)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辨濟)받을 권리가 있다.

제3조의3(임차권등기명령) ①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⑤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제3조제1항·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대항력과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우선변제권을 취득한다. 다만, 임차인이 임차권등기 이전에 이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은 그대로 유지되며, 임차권등기 이후에는 제3조제1항·제2항 또는 제3항의 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제14조(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①이 법의 적용을 받는 주택임대차와 관련된 분쟁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률구조법」 제8조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지부에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을 고려하여 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감에 관한 분쟁
2. 임대차 기간에 관한 분쟁
3. 보증금 또는 임차주택의 반환에 관한 분쟁
4. 임차주택의 유지·수선 의무에 관한 분쟁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임대차에 관한 분쟁

CHAPTER 08

해외 체류·여행,
국제·외교 관계

01. 외국항공사 항공편 지연 및 취소
02. 마스크 반입 통관 및 관세
03. 국제계약상 불가항력 사유의 적용(1)
 - 03-1. 국제계약상 불가항력 사유의 적용(2)
04. 해외여행 중개사이트 여행계약 취소(계약금 환불)
05. 코로나19 확진자 프라이버시권
06. 해외 체류 중 코로나19로 사망
07. 코로나19로 인한 체류기간 연장
08. 외국인 자가격리조치 불응
09. 해외체류 한국인의 범죄 피해 지원
10. 해외위난상황 발생지역 전세기 등 투입

Q 01

외국항공사 항공편 지연 및 취소

A는 해외여행을 위하여 유럽연합에 소재한 B항공사와 경유지인 유럽연합 내 C국가에서 1주일 체류 후 또 다른 유럽연합 내 D국가에 도착하는 국제항공운송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해당 항공기는 출발 당일 11:00 이륙할 예정이었으나 출발 전 기체 점검 과정에서 좌측 날개 유압 장치의 결함이 발견되었습니다. B항공사는 당해 항공기의 출발을 보류하고 해당 장치의 교체작업을 진행하였고, 결국 위 항공기는 예정된 출발시각보다 8시간이 지연된 19:00 인천공항을 출발하였습니다. 결국 A는 C국가에 지연 도착하게 되어 C국가 현지 관광 패키지 취소 등 손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후 A는 B항공사로부터 코로나19로 인하여 C국가에서 D국가로 가는 환승 항공편이 취소되었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A는 B항공사에 대하여 지연 출발 및 항공편 취소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코로나19 #항공사 #지연출발 #항공편취소

A

1. 외국항공사 항공편 지연 출발 부분은 몬트리올 협약, 유럽연합 규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외국항공사 항공편 취소 부분은 코로나19로 인한 조치가 천재 지변으로 인정되어 항공사 면책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항공편 환불 및 대체 항공편 제공 등의 조치 외에 추가적인 손해배상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실제 취소 사유

및 항공사 과실 입증 정도 등에 따라 사안별로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외국항공사 항공편 지연 출발

국제사법에 따른 관할, 준거법 및 당해 항공사의 여객운송약관 등을 검토하여 볼 때, A와 유럽연합에 소재한 B항공사와의 국제항공운송계약의 경우, 출발지(우리나라)와 경유지(유럽연합)가 모두 『국제항공운송에 있어서의 일부 규칙 통일에 관한 협약』(이하 ‘몬트리올 협약’)의 적용을 받는 가입국이므로, 별다른 합의가 없는 한 몬트리올 협약이 적용됩니다. 또한 출발지 또는 도착지가 유럽연합 회원국 영토일 때 적용되는 『유럽연합 규칙 261/2004 규정』(이하 ‘EU 규정’)도 함께 적용됩니다.

몬트리올 협약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실제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 지연과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 항공사의 면책 여부 등을 따져 보아야 합니다. 반면, EU 규정은 이러한 요소를 문제 삼지 않고 비행거리, 지연시간 등 일률적인 기준에 따라 항공사가 현금으로 보상하되 부수적으로 식사 및 호텔 숙박 등을 제공함으로써 승객을 두텁게 보호할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EU 규정상 항공사가 특별한 상황(extraordinary circumstances)에 해당됨을 입증하면 면책될 수 있으나, 유럽 사법재판소는 “평소 항공사가 자체 정기점검을 통해 예방이 가능한 기체결함(e.g. 엔진 고장 등)과 같은 기술적 문제의 경우 특별한 상황으로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시하였는 바(유럽 사법재판소 Case C-549/07 Wallentin-Hermann, Case C-257/14 van der Lans 참조), 몬트리올 협약보다 EU 규정이 항공사에는 더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몬트리올 협약 및 EU 규정을 모두 적용하되 A의 청구금액 및 입증 난이도 등을 감안하여 보다 더 유리한 규정을 근거로 보상을 청구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우리 법원도 같은 입장입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4. 26. 선고 2018나62791 판결 등 참조).

당사자 입장에서 소액소송으로 진행할 경우 무과실 책임 규정인 EU 규정 적용 주장이 더 용이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때 A의 경우 비행거리 3,500km 이상, 출발 예정시간으로부터 4시간 이상 지연된 사실이 인정될 경우 600유로의 보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EU 규정 제6조 내지 제7조 참조).

2. 코로나19로 인한 항공편 취소

유럽연합위원회는 2020년 3월 18일자로 코로나19에 따른 조치는 EU 규정상 항공사가 면책되는 특별한 상황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코로나19로 인한 항공편 취소의 경우, 항공편 환불 및 대체 항공편 제공 등의 조치 외에 추가적인 손해배상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항공편 취소의 실제 사유(항공노선 도착지 국경 폐쇄 여부 등), 항공사 과실 입증 정도 등에 따라 사안별로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로 위자료의 경우, EU 규정상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고, 몬트리올 협약 제17조는 신체의 부상을 수반하지 않는 정신적 손해를 배상책임의 대상에서 배제하고 있습니다.

Q
02

마스크 반입 통관 및 관세

대한민국에서 의료기기 유통 사업을 하고 있는 A는 코로나19 환자 급증으로 인하여 국내에서 마스크 등 개인 보호구가 품귀현상을 빚자 중국에서 의료기기 유통을 하고 있는 친구 B로부터 중국 식약청 인증이 없는 중국산 수술용 마스크 2만 개를 무상으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아 이를 수락하였습니다. 이후 A는 “뉴스 보도를 통해서 정부에서 마스크 수입과 관련된 반입 절차를 완화해 주기로 하였다”는 정보를 들었다며 “중국 내 수출 규제 및 국내 수입 통관 지연을 피할 방법이 있나요? 판매용이 아닌 기부로 받은 것이기에 관세를 낼 의사는 없지만 수량이 많으므로 향후 일부 물량은 국내에서 판매도 하고 싶습니다.”라며 법적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수입통관지연 #수입요건확인면제 #관세부담

A

A는 마스크 및 손소독제 정부 긴급수급조정조치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추천을 받아 당해 마스크를 관세청 수입요건확인 면제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으며, 이 경우 신속한 통관 및 관세 면제 등 혜택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를 가지고 향후 국내에서 상업 목적으로 판매 시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감염이 전 세계로 퍼지면서 특히 마스크와 같은 의약외품 수출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국가가 늘고 있습니다. 다만 중국의 경우 확산세 진정에 따라 수출 규제를 일부 해제하였으나 여전히 수출자격사업

자를 통한 수출만 허가하고 있고, 수령처당 발송 물량도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마스크 수출자격사업자의 조건, 배송대행업체의 업무 역량, 수출특별수속 절차 적용 여부 등 중국 내 수출 규제와 관련 사항은 변수가 너무 많아 현지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수입국인 우리나라의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코로나19위기대응지원본부 조치에 따라 의약외품인 마스크는 관련 규정에 따라 별도의 신청절차를 통하여 수입요건확인 면제대상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대외무역법 제11조 및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대외무역관리규정 제19조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요건확인 면제대상 물품 중 의약품 등의 추천요령 참조).

하지만 이는 마스크 및 손소독제 정부 긴급수급조정조치에 따른 것으로 관련 규정에 따를 때 구호용 및 이에 준하는 비상업적인 목적(e.g. 해외본사 등에서 국내지사 직원들이 사용할 목적으로 반입 내지 기부 등의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에 한하여 수입요건확인 면제대상 추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을 위한 준비서류는 대표자 서명 또는 회사 직인 등이 날인된 추천신청서와 사용계획서이며, 해당 서류에 마스크 품명 및 규격(수입국 규격), 수량, 제공 목적(직원 배포용, 기부용) 및 방법(배부 예정인원, 기준 및 시기), 사용기관 정보(명칭, 소재지, 사업자등록번호 등), 상업용·판매용을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반드시 명시하여야 하고, 접수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nedrug.mfds.go.kr>)를 통하여 전자민원으로 접수 가능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관세청은 마스크의 원활한 국내 수급을 위하여 한시적으로 전국 34개 세관에 '마스크 수입 신속통관 지원팀'을 운영하고 있는바, 이를 활용하면 좋을 듯합니다. 만일 수입요건확인 면제를 받지 못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수입업 신

고(처리기간 25일), 품목허가(처리기간 55일),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로부터 표준통관예정보고, 세관통관심사(요건 구비 확인) 등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다만 상업 판매용 수입 마스크의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품목)허가 대상임과 동시에 관세 납부 의무가 발생하므로, 만약 A가 기부 목적으로 들여온 마스크를 향후 국내에서 판매할 경우 기존에 받았던 수입허가가 취소될 수 있으며 약사법 및 관세법 등 관련 법령 위반에 따른 책임을 지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울러 당해 마스크를 상업적 판매 목적으로 장기간 보관할 경우 기획재정부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에 규정된 매점매석 행위로 간주되어 이를 금지하고 있는 물가안정에 따른 법률위반의 죄책을 지게 될 우려도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형사 Q&A 8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대외무역법

제11조(수출입의 제한 등)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행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고시하는 물품등의 수출 또는 수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1. 헌법에 따라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따른 의무의 이행
2. 생물자원의 보호
3. 교역상대국과의 경제협력 증진
4. 국방상 원활한 물자 수급
5. 과학기술의 발전
6. 그 밖에 통상·산업정책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제1항에 따라 수출 또는 수입이 제한되는 물품등을 수출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히 처리하여야 하는 물품등과 그 밖에 수출 또는 수입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물품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물품등의 수출 또는 수입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수출입 승인 면제의 확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수출되거나 수입되는 물품등(제11조제2항 본문에 해당하는 물품등만을 말한다)이 제11조제2항 단서에 따른 물품등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19조(수출입승인의 면제) 법 제11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물품등”이란 다음 각 호의 물품등을 말한다.

1.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품등으로서 외교관이나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자가 출국하거나 입국하는 경우에 휴대하거나 세관에 신고하고 송부하는 물품등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등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고시하는 물품등
 - 가. 긴급히 처리하여야 하는 물품등으로서 정상적인 수출·수입 절차를 밟아 수출·수입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물품등
 - 나. 무역거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주된 수출 또는 수입에 부수된 거래로서 수출·수입하는 물품등
 - 다. 주된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부수적으로 수출·수입하는 물품등
 - 라. 무상(無償)으로 수출·수입하여 무상으로 수입·수출하거나, 무상으로 수입·수출할 목적으로 수출·수입하는 것으로서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물품등
 - 마.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에 수출하거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으로부터 수입하는 물품등
 - 바. 공공성을 가지는 물품등이거나 이에 준하는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물품등으로서 따로 수출·수입을 관리할 필요가 없는 물품등
 - 사. 그 밖에 상행위 이외의 목적으로 수출·수입하는 물품등
3. 외국환 거래 없이 수입하는 물품등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물품등
4.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자가 해외이주를 위하여 반출하는 원자재, 시설재 및 장비로서 외교부장관이나 외교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물품등

Q
03

국제계약상 불가항력 사유의 적용(1)

A사는 중국에서 자신이 생산하는 제품의 부분품을 공급받던 중 생산차질로 미국 뉴욕에 소재한 발주사에 ‘불가항력(force majeure)’ 사유를 통보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춘절기간 연장과 이동제한 등으로 중국의 공장에서 공급을 제때 받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중국 공장 또한 계약서상 준거법인 중국법에 근거하여 A사에 이미 코로나19로 불가항력을 선언한 상황에서, 미국의 발주사는 ‘뉴욕주법을 준거법으로 하는 A사와의 계약서상 불가항력 사유에 감증증을 명시하고 있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이를 받아들여하려 하지 않고 있습니다. A사는 국내에서 부분품의 공급량을 늘리는 등의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계약납기 지연 가능성에 대비해 발주사에 불가항력을 통보한 것이나 발주사는 이러한 불가항력 사유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A사는 불가항력 사유를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국제거래 #불가항력 #forcemajeure

A

A사는 A사와 중국 회사와의 계약이 중국법상 불가항력에 해당하는 경우 중국 회사에 채무불이행 책임을 묻기 어렵고, 미국 발주사와의 계약은 뉴욕법에 따라 불가항력이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미국통일상법전(UCC)상 납기지연 시 면책과 관련한 법리 또는 국제물품매매에 관한 UN협약(CISG)상 불가항력 조항의 보충적 적용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19의 급속한 확산으로 인하여 다양한 종류의 계약관계에서 채무불이행책임 및 불가항력을 근거로 한 면책가능성이 문제되고 있습니다. 주요 국가에서는 그 구체적인 내용에서는 조금씩 다르나 채무불이행이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 없는 ‘불가항력’에 기인한 경우에는 채무자가 그 책임을 면할 수도 있다는 법리를 채택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국의 경우, 민법총칙(民法總則) 제180조 및 제94조 제1항, 계약법(合同法) 제117조에서 “불가항력으로 인해 계약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불가항력의 영향에 따라 책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 수 있으며 법률에서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그러나 당사자가 계약의 이행을 연기한 이후 불가항력 발생 시 책임을 면제할 수 없다. 본 법에서 불가항력이란 예측할 수 없고 피할 수도 없으며 극복할 수도 없는 객관적인 상황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CCPIT)에서는 불가항력 사실확인서를 발급해 중국법원에서 손해배상 등에 대한 면책을 인정받도록 하고 있고, 중국 대법원의 경우 2003년 사스(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를 면책 원인으로 인정한 판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의 공급사는 위 중국법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면책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한편 뉴욕주법에 따르면, 불가항력 조항에 의하여 면책을 받으려는 당사자는 불가항력의 존재와 그로 인하여 계약상 의무를 다하려 노력하였으나 그렇게 할 수 없었던 사정 모두를 입증하여야 합니다.

또한 뉴욕주법은 계약서에서 불가항력의 사유를 열거하면서 ‘기타 이에 준

하는 일체의 사유'와 같은 포괄적인 사유를 추가하여 둔 경우에도, 앞에서 열거하고 있는 구체적인 사유들과 동일한 종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만 불가항력을 원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고 뉴욕법원은 불가항력의 경우를 엄격히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상 불가항력 조항이 예를 들어 자연재해, 국가 또는 산업 전반의 파업, 전쟁과 같은 국가비상사태 등을 열거하면서 '질병' 또는 '감염병' 등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불가항력으로 규정하지 않은 경우라면 불가항력을 원용하여 코로나19로 초래된 채무불이행책임을 면책받기는 어려울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납기의무와 관련하여 미국통일상법전¹⁾은 우연한 사정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 계약체결의 전제가 되거나 외국 또는 국내정부의 규제 또는 명령에 의하여 합의된 바로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납기의 지연은 계약위반을 구성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불가항력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라도 사안에 따라서는 위 미국통일상법전 규정이 적용될 여지도 있습니다.

나아가 우리나라와 미국 모두 국제물품거래에 관한 UN협약[UN Convention on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CISG”)]의 계약국이고 해당 거래가 물품의 거래에 관한 것으로 보이므로, 양 당사자가 본 협약의 적용을 명시적으로 배제하지 않은 경우라면 본 협약 제79조²⁾의 불가항력 조항을 원용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1) Section 2-615(a) of the N.Y. U.C.C. provides that “delay in delivery or non-delivery ... is not a breach under a contract for sale if performance as agreed has been made impracticable by the occurrence of a contingency the non-occurrence of which was a basic assumption on which the contract was made or by compliance in good faith with any applicable foreign or domestic governmental regulation or order whether or not it later proves to be invalid.”

2) Article 79(1) CISG, “[a] party is not liable for a failure to perform any of his obligations if he proves that the failure was due to an impediment beyond his control and that he could not reasonably be expected to have taken the impediment into account at the time of the conclusion of the contract or to have avoided or overcome it, or its consequences.”

Q

03-1

국제계약상 불가항력 사유의 적용(2)

1. 국내 선주 A는 중국 소재 조선소 B와 선박수리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조선소 노동자들은 중국 춘절을 맞아 고향을 방문하였는데, 코로나19가 심각해지자 중국 당국의 행정명령에 따라 이동이 금지되어 80% 이상의 인력이 조선소로 복귀하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중국 당국의 규율로 인하여 외항에서 운항 중인 선원들이 조선소에 입항할 경우 최소 2주 이상 선상에서 대기해야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에 조선소 B는 그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가 없었는바, 이 경우 코로나19가 불가항력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면책을 주장할 수 있나요?
2. 국내 해운사 C는 중국 조선소 D와 선박건조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D는 예정된 기한 내에 선박건조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그 이행지체의 원인을 코로나19 때문이라며 불가항력을 이유로 면책을 주장하였습니다. D의 주장은 타당한가요?

#국제거래 #불가항력 #forcemajeure #면책사유

A

B의 경우 중국 당국의 행정명령에 의하여 대다수의 노동자들이 조선소로 복귀하지 못하였고, 그로 인해 상당기간 업무를 수행하기 곤란하였을 것이므로, 불가항력으로 인한 면책을 인정받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반면, D의 경우 단순히 코로나19 발생만으로는 면책을 인정받기는 어렵고, 정부의 명령이나 조치 또는 팬데믹 선언으로 인하여 상당기간 업무를 수행할 수 없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을 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

계약서 조항 또는 해당 계약의 준거법, 약관 등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라면 그에 따르면 되겠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 코로나19를 불가항력 사유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툼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불가항력에 관한 조항에 천재지변, 전쟁, 내란, 폭동, 화재 등의 사유는 기재되어 있으나,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이나 전염병 등은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를 계기로 최근 계약서 불가항력 조항에 감염병, 전염병 등 사회재난을 명시적으로 추가하고 있기도 하지만, 일반적인 불가항력 조항만 있는 경우에는 아직 판례가 형성되지 않았고, 국제소송에서 전염병 확산 자체를 불가항력으로 인정한 사례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견해가 대립 중입니다.

한편, 코로나19를 이유로 각국에서는 입국금지, 격리조치 등 감염병 예방 및 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 요건하에 여러 강제조치를 발동하였고, WHO(세계보건기구)는 2020년 3월 11일 코로나19에 대하여 팬데믹(pandemic, 감염병의 세계적 유행)을 선언했습니다.

이에 코로나19에 관한 각국의 강제적인 조치나 명령이 별도로 있었던 경우와 WHO의 팬데믹 선언 이후에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더라도 코로

나19를 불가항력으로 인한 면책사유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많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B의 경우 중국 당국의 행정명령에 의하여 대다수의 노동자들이 조선소로 복귀하지 못하였고, 그로 인해 상당기간 업무를 수행하기 곤란하였을 것이므로, 불가항력으로 인한 면책을 인정받을 가능성이 커보입니다.

반면, D의 경우 단순히 코로나19 발생만으로는 면책을 인정받기는 어렵고, 정부의 명령이나 조치 또는 팬데믹 선언으로 인하여 상당기간 업무를 수행할 수 없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을 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

Q
04해외여행 중개사이트 여행계약 취소
(계약금 환불)

A는 자신이 해외여행 중개사이트(예: 아고다, 익스피디아, 에어비앤비 등)에 지불한 500만 원의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문의하였습니다. A의 입장은 “천재지변에 준하는 코로나19로 인해 여행계약을 취소하는 것이므로, 당연히 해외여행 중개사이트 운영자라고 하더라도 계약금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것이고, 해외여행 중개사이트는 “이미 여행 일정이 짜여져 있고, 자신들은 소비자가 원하는 여행일정에 따라 현지 호텔 및 해외 항공사에 중개만 하여 준 것이며, 갑자기 A가 계약을 취소한다면 연쇄적으로 해외 호텔 및 해외 항공사에도 손해가 생기므로 계약금을 전부 반환할 수 없고 바꾸쳐로 대신하여 줄 수는 있다.”라는 입장입니다.

A는 기지급한 500만 원을 환불받을 수 있나요?

#해외중개사이트 #환불 #여행계약

A

A가 해외여행 중개사이트와 여행 계약을 맺을 당시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입국금지 및 심사강화 등 제한조치가 시행되기 이전이어서 이를 예상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였다면 불가항력에 해당할 수 있어 이에 위반되는 약관조항은 불공정약관으로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2020년 4월 9일 기준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입국금지 및 심사강화 등 제한 조치를 취한 국가·지역은 총 181개국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해당 사이트가 자신은 해외 호텔 및 해외 항공사와의 거래를 중개만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계약의 체결은 해당 사이트의 명의로 진행된 것이고 호텔이나 항공사 또한 통상 소비자가 직접 계약 취소를 요청하더라도 자신들은 해당 사이트와 계약관계에 있을 뿐 개별 소비자와는 직접적인 계약관계에 있지 않다는 이유로 해당 사이트를 통하여 취소를 진행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해당 사이트는 계약 당사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코로나19로 인한 국가별 입국제한조치가 A의 계약 당시로서는 이를 예상하거나 방지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였다고 한다면 이는 불가항력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고, 이에 위반하는 환불규정 내지는 과도한 위약금규정을 가진 해당 사이트의 약관은 불공정약관으로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아고다, 익스피디아 등과 같이 해외 사업자인 경우라 하더라도 한국에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만약 한국법인이 운영하는 사이트를 통하여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약관 심사청구 및 한국소비자원에 신고를 통하여 부당한 환불 불가 약관규정을 시정하라는 권고조치 또는 시정명령을 얻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해외 중개사이트를 통하여 거래한 경우 대한민국 국내법의 적용이 어려운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Q
05

코로나19 확진자 프라이버시권

A는 사업차 들린 B국에서 코로나19 확진자와의 접촉으로 자기격리와 함께 위치추적이 가능하도록 자기격리 앱의 설치 및 전자팔찌의 착용을 요청받았습니다. 이후 A가 확진 판정을 받자, B국 경찰은 A의 동선 및 접촉자 파악을 위해 A가 입국 시부터 현재까지 누구와 있었는지, 무엇을 했는지 등을 조사했으며, 보건당국은 A의 국적, 나이, 성별, 동선 등을 공개하였습니다. 이러한 A의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해 어떤 대응책이 존재하나요?

#위치추적 #전자팔찌 #프라이버시 #개인정보

A

A는 개인정보 수집 및 공개가 B국의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해당 국가의 법에 따른 구제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추후 코로나19가 종식되면 A의 개인정보에 대한 폐기가 이루어졌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 중국, 대만, 싱가포르 등의 국가에서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위치추적, 확진자의 동선 파악 및 신상정보 공개 등 프라이버시 침해를 야기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을 포함, 전자팔찌를 도입하거나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국가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이러한 조치에 대한 법적 근거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입니다.

감염병예방법 제76조의2 제1항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질병관리본부장은 감염병 예방 및 감염 전파의 차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 의료기관 및 약국, 법인·단체·개인에 대하여 감염병환자 등 및 감염병의심자에 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요청할 수 있는 정보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포함) 등 인적사항, 진료기록부 등, 일정 기간의 출입국관리기록, 그 밖에 이동경로를 파악하기 한 정보(동법 시행령 제32조의2는 이동경로를 파악하기 위한 정보로 ① 신용카드·직불카드·선불카드 사용명세, ② 교통카드 사용명세, ③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하여 수집된 영상정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입니다.

또한 감염병예방법 제76조의2 제2항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 예방 및 감염 전파의 차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감염병환자 등 및 감염병의심자의 위치정보를 경찰법 제2조에 따른 경찰청, 지방경찰청 및 경찰서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요청을 받은 경찰관서의 장이 개인위치정보사업자와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위치정보를 요청하면, 요청을 받은 위치정보사업자와 전기통신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프라이버시 또는 사생활의 비밀이라는 중요한 기본권도 전염병 확산 방이라는 강력한 공익적 목표를 위해 법률에 의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A는 개인정보 수집 및 공개가 감염병예방법과 같이 B국의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 해당 국가의 법에 따른 구제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감염병예방법 제76조의2 제7항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집된 정보의 주체에게 ① 감염병 예방 및 감염 전파의 차단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가 수집되었다는 사실, ② 제1호의 정보가 다른 기관에 제공되었을 경우 그 사실, ③ 제2호의 경우에도 이 법에 따른 감염병 관련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정보를 사용할 수 없으며, 업무 종료 시 지체 없이 파기된다는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수집된 정보는 제한된 목적으로만 엄격하게 사용되어야 하고, 그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하는 등 기본권의 침해를 최소화 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최근 세계 각국 개인정보 감독기구들은 코로나19와 같은 공중보건 위기 시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원칙을 밝히고 있는데, 그 중에는 ‘공중보건 목적 달성 이후 개인정보의 지체 없는 폐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A는 추후 코로나19가 종식되면 이러한 원칙에 따라 개인정보가 폐기되었는지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6조의2(정보 제공 요청 및 정보 확인 등) ①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질병관리본부장은 감염병 예방 및 감염 전파의 차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그 소속기관 및 책임운영기관을 포함한다)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교육감을 포함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의료기관 및 약국, 법인·단체·개인에 대하여 감염병환자등 및 감염병의심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6. 12. 2., 2020. 3. 4.>

1. 성명, 「주민등록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를 포함한다) 등 인적사항
 2. 「의료법」 제17조에 따른 처방전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진료기록부등
 3.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간의 출입국관리기록
 4. 그 밖에 이동경로를 파악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 ②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 예방 및 감염 전파의 차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감염병환자등 및 감염병의심자의 위치정보를 「경찰법」 제2조에 따른 경찰청, 지방경찰청 및 경찰서(이하 이 조에서 “경찰관서”라 한다)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요청을 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에도 불구하고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7항에 따른 개인위치정보사업자,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에게 감염병환자등 및 감염병의심자의 위치정보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위치정보사업자와 전기통신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⑦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집된 정보의 주체에게 다음 각 호의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4.>

1. 감염병 예방 및 감염 전파의 차단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가 수집되었다는 사실
2. 제1호의 정보가 다른 기관에 제공되었을 경우 그 사실
3. 제2호의 경우에도 이 법에 따른 감염병 관련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정보를 사용할 수 없으며, 업무 종료 시 지체 없이 파기된다는 사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의2(제공 요청할 수 있는 정보) 법 제76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여신전부금융업법」 제2조제3호·제6호 및 제8호에 따른 신용카드·직불카드·선불카드 사용명세
2.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교통카드 사용명세
3.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하여 수집된 영상정보

Q
06

해외 체류 중 코로나19로 사망

A는 한국 국적 미국 유학생으로 미국 체류 중, 코로나19에 감염되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하였습니다. 한국에 있는 A의 유가족들은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사망 #주미대사관 #조력 #보험금

A

유가족이 여권이 없는 경우 48시간 이내 긴급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에 도착해서 병원에서 사망진단서를 발급받은 뒤, 재외공관에 신고를 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통역사 선임, 현지 사법체계, 변호사 등에 대한 정보제공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외에서 가족 또는 친인척 등의 사건·사고로 긴급히 출국해야 하는 경우,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긴급여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긴급여권은 48시간 내 발급되고, 전국 여권사무 대행기관 어디에서든 접수가 가능하며, 수수료도 일반여권 발급수수료와 동일합니다.

국민의 해외 체류 중 사망 시, 병원에서는 의사의 사망진단서를, 경찰로부터는 검사진단서 및 경찰 사망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A는 병원에서 사망했으므로 의사의 사망진단서를 발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재외공관에 ① 사망자의 성명, ② 사망일시, ③ 사망 장소 및 유해안치장소, ④ 사망원인, ⑤ 사망자의 한국주소, ⑥ 본적, ⑦ 유족의 성명과 주소, ⑧ 사망자의 여권번호 및 발급일을 신고합니다.

미국 체류 국민의 사망과 관련된 주미대사관의 조력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 현지 의료기관 정보 제공
- 현지 사법체계나 재판기관, 변호사 등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 제공
- 여행자의 국내 연고자에게 연락 및 필요시 긴급 여권 발급 지원
- 긴급상황 발생 시 우리 국민의 안전 확인 및 피해자 보호 지원

그러나 아래 경우에는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 재외공관 근무시간 이후 시간대(심야, 새벽, 휴일 등)에 무리한 일반 민원 영사서비스 제공 요구
- 금전 대부, 지불 보증, 벌금 대납, 비용 지불(의료비, 변호사비 등)
- 예약 대행(숙소, 항공권 등)
- 통역 및 번역 업무 수행
- 병원과 의료비 교섭
- 사건·사고 관련 상대 및 보험회사와의 보상 교섭

따라서 항공권이나 숙소 예약, 의료비용 지불, 보험금 청구 등은 직접 처리해야 합니다.

Q
07

코로나19로 인한 체류기간 연장

A는 대한민국에서의 체류기간이 2020년 3월 말에 만료됨에도 불구하고 비행기티켓을 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A의 입장은 “국가의 천재지변에 준하는 코로나19로 인해 대한민국에서 출국할 수 없는 것이므로, 대한민국에서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을 연장하여야 하고 기간 내 출국과 동일한 효력을 인정하여야 한다.”입니다. 반면 대한민국 법무부는 “이미 출국해야 하는 체류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별도의 법령 개정이 없는 이상 마음대로 체류자격 또는 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라는 입장입니다.

A는 체류기간 연장을 받을 수 있나요?

#코로나 #체류기간 #출국

A

A는 체류기간을 연장받기 위해서 체류기간 내에 코로나19로 인하여 출국이 불가능하게 된 객관적인 상황을 반드시 관할 출입국청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만약 사전에 보고하지 않고 체류기간 내에 출국하지 못하였다면 체류기간 도과로 불법체류가 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체류기간 연장을 받기 위해서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양국 간 비행기 운항이 중지되어 출국할 수 없다는 등의 객관적 상황에 대하여 반드시 체류기간 이내에 출입국청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만약 체류기간을 초과하고 나서 보고하는 경우에는 이미 체류기간 초과로 인하여 이른바 불법체류상황으로 인정되어 그로 인한 불이익(출국명령, 입국금지 등)을 받게 됩니다.

다만, 현재 법무부출입국 외국인청에서는 2020년 2월 24일부터 2020년 4월 29일 이전에 체류기간이 도래하는 한국 체류 중인 등록외국인은 4월 30일까지 체류기간이 자동으로 연장되는 것으로 처리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외 출입국관리법령이 개정되거나 추가적인 방침은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위 법무부출입국 외국인청 방침에 해당하지 않는 외국인들은 적법한 체류 및 출국을 위하여 체류기간 이내에 출입국청에 출국할 수 없는 상황을 보고하고 출국유예를 인정받는 방법을 취하여야 합니다.

Q
08

외국인 자가격리조치 불응

대한민국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는 외국인 A는 방학을 마치고 자신의 고국에서 대한민국으로 도착하였는데, 귀국한 외국인들을 인천공항에서부터 일괄적으로 대학교 내 기숙사에 격리시키기로 하는 방침을 사전 고지 없이 듣게 되었습니다. A는 “원룸 재계약과 이사집 정리, 아르바이트 신청 등 당장 생활을 위하여 꼭 필요한 일을 하여야 한다, 코로나19를 의심받을 아무런 정황이 없다.”며 자가격리 조치에 불응하는 입장입니다. A는 자가격리 조치를 거부할 수 있나요?

#격리 #거부 #대학

A

A가 검역소장의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경우, 검역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고, 법무부장관의 활동범위 제한명령을 위반한 경우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 제10호에 의해 강제퇴거 대상자가 되고, 동법 제94조 제14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검역소장은 검역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검역감염병 환자 등을 격리시키거나, 검역감염병 의심자를 감시하거나 격리시킬 수 있습니다. 검역감염병 환자 등은 검역법 제16조 제1항 제3호, 제17조 제1항에 따라 자가격리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검역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2020년 4월 1일부터 입국자 전원에 대한 자가격리 조치를 강화하여 공항에서 자가격리 대상자에게 검역소장의 격리통지서를 발부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무부장관은 출입국관리법 제22조에 따라 공공의 안녕질서나 대한민국의 중요한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거소 또는 활동의 범위를 제한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준수 사항을 정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 동법 제46조 제1항 제10호에 의해 강제퇴거 대상자가 되고, 동법 제94조 제14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A가 검역소장의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경우, 검역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받을 수 있고, 법무부장관의 활동범위 제한명령을 위반한 경우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 제10호에 의해 강제퇴거 대상자가 되고, 동법 제94조 제14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검역법

제15조(검역조치) ①검역소장은 검역감염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 검역감염병 병원체에 오염되었거나 오염된 것으로 의심되거나 감염병 매개체가 서식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운송수단이나 화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검역감염병 환자와 검역감염병 의사환자(이하 “검역감염병 환자등”이라 한다)를 격리시키는 것
2. 검역감염병 의심자를 감시하거나 격리시키는 것

제16조(검역감염병 환자등의 격리) ①검역소장은 제1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검역감염병 환자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격리한다.

3. 자가(自家)

제17조(검역감염병 의심자에 대한 감시 등) ①검역소장은 제15조제1항 제2호에 따라 검역감염병 의심자가 입국 후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지역의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검역감염병 의심자의 건강 상태를 감시하도록 요청하거나 검역감염병 의심자를 제16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시설에 격리시킬 수 있다.

제39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15조제1항에 따른 검역소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자
4. 제16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에 따른 격리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자

출입국관리법

제22조(활동범위의 제한) 법무부장관은 공공의 안녕질서나 대한민국의 중요한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거소(居所) 또는 활동의 범위를 제한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준수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46조(강제퇴거의 대상자) ①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이 장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을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시킬 수 있다.

10. 제22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정한 거소 또는 활동범위의 제한이나 그 밖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사람

제9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4. 제22조에 따른 제한 등을 위반한 사람

Q 09

해외체류 한국인의 범죄 피해 지원

한국인 A는 2019년 2월 B국으로 유학을 가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19에 휩싸인 2020년 3월 A가 어 학원 건물에 들어가던 중 C가 갑자기 뒤에서 A의 오른팔을 잡아당겼고, A가 뒤돌아보자 C가 “코로나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를 아시아인이 퍼트리고 있다. 너 마스크 어딴냐?”며 손바닥으로 A의 오른쪽 어깨를 치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렸습니다. A는 턱이 탈골되는 피해를 입고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A는 재외공관으로부터 어떠한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해외체류 #상해 #법적지원

A

재외공관은 현장을 방문하여 A를 면담하고 B국의 관계기관의 협조요청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또한 상해로 입은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재외공관으로부터 주재국 또는 국내 사법기관의 도움을 받는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나아가 A는 긴급의료비용지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국가는 헌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집니다.

헌법재판소 “헌법 제2조 제2항에서 규정한 재외국민을 보호할 국가의

의무에 의하여 재외국민이 거류국에 있는 동안 받는 보호는 조약 기타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와 당해 거류국의 법령에 의하여 누릴 수 있는 모든 분야에서 정당한 대우를 받도록 거류국과의 관계에서 국가가 하는 외교적 보호와 국외거주 국민에 대하여 정치적인 고려에서 특별한 법률로서 정하여 베푸는 법률·문화·교육 기타 제반영역에서의 지원을 뜻하는 것이다.”라고 결정한 바 있습니다(헌법재판소 1993. 12. 23. 선고 89헌마189 결정 참조).

구체적으로 재외공관은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재외공관의 영사업무처리 지침」 제14조 제1항에 따라 재외국민과 관련한 사건·사고 발생을 인지한 경우 그 개요와 조치결과 등을 본부에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하고, 제3항에 따라 사건·사고의 심각성에 비추어 필요한 경우 현장을 방문하여 해당 재외국민을 면담하고 주재국 관계기관의 협조요청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재외국민의 민사분쟁에는 개입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제24조 제2항 제1호에 의해 민사분쟁이 명백히 범죄와 관계된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재외국민이 주재국 또는 국내 사법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그 절차를 안내하는 지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건·사고 발생으로 긴급의료비용이 필요한 경우, 긴급구난활동비 사용지침 제3조 제2호 가목에 따라 긴급지원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A는 인종차별 혐오범죄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은 것이므로, 재외공관은 그 심각성에 비추어 현장을 방문하여 A를 면담하고 B국의 관계기관의 협조요청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상해로 입은 손해는 명백히 범죄와 관계된 것이므로 A는 재외공관으로부터 주재국 또는 국내 사법기관의 도움을 받는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나아가 A는 긴급의료비용지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Q 10

해외위난상황 발생지역 전세기 등 투입

대한민국 국민 A는 2019년 12월경 사업상 B국으로 출국하였습니다. A는 2020년 1월경 B국의 국민 C와 연인관계가 되었습니다. B국은 2020년 3월경 대한민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나자, 2020년 3월 31일 대한민국 국민의 입국을 금지하였고, 대한민국 항공기의 운항조차 금지시켰습니다. B국은 2020년 4월경 코로나19 확진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되었고 사망자가 확진자의 1/5에 달하게 되었습니다. A와 C는 대한민국으로 입국하고자 하는데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해외 #입국금지 #전세기투입

A

B국은 해외위난상황 발생지역이므로 대한민국은 전세기 등을 투입할 수 있으며,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인 A만 전세기 등에 탑승가능합니다. A는 원칙적으로 통상의 탑승권 구입 비용 상당액을 부담하나, 긴급구난활동비를 지원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C의 경우에는 전세기 등의 좌석의 여유가 있고 재외 동포라는 등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하여야 탑승이 가능합니다.

코로나19는 대한민국의 영역 밖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재난으로서 정부차원에서 대처할 필요가 있는 재난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2호가 규정하는 “해외재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해외 위난 상황 발생시 전세

기등 운용지침」 제2조 제1호에 따른 “해외위난상황”에 해당하므로, 동 지침 제3조, 제4조에 따라서 전세기 등을 투입할 수 있습니다.

전세기 등의 탑승자는 원칙적으로 사건·사고 발생 지역에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적 국민이고, 전세기 등의 좌석에 여유가 있는 경우라면 ① 재외 동포, ② 재외 동포의 가족, ③ 인도적 사유가 있는 경우, ④ 우리나라와 위기관리 양해각서 체결 등을 통해 양국 국민의 상호 대피를 지원키로 합의한 국적 국가의 국민인 경우, ⑤ 과거에 우리 국민 대피에 협조하였거나, 향후 대피에 협조하기로 한 국적 국가의 국민인 경우, ⑥ 기타 외교부장관이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자도 탑승 가능합니다(동 지침 제5조).

투입된 전세기는 해외위난상황 발생 지역에서 가장 가까운 안전 지역으로 이동함을 원칙으로 하나, 필요한 경우 국내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동 지침 제6조).

전세기 탑승 희망자는 통상 발생하는 합리적 수준의 탑승권 구입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다만 ① 긴급구난활동비 지원 대상자인 경우, ② 기타 외교부장관이 탑승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외교부가 부담할 수 있습니다(동 지침 제7조).

B국은 해외위난상황 발생지역이고, 이동수단의 운행이 중단한 경우로, 대한민국은 전세기 등의 투입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는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어 있으므로 가장 가까운 안전 지역이 따로 없어 국내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A는 대한민국 국민이므로 전세기 등에 탑승이 가능하고, 원칙적으로 통상의 탑승권 구입 비용 상당액을 부담하나, 긴급구난활동비를 지원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C의 경우에는 전

세기 등의 좌석의 여유가 있고 재외 동포라는 등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하여야 탑승이 가능합니다.

해의 위난상황 발생시 전세기등 운용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해외위난상황의 발생으로 해당 지역 우리 국민의 안전이 우려되어 긴급한 이동이 필요한 경우, 전세기 등의 투입을 통해 우리 국민들을 신속하고 안전한 지역으로 이동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해외위난상황"이란 재외국민이 체류하는 국가에서 재외국민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 또는 재산상 중대한 손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여 국가의 보호가 요구되는 상황 중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상황을 말한다.
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2호의 해외재난
2. "전세기 등"이라 함은 전세기, 선박, 버스 등 해외위난상황 발생시 우리 국민을 안전한 지역으로 대피시킬 수 있는 모든 이동 수단을 의미한다.

제3조(전세기 등의 투입) 해외위난상황 발생시 아래의 경우에 전세기 등의 투입을 결정할 수 있다.

1. 해외위난상황 발생 지역에 이동수단이 없는 경우
2. 해외위난상황 발생 지역에 이동수단의 운행이 중단된 경우
3. 해외위난상황 발생 지역에 이동수단이 부족한 경우
4. 기타 외교부장관이 전세기 등의 투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4조(전세기 등의 투입 결정) 전세기 등의 투입은 재외국민보호대책본부에서 관계부처 대책회의를 개최하여 결정한다. 다만, 신속한 관계부처 대책회의 개최가 곤란한 경우에는 재외국민보호대책본부장이 전세기 등의 투입을 결정할 수 있다.

제5조(전세기 등의 탑승대상자) ①해외위난상황 발생 지역에 전세기 등의 투입시, 탑승자는 사건·사고 발생 지역에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적 국민을 대상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세기 등의 좌석에 여유가 있고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외국 국적 국민도 탑승을 허가할 수 있다.

1. 재외 동포
2. 재외 동포의 가족(가족의 범위는 민법 제 779조 제1항을 준용한다)
3. 인도적 사유가 있는 경우
4. 우리나라와 위기관리 양해각서 체결 등을 통해 양국 국민의 상호 대피를 지원키로 합의한 국적 국가의 국민인 경우
5. 과거에 우리 국민 대피에 협조하였거나, 향후 대피에 협조하기로 한 국적 국가의 국민인 경우
6. 기타 외교부장관이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6조(전세기 등의 이동) 해외위난상황 발생에 전세기 등을 통한 이동은 해외위난상황 발생 지역에서 가장 가까운 안전 지역으로 이동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국내로 이동할 수 있다.

제7조(소요 경비 청구) ①외교부는 전세기 등의 탑승 희망자에게 통상 발생하는 합리적 수준의 탑승권 구입 비용을 청구하고, 초과되는 비용은 외교부가 부담한다. 탑승 희망자가 비용을 부담해야 할 경우에 외교부는 이를 사전에 대상자에게 고지하고 서면 동의를 받는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아래의 경우에는 외교부가 부담할 수 있다.

1. 긴급구난활동비 지원 대상자인 경우
2. 기타 외교부장관이 탑승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긴급구난활동비 사용지침

제4조(구난활동비 집행요건) 공관의 구난 활동비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집행할 수 있다.

1. 해외위난상황에 해당할 것
2. 재외국민의 생명·신체에 급박한 위해가 존재할 것
3. 재외국민이 안전한 지역으로 대피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대체수단이 존재하지 않을 것

CHAPTER
09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계약 관계

01. 물품구매계약 취소
02. 허위·과장 광고 판단기준
03. 소비자 사용후기와 판매자의 책임
04. 허위·과장 광고와 사기죄
05. 의약품 등의 명칭·제조방법·효능이나 성능에 관한 광고
06. 식품 등의 명칭·제조방법·효능이나 성능에 관한 광고
07. 공정거래위원회 시정조치
08. 명예훼손
09.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와 손해배상책임
10. 제3자를 통한 허위·과장 광고

Q 01

물품구매계약 취소

코로나19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고 하는 목걸이 제품광고를 인터넷으로 보고 물건을 주문하였습니다. 그런데 물건 값을 결제한 후 제품의 효능에 대해 의심스러워 주문을 취소하고 환불을 요구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문취소 #환불 #코로나19예방 #과장광고 #허위광고

A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간 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고, 그 제품광고가 기망행위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민법 규정에 따라서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3항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소비자는 자신이 체결한 전자상거래 계약에 대해 그 계약의 내용을 불문하고 그 청약철회 및 계약해제의 기간(통상 7일) 내에는 청약철회 등을 자유롭게 할 수 있으며, 그 이후에는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해당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 '1372 소비자 상담센터(국번없이 1372, <http://www.ccn.go.kr>)'를 통해 피해 구제를 신청할 수 있으며, 광고 심의 및 허위·과장광고에 대한 규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담당하고 있으므로 광고심의와 시정조치는 공정거래위원회(<http://www.ftc.go.kr>)를 통해 촉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민법 제110조 제1항에 의하면,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으므로, 해당 광고가 사기성 있는 기망행위인지 여부에 따라 계약의 취소가능 여부가 결정될 것입니다.

해당 상품의 허위·과장광고가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서는, 상품의 선전광고에 있어서 거래의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는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97864 판결 참조).

따라서 구매하신 제품이 코로나19를 예방하는 효능이 있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광고를 보고 물품을 구매한 경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간 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고, 그 제품광고가 기망행위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민법 규정에 따라서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청약철회등) ①통신판매업자와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거래당사자가 다음 각 호의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해당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1. 제13조제2항에 따른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 다만, 그 서면을 받은 때보다 재화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등을 공급받거나 재화등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7일
2. 제13조제2항에 따른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지 아니한 경우, 통신판매업자의 주소 등이 적혀 있지 아니한 서면을 받은 경우 또는 통신판매업자의 주소 변경 등의 사유로 제1호의 기간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의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7일
3. 제21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청약철회등에 대한 방해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방해 행위가 종료한 날부터 7일

③소비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그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①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Q

02

허위·과장 광고 판단기준

인터넷 쇼핑물에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하거나 치료할 수 있다는 제품들에 대한 광고가 많이 올라와 있는데 이러한 광고가 허위·과장 광고인지 어떻게 판단할 수 있나요?

#코로나19제품 #과장광고 #허위광고

A

공정거래위원회는 ① 검증되지 않는 코로나19 예방효과 광고, ② 제한된 실험 결과를 실제 바이러스 퇴치 효과로 오인시키는 광고를 소비자 오인의 우려가 있는 광고사례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르면, 광고는 '사업자 등이 상품 등에 관한 일정한 사항을 전기통신, 인터넷 등의 매체를 통하여 소비자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일체의 행위'를 가리키므로, 사업자 등이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가 정하고 있는 사항을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행위는 광고에 해당합니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두843 판결 참조).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① 검증되지 않는 코로나19 예방효과 광고, ② 제한된 실험 결과를 실제 바이러스 퇴치 효과로 오인시키는 광고를 코로나19 관련 소비자 오인의 우려가 있는 광고사례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2020년 3월 6일자 보도자료 참조).

[사례1] 검증되지 않는 코로나19 예방 효과 광고

“마스크로도 막지 못하는 신종코로나 바이러스”를 공기청정기로 막을 수 있다는 취지로 소비자를 오인시키는 광고

[사례2] 제한된 실험 결과를 실제 코로나19 퇴치 효과로 오인시키는 광고

제한된 실험 조건하에 얻은 바이러스 및 세균 감소 효과를 토대로 소비자가 실제 사용 환경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퇴치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오인시키는 광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광고”란 사업자등이 상품등에 관한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문·인터넷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정기간행물,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통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광고의 방법)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매체 또는 수단을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1. 전단·팸플릿·견본 또는 입장권
2. 인터넷 또는 PC통신
3. 포스터·간판·네온사인·애드벌론 또는 전광판
4. 비디오물·음반·서적·간행물·영화 또는 연극
5. 자기 상품 외의 다른 상품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매체 또는 수단과 유사한 매체 또는 수단

Q 03

소비자 사용후기와 판매자의 책임

인터넷 광고에 코로나19 예방효과가 있다고 하는 소비자의 사용후기를 보고 공기청정기를 구입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공기청정기가 코로나19 예방효과가 있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검증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하고, 판매자에게 환불을 요구했습니다. 그러자 판매자는 “실제 소비자가 제품을 이용하고 후기를 남긴 것이지 우리가 후기를 작성한 것이 아니다. 우리는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후기광고 #환불 #코로나19예방 #과장광고 #허위광고

A

판매자는 소비자가 작성한 사용후기에 포함된 제품의 효능이 전문분야에서 받아들여지는 견해가 아니라면 그 내용이 진실임을 입증할 책임을 부담하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상품 표시·광고에 소비자가 본인의 사용 경험에 근거하여 당해 상품을 효능, 효과, 성능 등의 면에서 좋은 상품으로 평가·보증하거나 당해 상품의 구매·사용을 추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그 내용이 추천자의 개인적 경험을 넘어 일반 소비자들에게도 가능한 사실로 받아들여지는 경우에는, 그 추천·보증의 내용이 추천자가 실제로 경험한 사실에 부합한다고 하더라도 추천자의 경험내용이나 판단내용이 일반 소비자들에게 보편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이 아니거나, 학계 등 관련 전문분야에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견해가 아니라면 표시·광고행위를 한 사업

자가 그 소비자가 추천·보증하는 내용이 진실임을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1두7632 판결 참조).

따라서 비록 소비자가 사용후기를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그 후기에 포함된 제품의 효능이 전문분야에서 받아들여지는 견해가 아니라면 그 제품을 판매한 사업자가 그 내용이 진실임을 입증할 책임이 있을 것입니다.

또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은, 사업자 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① 거짓·과장의 표시·광고, ② 기만적인 표시·광고, ③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 ④ 비방적인 표시·광고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0조는 사업자 등은 제3조 제1항을 위반하여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함으로써 피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며,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는 사업자 등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들어 그 피해자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금지) ①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과장의 표시·광고
2. 기만적인 표시·광고
3.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
4. 비방적인 표시·광고

제10조(손해배상책임) ①사업자등은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함으로써 피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②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는 사업자등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들어 그 피해자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Q

04

허위·과장 광고와 사기죄

검증되지 않은 코로나19 관련 감염 예방 또는 치료를 보장하는 광고를 믿고 제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하였습니다. 판매자들을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는지요?

#코로나19예방 #과장광고 #허위광고 #사기 #형사고소

A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거래상의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는 과장·허위 광고의 한계를 넘어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합니다. 다만, 사기죄가 성립하는지는 사안별로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행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로서 사람으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상품의 선전, 광고에 있어 다소의 과장, 허위가 수반되는 것은 그것이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한 기망성이 결여된다 할 것이나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거래상의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는 과장, 허위 광고의 한계를 넘어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2. 9. 14. 선고 91도2994 판결, 1997. 9. 9. 선고 97도1561 판결, 2008. 10. 23. 선고 2008도6549 판결 등 참조).

코로나19의 경우, 현재 검증된 치료방법이 없기 때문에, 코로나19 바이러스 퇴치에 효험이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 대학 교수가 그 효험을 인정하였다거나,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하는 등의 별도의 거짓, 과장 광고가 포함되어 있다면 사기죄의 구성요건에 해당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각 사안별로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가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Q 05

의약품 등의 명칭·제조방법·효능이나 성능에 관한 광고

코로나19 예방 효능에 대해 허가받지 않은 ‘종합비타민제’에 대해 ‘코로나19 예방 효과’라는 문구로 광고하여 종합비타민제를 판매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지요?

#코로나19예방 #과장광고 #허위광고 #사기

A

코로나19 예방 효능 효과에 대해서 허가받지 않은 종합비타민제를 객관적 근거 없이 코로나19에 효능이 있다는 취지로 광고하였다면, 약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약사법 제68조 제1항에 따르면, 의약품 등의 명칭·제조방법·효능이나 성능에 관하여 거짓광고 또는 과장광고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약사법 제95조 제1항 10호에 따르면, 동법 제68조를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약사법 제68조 제5항에 따르면, 제31조, 제42조에 따라, 품목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제조판매품목허가(신고) 또는 위탁제조판매업 신고 또는 수입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의약품 등의 명칭, 제조방법, 효능이나 성능에 관하여 광고하지 못합니다.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공정서 및 의약품집에 실려 있는 내용이나 의학적, 약학적으로 공인된 범위의 임상결과 등 근거문헌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예외에 해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관련 법령에서는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사항과 다른 내용의 광고나 근거문헌 등의 인용을 통해 공인된 객관적 내용임을 입증할 수 없는 효능의 광고를 금지하므로, 코로나19 예방 효능 효과에 대해서 허가받지 않은 종합비타민제를 객관적 근거 없이 코로나19에 효능이 있다는 취지로 광고하였다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될 수 있습니다.

약사법

제31조(제조업 허가 등) ②제1항에 따른 제조업자가 그 제조(다른 제조업자에게 제조를 위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의약품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목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제조판매품목허가(이하 "품목허가"라 한다)를 받거나 제조판매품목 신고(이하 "품목신고"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제조업자 외의 자(제4호의 경우 제91조제1항에 따른 한국회귀·필수의약품센터만 해당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약품을 제조업자에게 위탁제조하여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위탁제조판매업 신고를 하여야 하며, 품목별로 품목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제34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임상시험계획의 승인을 받아 임상시험(생물학적 동등성시험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실시한 의약품
 2. 제1호에 따른 임상시험 외에 외국에서 실시한 임상시험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임상시험을 실시한 의약품
 3. 외국에서 판매되고 있는 의약품 중 국내 제조업자에게 제제기술을 이전한 의약품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의약품
 4. 제91조제1항에 따른 한국회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 취급하는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의약품
- ④의약품의 제조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따라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조업신고를 하여야 하며, 품목별로 품목허가를 받거나 품목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경우에 허가받은 사항 또는 신고한 사항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42조(의약품 등의 수입허가 등) ①의약품 등의 수입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업 신고를 하여야 하며,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품목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또는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68조(과장광고 등의 금지) ①의약품 등의 명칭·제조방법·효능이나 성능에 관하여 거짓광고 또는 과장광고를 하지 못한다.

⑤제3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9항 또는 제42조제1항에 따른 허가·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변경신고를 한 후가 아니면 의약품 등의 명칭·제조 방법·효능이나 성능에 관하여 광고하지 못한다.

제95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0. 제60조(제6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64조제1항 또는 제68조를 위반한 자

Q
06

식품 등의 명칭·제조방법·효능이나 성능에 관한 광고

인터넷으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사업자입니다. 판매하는 건강기능식품의 제품설명란에 코로나19 차단효과가 있으며 식약처의 인증을 받았다는 허위 내용을 게시하고 제품을 판매하였습니다. 이 경우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

#코로나19예방 #과장광고 #허위광고 #식약처인증 #사기

A

사업자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고, 이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이 병과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까지 부담할 수 있습니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제조방법·성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1.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2. 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3. 건강 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4. 거짓·과장된 표시 또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26조는 제8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표시 또는 광고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並科)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을 코로나19 관련 예방 또는 치료에 효능이 있는 제품이며, 관련 기관의 인증이 있었음을 허위로 제시하며 광고하여 제품을 판매한 경우에는 동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의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및 거짓·과장된 광고에 해당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징역형과 벌금형이 병과될 수 있으며, 형사상 책임과는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까지 부담할 수 있습니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 ①누구든지 식품등의 명칭·제조방법·성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2. 식품등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3.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4. 거짓·과장된 표시 또는 광고

제26조(벌칙) ①제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표시 또는 광고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竝科)할 수 있다.

Q

07

공정거래위원회 시정조치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던 중 판매하는 제품이 코로나19 관련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코로나19예방 #과장광고 #허위광고 #공정거래위원회 #시정조치

A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명령을 받고도 그 명령에 응하지 않으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시정조치에 불복하는 경우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의 방법으로 다투어볼 수 있습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에 따르면, 사업자가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사업자 등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시정조치명령의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해당 위반행위의 중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정정광고, 그 밖에 위반행위의 시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명령을 받고도 그 명령에 응하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호).

한편, 시정명령은 민사상책임이나 형사상책임을 묻는 것과는 전혀 별개의 성격으로 시정명령을 받았다 하더라도 민·형사상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갖추어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참조), 이의신청은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하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60일 이내에 재결(이의신청된 사건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지고,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 내에 재결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1항, 제2항 참조).

또한, 시정명령에 대해 행정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는데, 행정소송의 제기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의 정보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하며, 위 행정소송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서울고등법원이 전속 관할이므로, 행정소송의 소장은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4조, 제55조 참조).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금지) ①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로써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과장의 표시·광고
2. 기만적인 표시·광고
3.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
4. 비방적인 표시·광고

제7조(시정조치) ①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등이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자등에 대하여 그 시정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해당 위반행위의 중지
2.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3. 정정광고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제16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 ①이 법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의결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7조의3, 제42조, 제43조, 제44조, 제45조 및 제52조를 준용하며, 이 법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제8조제1항에 따른 임시중지명령은 제외한다)에 대한 이의신청, 소의 제기, 불복의 소의 전속관할 및 사건 처리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53조의2, 제54조, 제55조 및 제55조의2를 준용한다.

제1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6조제3항 또는 제7조제1항에 따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3조(이의신청) ①이 법에 의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갖추어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60일 이내에 재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내에 재결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30일의 범위 안에서 결정으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54조(소의 제기) ①이 법에 의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하여 불복의 소를 제기하고자 할 때에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제기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기간은 이를 불변기간으로 한다.

제55조(불복의 소의 전속관할) 제54조(소의 제기)의 규정에 의한 불복의 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서울고등법원을 전속관할로 한다

Q 08

명예훼손

코로나19 예방효과가 있다고 하는 제품을 구매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제품에 코로나19 예방효능이 있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환불을 요구하였다가 거부당하였습니다. 이에 화가 나 SNS 계정에 해당 제품을 비판하는 이용후기를 게시하였습니다. 이를 본 제품 판매자가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항의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문취소 #코로나19예방 #과장광고 #허위광고 #명예훼손 #고소

A

사안의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죄는 성립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동법 제70조에 따르면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에서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

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는데,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으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하는 것이고,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9도12132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8812 판결 등 참조).

한편, 국가는 건전한 소비행위를 계도(啓導)하고 생산품의 품질향상을 촉구하기 위한 소비자보호운동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하여야 하며(헌법 제124조), 소비자는 물품 또는 용역을 선택하는 데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와 사업자의 사업활동 등에 대하여 소비자의 의견을 반영시킬 권리가 있고(소비자기본법 제4조), 공급자 중심의 시장 환경이 소비자 중심으로 이전되면서 사업자와 소비자 사이의 정보 격차를 줄이기 위해 인터넷을 통한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정보 및 의견 제공과 교환의 필요성이 증대되므로, 실제로 물품을 사용하거나 용역을 이용한 소비자가 인터넷에 자신이 겪은 객관적 사실을 바탕으로 사업자에게 불리한 내용의 글을 게시하는 행위에 비방의 목적이 있는지는 앞서 든 제반 사정을 두루 심사하여 더욱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도10392 판결 참조).

판단하건대, 이 사안의 경우 적시한 사실은 해당제품에 대하여 정보를 구하고자 하는 다른 소비자들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정보 및 의견 제공이라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보여지고, 코로나19 관련하여 허위·과장 광고들을 하는 제품을 비판하는 주요한 동기나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제품 환불과 같은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죄는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클 것으로 사료됩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

제70조(벌칙) ①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Q
09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와 손해배상책임

코로나19 관련 검증되지 않은 감염 예방 또는 치료를 보장하는 허위 광고를 보고 해당 제품을 대량 구매하였습니다. 이후 계약을 취소하고 사업자에게 환불을 요구했더니, 사업자는 자신도 물품공급업자로부터 코로나19 관련 치료 예방 효과가 있다는 말을 듣고 이를 신뢰하였기 때문에 자신도 피해자라며 손해배상을 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이 경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주문취소 #환불 #코로나19예방 #과장광고 #허위광고 #손해배상

A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로 피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 사업자 등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어도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따라서 사업자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르면, 사업자 등은 제3조 제1항을 위반하여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함으로써 피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며,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는 사업자 등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들어 그 피해자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코로나19 관련 감염 예방 또는 치료를 보장한다는 허위·거짓 광고를 통해 사업자가 물품을 판매하였다면, 사업자는 무과실책임을 지므로 사업자에게 과실이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금지) ①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과장의 표시·광고
2. 기만적인 표시·광고
3.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
4. 비방적인 표시·광고

제10조(손해배상책임) ①사업자등은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함으로써 피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②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는 사업자등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들어 그 피해자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Q
10

제3자를 통한 허위·과장 광고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는 사업자입니다. 제품이 코로나19 관련하여 예방효과가 있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사업장 인터넷 홈페이지나 제품 소개란에 광고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검색 광고, 이용후기 광고, 다른 사업자의 블로그 등에 해당 제품이 코로나19 예방효과가 있다고 허위·과장 광고할 수 있게 일정금액을 지불하였습니다. 사업자는 이러한 경우 법적 책임을 부담하나요?

#코로나19예방 #과장광고 #허위광고 #블로그 #검색광고 #이용후기

A

사업자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고,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라도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7조에 따르면, 사업자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의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하였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하였다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인터넷 광고에 관한 심사지침 (공정거래위원회예규 제272호)에 따르면, “인터넷 광고”란 법 제2조 제 2호의 “광고” 중 사업자가 인터넷 프로토콜에 기반한 정보통신망, 즉 인터넷을 매체 또는 수단으로 이용하는 광고로서 배너광고, 팝업·팝언더 광고, 검색광고, 이용후기 광고, 사업자 자기 또는 다른 사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 블로그 등을 통한 광고 등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사업장 인터넷 홈페이지에 해당 제품에 대하여 허위 과대광고를 한 적이 없다고 하더라도 검색광고, 이용후기 광고, 다른 사업자의 블로그 등에 허위·과장 광고가 이루어지도록 일정금액을 지불하였다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거짓 과장의 표시 광고에 해당하여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사업자 등은 제3조 제1항을 위반하여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함으로써 피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며,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는 사업자 등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들어 그 피해자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광고”란 사업자등이 상품등에 관한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문·인터넷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정기간행물,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통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금지) ①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과장의 표시·광고
2. 기만적인 표시·광고
3.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
4. 비방적인 표시·광고

제10조(손해배상책임) ①사업자등은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함으로써 피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②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는 사업자등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들어 그 피해자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제1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한 사업자등

CHAPTER
10

형사

01. 의무적인 자가격리 조치 위반
02. 자가격리 권고 위반
03. 역학조사 거부·방해 또는 회피(검체 채취 요구 불응)
04. 역학조사 거부·방해 또는 회피(고의적인 사실 누락·은폐)
05. 가짜·허위사실 유포(영상, 뉴스 등)
 - 05-1. 기자의 명예훼손죄 성립 여부
 - 05-2. 명예훼손,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
06. 의료인에 대한 거짓진술
07. 마스크 구입 시 타인의 신분증 사용
08. 마스크 매점매석 행위
09. 코로나19 확진자 전파매개행위의 상해죄 성립 여부
10. 집합금지, 방역조치 지침 준수 위반 등
11. 개인정보 유출(확진자 동선공개)
12. 코로나19 재난지원금 부정유통 행위

Q 01

의무적인 자가격리 조치 위반

보건복지부 장관은 코로나19 환자가 유럽과 미국 등에서 급증하자 2020년 4월 1일부터 모든 해외입국자에 대하여 의무적인 자가격리 조치를 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A는 2020년 4월 1일 태국에서 한국으로 입국하였는데, 당시 열도 기침도 없는 감염병 무증상이었지만, 입국 시 '의무적인 자가격리 대상'으로 통보받았습니다. 하지만 A는 곧바로 귀가하지 않고 친구 2명과 함께 식당, 커피전문점, PC방, 마트 등을 들른 후 다음 날 새벽에 귀가하였습니다. 이후 A는 확진판정을 받았습니다.

A에 대한 형사처벌이 가능한가요?

#코로나19 #자가격리 #보건복지부장관 #검역소장 #형사책임

A

입국시 의무적인 자가격리 대상으로 통보를 받고도 곧바로 귀가하지 않고 식당 등을 방문한 행위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2항 제1호를 위반한 것입니다. 따라서 A는 동법 제80조 제5호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는 제1급 신종 감염병입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등 보건당국은 2020년 3월 4일 개정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2항 제1호에 근거하여 제1급 감염병이 발생한 경우 감염병 의심자에 대하여 '자가 또는 시설에 격리'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동법 규정에 따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미국, 유럽 등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감염이 확산되는 추세에서 미국, 유럽은 아니지만 해외에서 입국하는 A를 감염병의심자로 보아 해당 공무원을 통해 자가격리 결정을 통보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고, A는 보건당국의 자가격리 결정에 따라야 할 법적인무가 발생합니다. 이에 A는 입국 후 곧바로 귀가하여 자가격리에 들어갔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식당 등을 방문하고 다음날 새벽에 귀가하였으므로, 위 법규정을 위반한 것입니다. 따라서 A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5호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한편, A의 위반행위는 위 개정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 제1조(시행일) 규정에 따라, 2020년 4월 5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까지는 동법 제80조 제5호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2020년 4월 5일 이후부터는 동법 제79조의3 제4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감염병에 관한 강제처분) ②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급감염병이 발생한 경우 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감염병의심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공무원은 감염병 증상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나 진찰을 할 수 있다. <신설 2020. 3. 4.>

1. 자기(自家) 또는 시설에 격리

제8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제42조에 따른 강제처분에 따르지 아니한 자

2020. 4. 5. 시행 규정

제79조의3(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42조제1항·제2항제1호·제3항 또는 제7항에 따른 입원 또는 격리 조치를 거부한 자
[본조신설 2020. 3. 4.][시행일 : 2020.4.5.] 제79조의3

Q 02

자가격리 권고 위반

A는 2020년 3월 1일 한국 유학생으로 미국에서 한국으로 입국하였습니다. A의 입국 당시 미국은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많지 않았고, A 또한 감염병의 징후인 열이나 기침 등이 없는 무증상이었습니다. 이에 보건당국은 A에게 핸드폰에 자가진단 앱 설치를 안내하면서 가급적 2주간 자가격리를 해 줄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A는 자가격리 중에 약간의 미열이 있었지만 답답한 마음에 제주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A는 여행 도중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았고, 제주도 당국은 A를 형사고발조치를 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A에 대한 형사처벌은 가능한가요?

#코로나19 #자가격리권고 #유학생 #형사책임

A

보건당국은 A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무적인 자가격리 대상으로 결정하여 통보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A에게 자가격리를 ‘권고’한 것에 불과하므로, A를 형사처벌하기는 어렵습니다.

A는 보건당국으로부터 입국 시 자가격리 권고를 받고도 자가를 이탈하여 제주도 여행을 간 것이므로 자가격리 권고를 위반한 것은 맞습니다.

다만, A는 입국 시 감염병 무증상자이어서 보건당국으로부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가격리 조치라는 행정처분(명령)을 받은 것이 아니라, 단순히 A의 자발적 협조를 전제로 하는 자가격리 ‘권고’를 받은 것입니다.

대법원은, “행정청 내부에서의 행위나 알선, 권유, 사실상의 통지 등과 같이 상대방 또는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하여 단순한 권고는 행정처분(명령)에 해당하지 않음을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4두43974 판결 참조).

결국, 보건당국은 A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47조 제3호 또는 제49조 제1항 제14호에 근거하여 자가격리 대상으로 결정하여 통보한 것이 아니라, A의 자발적 협조를 전제로 단순히 자가 격리를 ‘권고’한 것에 불과하므로, A가 이를 위반하였어도 형사처벌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감염병에 관한 강제처분) ②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급감염병이 발생한 경우 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감염병의심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공무원은 감염병 증상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나 진찰을 할 수 있다. <신설 2020. 3. 4.>

1. 자가(自家) 또는 시설에 격리

제47조(감염병 유행에 대한 방역 조치)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것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①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한다.

14.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것

제8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제42조에 따른 강제처분에 따르지 아니한 자

7. 제47조 또는 제49조제1항(같은 항 제3호 중 건강진단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에 따른 조치에 위반한 자

2020. 4. 5. 시행 규정

제79조의3(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42조제1항·제2항제1호·제3항 또는 제7항에 따른 입원 또는 격리 조치를 거부한 자

5. 제47조제3호 또는 제49조제1항제14호에 따른 입원 또는 격리 조치를 위반한 자

[본조신설 2020. 3. 4.][시행일 : 2020.4.5.] 제79조의3

Q
03역학조사 거부·방해 또는 회피
(검체 채취 요구 불응)

보건당국은 코로나19 집단감염 여부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교회 신도인 A의 감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검체 채취를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A는 자신은 아무런 이상이 없다며 불응하였습니다. 보건당국이 계속 압박하자 A는 사비를 들여 감염 검사를 받았고 음성판정 결과를 보건당국에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보건당국이 A에 대해 현행범 체포 가능성을 언급하자, A는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드라이브 스루 방식으로 검체 채취에 응하였습니다. 결과는 음성이었습니다. A에 대한 형사처벌은 가능한가요?

#코로나19 #역학조사 #검체채취 #형사책임

A

A의 행위는 '정당한 사유 없이 보건당국의 역학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회피한 행위'에 해당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제3항에 의하면, 질병관리본부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염병이 발생하여 유행할 우려가 있거나 감염병 여부가 불분명하나 발병원인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체없이 역학조사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질병관리본부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는 역학조사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회피하는 행위를 하

여서는 안 됩니다.

역학조사란 감염병환자 등이 발생한 경우 감염병의 차단과 확산방지 등을 위하여 감염병환자의 발생 규모를 파악하고 감염원을 추적하는 등의 활동과 감염병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사례가 발생한 경우 그 원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하는 활동을 말합니다(동법 제2조 제17호).

위 사례에서 보건당국은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하여 감염원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교회 신도인 A의 감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A의 검체 채취를 요구한 것입니다. 즉, A는 보건당국의 코로나19 감염 여부 확인을 위한 검체 채취 요구에 응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아무런 이상이 없거나 사비를 들여 자체 검사를 하였다는 등의 정당한 사유 없는 변명을 하면서 보건당국의 검체 채취 요구에 불응한 것입니다.

비록 A가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았고 그 결과 음성판정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A는 이미 보건당국의 검체 채취 요구에 불응한 행위에 대해서 법적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A씨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 제1호에 의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17. “역학조사”란 감염병환자등이 발생한 경우 감염병의 차단과 확산 방지 등을 위하여 감염병환자등의 발생 규모를 파악하고 감염원을 추적하는 등의 활동과 감염병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사례가 발생한 경우 그 원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하는 활동을 말한다.

제18조(역학조사) ① 질병관리본부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이 발생하여 유행할 우려가 있거나, 감염병 여부가 불분명하나 발병원인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역학조사를 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관한 정보를 필요한 범위에서 해당 의료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확산 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의료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② 질병관리본부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역학조사를 하기 위하여 역학조사반을 각각 설치하여야 한다.

③ 누구든지 질병관리본부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는 역학조사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회피하는 행위
2.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
3.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은폐하는 행위

제7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8조제3항을 위반한 자

Q 04

역학조사 거부·방해 또는 회피 (고의적인 사실 누락·은폐)

코로나19 확진 환자 A는 유흥업소 종업원으로 자신의 확진 사실이 직장에 알려지면 쫓겨날까 두려워 역학조사관 B에게 업소 근무 사실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A에 대한 형사처벌은 가능한가요?

#코로나19 #역학조사 #사실누락은폐 #형사책임

A

A는 코로나19 확진 환자로 자신의 동선을 묻는 역학조사관 B의 질문에 유흥업소 근무사실을 알리지 않는 등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은폐하였으므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제3항에 의하면, 질병관리본부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염병이 발생하여 유행할 우려가 있거나 감염병 여부가 불분명하나 발병원인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체없이 역학조사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질병관리본부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는 역학조사에서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은폐하여서는 안 됩니다.

역학조사란 감염병환자 등이 발생한 경우 감염병의 차단과 확산방지 등을 위하여 감염병환자 등의 발생 규모를 파악하고 감염원을 추적하는

등의 활동과 감염병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사례가 발생한 경우 그 원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하는 활동을 말합니다(동법 제2조 제17호).

유형업소 종업원인 A는 자신의 확진 사실이 직장에 알려지게 되면 직장을 잃게 될지 모른다는 생각에 유형업소 근무사실을 숨기는 등 역학조사관 B에게 자신의 동선을 고의적으로 누락·은폐하였으므로 감염병예방법 제18조 제3항 제3호를 위반한 것이 되고, 따라서 동법 제79조 제1호에 의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17. “역학조사”란 감염병환자등이 발생한 경우 감염병의 차단과 확산 방지 등을 위하여 감염병환자등의 발생 규모를 파악하고 감염원을 추적하는 등의 활동과 감염병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사례가 발생한 경우 그 원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하는 활동을 말한다.

제18조(역학조사) ① 질병관리본부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이 발생하여 유행할 우려가 있거나, 감염병 여부가 불분명하나 발병원인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역학조사를 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관한 정보를 필요한 범위에서 해당 의료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확산 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의료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② 질병관리본부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역학조사를 하기 위하여 역학조사반을 각각 설치하여야 한다.

③ 누구든지 질병관리본부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는 역학조사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회피하는 행위
2.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
3.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은폐하는 행위

제7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8조제3항을 위반한 자

Q 05

가짜·허위사실 유포(영상, 뉴스 등)

1. A 등 4명은 코로나19 환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던 시기에 지하철역에서 시민들의 반응을 알아보기 위하여 흰색 방진복을 입은 2명이 환자를 가장한 또 다른 일행을 쫓는 상황을 연출하여 몰래카메라를 촬영한 후 유튜브에 게시하였습니다. A 등 4명에 대한 형사처벌은 가능한가요?
2. B는 코로나19가 전국으로 확산되고 시민들이 불안해하던 상황에서 C병원에 코로나19 환자가 방문한 사실이 없음에도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해당 병원을 방문하여 병원이 곧 폐쇄될 예정'이라는 가짜 뉴스를 만들어 인터넷에 유포하였습니다. B에 대한 형사처벌은 가능한가요?

#코로나 #가짜뉴스 #허위뉴스 #유튜브 #형사책임

A

1. A 등 4명은 보건당국이 환자를 쫓는 상황을 몰래 카메라로 촬영하여 해당 영상을 유튜브에 게시함으로써 시민들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였으므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 B는 C병원에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방문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가짜 뉴스를 만들어 인터넷에 유포하여 C병원의 업무를 방해하였으므로, 형법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1. A 등 4명의 허위 영상 유튜브 게시 행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제74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합니다(법 제2조 제1항 제1호).

A 등 4명은 보건당국 직원으로 보이는 흰색 방진복을 입은 2명이 코로나 확진 환자 2명을 쫓는 가짜 상황을 연출하고, 이러한 상황을 몰래카메라로 촬영하여 유튜브에 게시하였습니다. A 등 4명의 행동은 코로나 19 확진 환자가 급증하고 사망자가 속출하는 상황에서 해당 영상을 정보통신망에 게시하여 이를 시청하는 일반 시민들에게 불안감과 공포감을 유발시켰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A 등 4명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위 범죄는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2. B의 가짜뉴스 인터넷 유포 행위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위력의 방법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형법상 업무방해죄가 성립합니다(형법 제314조 제1항).

대법원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서 ‘위계’란 행위자가 행위목적 달성을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고, 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며, 업무수행 자체가 아니라 업무의 적정성 내지 공정성이 방해된 경우에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8506 판결 참조).

B는 C병원에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방문한 사실이 없음에도 확진 환자가 C병원을 방문한 것처럼 가짜 뉴스를 만들어 인터넷을 통해 유포하여 C병원의 환자진료나 치료 등 업무를 방해한 것이므로 위계에 의해 C병원의 업무를 방해한 것입니다.

따라서 B는 C병원에 대한 업무방해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

제74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의7 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②제1항제3호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Q

05-1

기자의 명예훼손죄 성립 여부

A는 학원강사로 근무하던 중 코로나19에 감염되었습니다. 감염경로는 직업활동이 원인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한편, A는 B종교단체의 소속 교인이었는데, 신문기자 C는 B종교단체의 포교 등의 활동으로 인해 A가 감염된 것으로 보아 B종교단체가 코로나19 확산의 근원지라고 인터넷 신문에 보도하였습니다. 이 경우 C에 대한 형사처벌은 가능한가요?

#코로나19 #확진자 #종교단체 #근원지 #명예훼손

A

C가 A의 감염경로나 동선 등에 관하여 충분한 조사 및 취재 등을 하였고, B가 근원지라고 믿을 만한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자료를 근거로 보도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없었다면, C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A의 감염경로가 B종교단체 활동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A의 직업활동으로 인한 것이라면, C의 보도는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에 따르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대법원은 언론매체의 기사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민법상 불법행위가 성립하는지 여부에 관한 사안에서, “민사상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 때에는 진실한 사실이라는 증명이 있으면 그 행위에 위법성이 없고, 또한 그 증명이 없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언론매체의 보도를 통한 명예훼손에 있어서 행위자가 보도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진실이라고 믿게 된 근거나 자료의 확실성과 신빙성, 사실 확인의 용이성, 보도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행위자가 보도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다하였는가, 그 진실성이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에 의하여 뒷받침되는가 하는 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10208 판결 참조),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일간신문사 기사가 타 신문사의 기사 내용과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사본만을 열람한 것만으로는 위 기사가 기사 내용의 진실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취재를 다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일간신문에 있어서의 보도의 신속성이란 공익적인 요소를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기사를 게재한 것이 피의자에 대한 명예훼손행위의 위법성을 조각하게 할 정도에 이른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6. 5. 28. 선고 94다33828 판결, 1999. 1. 26. 선고 97다10215, 10222 판결 등 참조).”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50213 판결 참조).

이에 따르면 기사가 보도 당시 그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다하였고, 이를 믿을 만한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자료가 존재하여 사실이라고 믿을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보도 내용이 사후적으로 허위로 판명되더라도, 언론의 기능과 역

할에 비추어 명예훼손죄의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

한편, 최근 단체 내 집단감염이 많아지고, 친목 등 소모임으로 인하여 코로나19 감염이 확산되는 추세인데, 확진자의 경우 감염경로 및 동선 등의 정보가 공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C가 A의 감염경로나 동선 등에 관하여 충분한 조사 및 취재 등을 하였고, B가 근원지라고 믿을 만한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자료를 근거로 보도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없었다면, C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②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Q

05-2

명예훼손,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

A는 신천지에 관한 문제가 심각할 당시, B가게가 신천지 교인이 운영하는 빵집이라는 소문을 듣고 이를 사실이라고 믿게 되어 인터넷 카페에 관련 글을 올렸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알고 보니 B는 신천지와 아무런 관련이 없었습니다. B는 A를 상대로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이 경우 A는 처벌을 받게 되나요?

#코로나19 #허위사실유포 #업무방해 #명예훼손

A

A는 명예훼손죄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A가 그 소문이 허위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인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A를 업무방해죄로 처벌하기는 어렵습니다.

1. 명예훼손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에 따르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대법원은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기사란에 마치 특정 여자 연예인이 재벌의 아이를 낳았거나 그 대가를 받은 것처럼 댓글이 달린 상황에서 같은 취지의 댓글을 추가 게시한 사안에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것이고, 피고인이 떠도는 소문만 듣고 그 진위를 확인하지도 아니한 채 앞서 본 바와 같이 인터넷을 통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내용의 댓글을 단 이상, 피고인에게 비방의 목적이나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었다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라는 취지로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2422 판결 참조).

A의 명예훼손죄 성립 여부는 결국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입니다. 당시 코로나19에 대하여 신천지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측면도 있겠으나, A는 인터넷에 떠도는 소문만 듣고 이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글을 게재하였으므로, 대법원 판례의 취지상 비방의 목적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A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2. 업무방해죄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위력의 방법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

해하는 경우 형법상 업무방해죄가 성립합니다(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대법원은 “업무방해의 고의는 반드시 업무방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업무방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업무가 방해될 가능성 또는 위험에 대한 인식이나 예견으로 충분하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도 인정된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09도4141 판결 등 참조).”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18. 7. 24. 선고 2015도12094 판결 참조).

또한 대법원은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방법에 의하여 타인의 업무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는 업무방해죄에 있어, 허위사실을 유포한다고 함은 실제의 객관적 사실과 서로 다른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사실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파시키는 것을 말하고, 특히 이러한 경우 그 행위자에게 행위 당시 자신이 유포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인식하였을 것을 요한다(대법원 1994. 1. 28. 선고 93도1278 판결 참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도6728 판결 참조).

B가 신천지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경우라면 그 빵집 운영 업무가 방해될 가능성 또는 위험에 대한 예견은 충분히 가능하다 할 것이므로 A에게 업무방해의 고의는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유포한 내용이 허위라는 점에 대한 적극적 인식이 있었는지 여부는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객관적으로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경우에 해당되나, 주관적으로는 그 소문의 진위 여부에 대하여 제대로 살피지 아니

하였다는 과실은 별론으로 허위성에 대한 구체적인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A가 소문이 사실이라고 믿고 만연히 이를 유포한 경우라면 그에 관한 과실은 별론으로, 허위라는 점에 대한 적극적인 인식은 인정되기 어려워 업무방해죄로 처벌하기는 어렵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②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13조(신용훼손)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Q
06

의료인에 대한 거짓진술

A는 입원 치료를 받기 위하여 서울 소재 병원 소화기내과에 방문하였습니다. 의사 B는 코로나19 환자가 C지역에서 급증하여 감염병 경보가 발령된 상황이라 A의 감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A에게 C지역을 방문한 사실이 있는지를 입원 전후로 수차례 물었습니다. A는 자신의 치료가 거부당할까 걱정하는 마음에 C지역을 방문한 적이 없다고 거짓 진술하였습니다. 이후 A는 확진 판정을 받았고 최근까지 실거주지는 C지역이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A에 대한 형사처벌은 가능한가요?

#코로나19 #확진환자 #동선 #허위고지 #진료내역

A

A는 코로나19 감염병 경보가 발령된 상황에서 병원 의사인 B의 감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질문에 거짓으로 진술하였으므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3조에 따라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지게 됩니다. 동법에 형사처벌 규정은 없습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에 의하면, 누구든지 감염병 예보 또는 경보가 발령된 후에는 의료인에 대하여 의료기관 내원 이력 또는 진료이력 등 감염 여부 확인에 필요한 사실에 관하여 거짓 진술을 하거나 고의로 사실을 누락·은폐하여서는 안 됩니다.

A는 코로나19 감염병환자가 C지역에서 급증하여 감염병 경보가 발령된 후 서울 소재 병원 의사인 B가 감염병 여부 확인을 위하여 입원 전후로 A에게 C지역을 방문했는지 수차례 물었음에도 최근까지 C지역에 거주한 사실이 없다며 거짓으로 진술하였습니다.

따라서 A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3조 제3호에 따라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A의 행위를 형사처벌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역학조사) ③ 누구든지 질병관리본부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는 역학조사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회피하는 행위
2.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
3.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은폐하는 행위

제35조의2(재난 시 의료인에 대한 거짓 진술 등의 금지) 누구든지 감염병에 관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예보 또는 경보가 발령된 후에는 의료인에 대하여 의료기관 내원(內院)이력 및 진료이력 등 감염 여부 확인에 필요한 사실에 관하여 거짓 진술,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은폐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8조제3항을 위반한 자

제8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 제35조의2를 위반하여 거짓 진술,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은폐한 자

Q
07

마스크 구입 시 타인의 신분증 사용

1. A는 길에서 우연히 습득해 소지하고 있던 타인의 주민등록증으로 공적마스크 5부제에 따라 해당 요일에 마스크를 구입하였습니다.
2. B는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촬영한 이미지파일을 휴대전화 화면을 통해 보여주며 마스크를 구입하였습니다.
3. C는 신분증을 안 가져왔다며 출생년도 끝자리가 그날에 들어맞는 형 D의 주민등록번호를 자신의 것인 것처럼 사용하였습니다.

A, B, C는 각각 어떤 형사책임을 지나요?

#주민등록증도용 #운전면허증도용 #주민등록번호도용

A

1. A는 점유이탈물횡령죄, 주민등록법 위반 및 공문서부정행사죄(법조경합), 업무방해죄가 성립합니다.
2. B는 업무방해죄가 성립합니다.
3. C는 주민등록법 위반, 업무방해죄가 성립합니다. 다만, 주민등록법 위반의 경우, D가 동거친족이라면 D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습니다.

1. A의 형사책임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습득한 경우 유실물법 제1조(습득물의 조치) 제1항에 따라 유실자인 주민등록증상 명의자에게 반환하거나 경찰서(지구대·파출소 등)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치 없이 보관 중 사용하였다면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행위가 되어 형법상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합니다(형법 제360조 제1항).

A는 길에서 우연히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습득하였음에도 유실물법에 따른 조치 없이 이를 보관 중 사용하였으므로, 형법상 점유이탈물횡령죄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A는 습득한 주민등록증을 본인확인용(공적마스크 구매자격 확인)으로 사용하였으므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한 자'에 해당하여, 주민등록법 제37조 제8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A의 행위는 사용목적이 특정된 공문서를 사용명의자 아닌 자가 사용명의자인 것으로 가장하여 그 사용목적에 따라 행사한 것이 되어 형법 제203조 공문서부정행사죄 성립도 가능합니다. 다만, 공문서부정행사죄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이므로, A는 형이 더 중한 위 주민등록법 규정에 따라 처벌받게 될 것입니다.

나아가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위력의 방법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형법상 업무방해죄가 성립합니다(형법 제314조 제1항).

대법원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서 ‘위계’란 행위자가 행위목적 달성을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고, 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며, 업무수행 자체가 아니라 업무의 적정성 내지 공정성이 방해된 경우에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3268506 판결 참조).

A는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여 공적마스크를 구입하였으므로, 위계에 의하여 약국의 공적마스크 판매 업무 및 그 적정성 내지 공정성을 방해하였으므로 형법상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A는 점유이탈물횡령죄, 주민등록법 위반 및 공문서부정행사죄(법조경합),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2. B의 형사책임

대법원은 “제3자로부터 신분확인을 위하여 신분증명서의 제시를 요구받고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한 행위는 그 사용목적에 따른 행사로서 공문서부정행사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1. 4. 19. 선고 2000도198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런데 대법원은 운전면허증 자체가 아닌 이미지파일을 제시한 경우, “자동차 등의 운전자가 운전 중에 도로교통법 제92조 제2항에 따라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은 경우 운전면허증의 특정된 용법에 따른 행사는 도로교통법 관계 법령에 따라 발급된 운전면

허증 자체를 제시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이 경우 자동차 등의 운전자가 경찰공무원에게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 자체가 아니라 이를 촬영한 이미지파일을 휴대전화 화면 등을 통하여 보여주는 행위는 운전면허증의 특정된 용법에 따른 행사라고 볼 수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경찰공무원이 그릇된 신용을 형성할 위험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행위는 결국 공문서부정행사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9. 12. 12. 선고 2018도2560 판결 참조).

즉, B가 운전면허증 자체가 아닌 이미지파일을 제시하여 마스크를 구입하였다면, 위 판례의 취지에 따르면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A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형법상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3. C의 형사책임

C는 형 D의 주민등록번호를 마치 자신의 것인 것처럼 사용하였으므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자’에 해당하여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형 D가 동거친족인 경우 D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C의 행위는 A, B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형법상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법

제3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8.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한 자
10.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자. 다만, 직계혈족·배우자·동거친족 또는 그 배우자 간에는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형법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제230조(공문서 등의 부정행사) 공무원 또는 공무원의 문서 또는 도화를 부정행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하위사실 유포 기타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유실물법

제1조(습득물의 조치) ①타인이 유실한 물건을 습득한 자는 이를 신속하게 유실자 또는 소유자, 그 밖에 물건회복의 청구권을 가진 자에게 반환하거나 경찰서(지구대·파출소 등 소속 경찰관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단 사무소(이하 “자치경찰단”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Q 08

마스크 매점매석 행위

국내의 마스크 생산업체 A사는 2020년 1월 말부터 코로나 19가 확산되고 이로 인한 마스크 수요가 증가하자 갑작스럽게 거래처 C사에 대한 마스크 납품을 일방적으로 중단하고는 회사 대표의 아들이 운영하는 B사에 이미 생산한 마스크를 대량공급하였습니다. A사 제품은 원래 공장도 가격 750원에 납품하던 제품이었지만, A사는 대표 아들이 운영하는 B사에 개당 300원에 판매하였고, B사는 지역맘카페 등의 공동구매 이벤트를 통해 개당 3,500원~4,500원에 팔아 공급가 대비 10배 이상의 폭리를 취하였습니다. 이 경우 어떠한 형사책임을 지나요?

#사재기 #매점매석 #거래거절 #부당한지원행위

A

1.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 제5조 기준을 위반하여 마스크를 폭리 목적으로 과도하게 보관하거나 판매를 기매석 행위에 해당하여,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2. A사가 거래처 C사에 납품을 중단하고 B사에 낮은 가격으로 판매한 행위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여 A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
1.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사업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매

점매석 행위로 지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되고, 이를 위반하면 동법 제26조, 제30조(양벌규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다만, 동법 제31조에 따라 주무부장관인 기획재정부장관의 고발이 있어야 처벌이 가능합니다.

기획재정부장관은 코로나19에 대응하여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발령하였고, 동 고시 제5조는 보건용 마스크 매점매석 행위 여부 판단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① 2019년 1월 1일 이전부터 영업을 한 사업자의 경우 조사 당일을 기준으로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하여 5일 이상 보관하는 행위, ② 2019년 1월 1일 이후 신규로 영업을 한 사업자의 경우 영업 시작일부터 조사 당일까지의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하여 5일 이상 보관하는 행위, ③ 2020년 1월 1일 이후 신규로 영업을 한 사업자의 경우 매입한 날부터 10일 이내 반환·판매하지 않는 행위는 매점매석 행위가 되어 처벌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A사와 B사가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 제5조 기준을 위반하여 마스크를 폭리를 목적으로 과다하게 보관하거나 판매를 기피한 경우, 이는 매점매석 행위에 해당하여,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1호는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거나 거래의 상대방을 차별하여 취급하는 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정하여, 이를 위반한 경우 동법 제67조 제2호, 제7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법 제23조 제1항 제7호 가목은 부당하게 자산·상품 등을 제공하거나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등의 방법으로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를 불공정 거래행위로 규정하여, 이를 위반한 경우 동법 제66조 제1항 제9의 2호, 제70조(양벌규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다만, 동법 제71조 제1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처벌이 가능합니다.

A사는 기존 거래처에 대한 납품을 일방적으로 중단하고 대표의 아들이 운영하는 B사에 매우 저렴한 가격에 상품을 공급하였으므로 이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1호 및 제7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A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7조(매점매석 행위의 금지) 사업자는 폭리를 목적으로 물품을 매점매석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물가의 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매점매석 행위로 지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6조(벌칙) 제7조를 위반하여 매점매석 행위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1조(고발) 제25조 및 제26조의 죄는 주무부장관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

제4조(매점매석행위 등 금지) ①사업자는 보건용 마스크나 손소독제를 폭리를 목적으로 과도하게 보유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사업자는 보건용 마스크나 손소독제를 폭리를 목적으로 판매를 기피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조(매점매석행위여부 판단기준) ①제4조에 따른 매점매석행위 판단기준은 다음과 같다.

1. 2019년 1월 1일 이전부터 영업을 한 사업자의 경우 조사 당일을 기준으로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하여 5일 이상 보관하는 행위
2. 2019년 1월 1일 이후 신규로 영업을 한 사업자의 경우 영업 시작일부터 조사 당일까지의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하여 5일 이상 보관하는 행위
3. 조사 당일을 기준으로 영업일이 2개월 미만인 사업자의 경우 매입한 날부터 10일 이내 반환·판매하지 않는 행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불공정거래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거나 거래의 상대방을 차별하여 취급하는 행위
 7. 부당하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하여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
 - 가.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가지급금·대여금·인력·부동산·유가증권·상품·용역·무체재산권 등을 제공하거나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 ②특수관계인 또는 회사는 다른 사업자로부터 제1항제7호에 해당할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원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6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9의 2.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항제7호, 제23조의2(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제1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한 자

제6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항(제7호는 제외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자

제70조(양벌규정) 법인(법인격이 없는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1조(고발) ①제66조(벌칙) 및 제67조(벌칙)의 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Q 09

코로나19 확진자 전파매개행위의 상해죄 성립 여부

A는 감기, 콧물 등 증세가 발현되었지만 단순한 감기로 생각하고 지내다가 다음날 38도가 넘는 발열증상이 있자 아침 일찍 거주지 인근에 있는 선별진료소를 찾았습니다. A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약 1시간 30분 동안 진단 검사를 위한 검체 채취를 한 뒤 보건교육을 받으며 자가격리 결정을 통보받았습니다. A는 이후 코로나19 양성판정을 통보받았으나 입원하지 않은 채 인근 대형마트에 들렀고 동창회 모임에 나가 외식을 하였는데, A와 함께 식사한 친구 B가 이틀 후 코로나19 양성판정을 받았습니다.

1. A에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재(형사 Q&A 1번 참조) 외에 B에 대한 상해죄 성립이 가능한가요?
2. 만일 B의 이동경로에 다른 확진자와의 접촉이 있었다면 A는 면책될 수 있나요?

#전파매개행위 #미필적고의 #인과관계

A

A가 코로나19 양성판정을 통보받았음에도 외부 접촉행위를 한 것은 타인에의 감염이라는 결과발생의 위험을 용인하였다고 해석됩니다. 또한 A의 외부 접촉행위로 초래된 위험이 B의 감염이라는 결과로 현실화되었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B가 다른 확진자와 접촉했다 할지라도 A는 B에 대한 상해죄의 죄책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1. 고의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해당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7도13628 판결 참조).

즉, 코로나19 양성판정을 통보받고도 입원하지 않은 채 다른 사람과의 접촉행위를 하였고, 접촉자 중 확진자가 발생한 경우, 상해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한편, B의 이동경로에 다른 확진자와의 접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A가 면책되기는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형법 제17조는 ‘어떤 행위라도 죄의 요소되는 위험 발생에 연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결과로 인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자신의 행위로 초래된 위험이 그대로 또는 그 일부가 범죄 결과로 현실화된 경우라면 비록 그 결과 발생에 제3자의 행위가 일부 기여하였다 할지라도 그 결과에 대한 죄책을 면할 수 없는 것”이라 보기 때문입니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8도11921 판결 참조).

따라서 A가 코로나19 양성판정을 통보받았음에도 외부 접촉행위를 한 것은 타인에의 감염이라는 결과발생의 위험을 용인하였다고 해석되어 상해죄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고, A의 외부 접촉행위로 초래된 위험이 B의 감염이라는 결과로 현실화되었다고 보이므로 B

가 다른 확진자와 접촉하여 그 결과 발생에 제3자의 행위가 일부 기여하였다 할지라도 A는 B에 대한 상해죄의 죄책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참고로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은 ‘에이즈 감염인은 혈액 또는 체액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전파매개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법 제19조 전파매개행위의 금지, 제25조 제2호). 이는 전파매개행위(가령 성관계)가 있으면 그 상대방에게 인체면역결핍 바이러스에 감염될 위험에 노출시키므로 실제 감염 여부에 관계없이 처벌하는 형식범으로서, 침해범인 상해죄와는 구별됩니다(광주지방법원 2019. 11. 8 선고 2019고단3972 판결 등 참조).

형법

-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③전 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Q
10

집합금지, 방역조치 지침 준수 위반 등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집단감염 위험시설 운영제한 조치’라는 행정명령이 내려졌습니다. 행정명령에 따르면, 노래방 등 집단감염 위험시설 운영자는 필수 방역지침, 즉 출입구에서 발열·호흡기 증상을 확인하고 종사자와 이용자 모두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손 소독제 비치, 사람 간 거리 1~2m 유지, 확진자 발생 시 동선 파악을 위한 출입자 명단도 작성해야 합니다. 이용자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이용자 간 최소 1~2m 이상 간격을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A는 친구들과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노래방을 이용하였습니다. 이 노래방 업주(운영자)는 출입자 명부를 작성하지 않았으며, 발열·호흡기 증상을 확인하지도 않았습니다. 관할 구청의 현장점검에서 적발되었다면, A는 처벌받나요? 운영자만 처벌받는 것 아닌가요?

#행정명령 #코로나 #노래방 #학원 #종교시설

A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을 위반한 것만으로 처벌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러나 방역지침을 지키지 않고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내려진 노래방을 운영할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운영자뿐만 아니라 A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학원, 종교시설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정명령 '집단감염 위험시설 운영제한 조치'의 대상 시설에는 종교시설, 실내 체육시설, PC방, 노래방, 학원은 물론 유흥시설로 분류되는 클럽, 콜라텍, 유흥주점 등이 있습니다. 노래방은 행정명령의 적용대상 시설입니다.

노래방 운영자는 행정명령에 따라 출입자 명부 작성, 종사자와 이용자 전원 마스크 착용이라는 필수 방역지침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용자인 A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이용자 간 최소 1~2m 이상 간격을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노래방 운영 시 방역지침을 따르고 있는지 등을 현장점검하며, 이를 위반한 곳에 대해 계고장을 발부하고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집회·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

노래방 운영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내린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관서에 고발될 수 있고, 위반사실이 인정되면 감염병예방법 제80조 제7호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입원·치료비와 그에 수반되는 방역비에 대해 손해배상(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A가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을 위반한 것만으로 처벌되기는 어려우나,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내려진 노래방을 이용하였다면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위반한 것입니다. 따라서 A는 감염병예방법 제80조 제7호에 따라 경찰관서에 고발될 수 있고, 위반 사실이 인정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

제8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 제47조(같은 조 제3호는 제외한다) 또는 제49조제1항(같은 항 제3호 중 건강진단에 관한 사항과 같은 항 제14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조치에 위반한 자

Q

11

개인정보 유출(확진자 동선공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A는 자신의 인적사항(나이), 감염경로, 확진일자, 입원여부, 입원기관, 시간대별 이동경로 등이 공개되면서 사생활이 노출되었습니다.

확진자 관련 정보를 취급하는 담당공무원이 A의 성명을 의도적으로 공개하거나, 코로나19와 관련 없는 'A를 특정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인터넷에 유포하였다면, 담당공무원의 행위에 대해 처벌을 요구할 수 있는가요?

#동선공개 #코로나 #개인정보 #사생활

A

코로나19 확진을 받은 A의 성명 등을 의도적으로 공개하거나, 코로나19와 관계없는 'A를 특정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인터넷에 유포한 것이라면,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행위로 형사상 처벌이 가능합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의2 제1항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확산으로 인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 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면 감염병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알아야 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 게재 또는 보도자료 배포 등의 방법으로 신속히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코로나19와 관련한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주어진 의무입니다.

A는 코로나19 확진자이므로 A의 인적사항(국적 등), 감염경로, 확진일자, 입원여부, 입원기관, 시간대별 이동경로 등에 대한 공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법한 조치입니다. 다만, 확진자 동선공개 시 성명 등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공개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합니다.

한편,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에 따르면,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는 행위, ②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담당공무원이 코로나 확진을 받은 A의 성명 등을 의도적으로 공개하거나, 코로나19와 관계없는 ‘A를 특정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인터넷에 유포한 것이라면,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를 위반한 행위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A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6조에 따라 성명을 공개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개인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개인정보가 담긴 공문서 등이 온라인상에 유포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의4에 따라 노출된 개인정보의 삭제·차단을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공개된 정보가 ① 사실과 다른 경우 또는 ② 공개된 사항에 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서면이나 말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의2 제2항). 제기된 이의신청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개된 정보의 정정 등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의2 제3항).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의2(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①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확산으로 인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면 감염병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알아야 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 게재 또는 보도자료 배포 등의 방법으로 신속히 공개하여야 한다.

②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공개된 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서면이나 말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1. 공개된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2. 공개된 사항에 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③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신청한 이의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된 정보의 정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①제35조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그 개인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다.

②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에 따른 정보주체의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조사하여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정정·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 결과를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제59조(금지행위)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는 행위
2.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
3.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하는 행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의4(노출된 개인정보의 삭제·차단) ①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주민등록번호, 계좌정보, 신용카드정보 등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중에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1항의 노출된 개인정보에 대한 삭제·차단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Q
12

코로나19 재난지원금 부정유통 행위

A는 코로나19로 인하여 긴급재난지원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A는 인터넷 커뮤니티에 지역화폐 할인매매에 관한 글이 올라오자 관심을 갖게 되었는데, 이러한 거래행위도 형사처벌이 되나요?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상품권깡 #할인매매

A

신용카드 부정유통의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가능합니다. 지역사랑상품권 등 부정유통의 경우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2020년 7월 2일자로 시행되어,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신용카드의 경우 ①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넘겨 신용카드로 거래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는 행위, 또는 ② 신용카드 회원으로 하여금 신용카드로 구매하도록 한 물품·용역 등을 할인하여 매입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유통하여 준 자 또는 이를 중개·알선한 자의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한편, 재난지원금을 지역사랑상품권 등으로 지급받은 경우, 지역사랑상

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20년 7월 2일자로 시행되었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이란 지역상품권, 지역화폐 등 그 명칭 또는 형태와 관계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을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하여 증표를 발행·판매하고, 그 소지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가맹점(이하 “상품권 발행자 등”)에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상품권발행자 등으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8호에 따른 선불카드를 말합니다(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이에 따르면, 개별가맹점이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또는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수취한 지역사랑상품권을 환전하거나 환전대행가맹점에 환전을 요청한 경우,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참고로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시·도별로 ‘차별거래 및 부정유통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이 종료되는 2020년 8월 31일까지 신고접수 및 일제단속을 실시합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벌칙)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준 자 또는 이를 중개·

알선한 자

- 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넘겨 신용카드로 거래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는 행위
- 나. 신용카드회원으로 하여금 신용카드로 구매하도록 한 물품·용역 등을 할인하여 매입하는 행위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 2020. 7. 2.] [법률 제17252호, 2020. 5. 1., 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사랑상품권”이란 지역상품권, 지역화폐 등 그 명칭 또는 형태와 관계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을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 증표를 발행·판매하고, 그 소지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가맹점(이하 “상품권발행자등”이라 한다)에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상품권발행자등으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선불카드를 말한다.

제10조(가맹점의 준수사항) ① 개별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지역사랑상품권 결제를 거절하거나 지역사랑상품권 소지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2. 다음 각 목의 지역사랑상품권을 환전하거나 환전대행가맹점에 환전을 요청하는 행위
 - 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수취한 지역사랑상품권
 - 나.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수취한 지역사랑상품권
- ② 개별가맹점은 지역사랑상품권 소지자가 권면금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 이상에 상당하는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잔액을 환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환전대행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개별가맹점이 아닌 자를 위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2. 제1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지역사랑상품권임을 알면서도 그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제2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6조제1항을 위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지역사랑상품권의 보관·판매·환전 업무를 대행한 자
 2.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가맹점으로 등록하지 아니하고 가맹점 업무를 수행한 자
 3. 제10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을 환전하거나 환전대행가맹점에 환전을 요청한 개별가맹점
 4. 제10조제3항을 위반하여 환전을 대행한 환전대행가맹점
- ② 제17조에 따른 위반행위 조사 등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징수한다.

CHAPTER
11

회사 경영 관계

01. 확진자 이동경로 정보공개와 사업장 폐쇄(배·보상)
02. 근로자에 대한 징계 또는 손해배상 청구
03. 임원의 임기와 권한행사
04. 코로나19와 주주총회(보고서 제출)
05. 코로나19와 주주총회(임원의 보수)
06. 소상공인 지원 제도
 - 06-1. 지방자치단체의 소상공인 지원(재난관리기금)
07. 코로나19와 정리해고
08. 법인 회생·파산
09. 개인 회생·파산
10. 사업주의 손해배상책임
11. 비상경영대책(임금의 반납 또는 삭감)

Q 01

확진자 이동경로 정보공개와 사업장 폐쇄(배·보상)

1. A는 정부의 코로나19 확진자의 이동경로 정보공개에 따라 운영하던 사업장을 폐쇄하게 되었습니다. A는 국가를 상대로 손실보상 청구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나요?
2. 만약 정부에서 발표한 확진자 이동경로 등이 사실이 아닌 허위일 경우, 허위 정보 제공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는 어떠한 권리 구제 방법이 있나요?

#이동경로 #정보공개 #사업장폐쇄 #손실보상 #손해배상

A

사업장 폐쇄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폐쇄 조치로 인한 경우에는 동법 규정에 따라 손실보상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동경로 등이 허위이고, 이에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된다면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제5호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환자 등이 발생·경유하거나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사실을 공개하여 요양기관(의료기관, 약국, 보건소 등)이 입게 된 일정 범위의 손실을 보상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요양기관 외에 다른 기관(사업장 등)에 대한 보상규정은 두고 있지 않습니다.

한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1호 가목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환자 등이 있는 장소나 감염병 병원체에 오염되었다고 인정되는 장소에 대해 일시적 폐쇄 조치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동법 제70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그 조치로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A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동경로 정보 공개를 원인으로 손실을 보상받기 어렵고, 사업장 폐쇄가 동법 제47조 제1호 가목에 따른 폐쇄 조치로 인한 경우에만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즉, A가 자발적으로 임시 휴업한 경우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을 받기 어렵습니다.

또한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므로, 정부의 확진자 이동경로 정보공개행위가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한다면 국가배상법에 따라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의2 제1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확산으로 인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 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면 감염병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알아야 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 게재 또는 보도자료 배포 등의 방법으로 신속히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동경로 정보공개행위가 위 규정에 근거하여 적법하

게 이루어진 것이라면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확진자 이동경로 등이 사실이 아닌 허위일 경우에도 공무원이 직무 집행 과정에서 이를 인지하지 못한 데 대한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의2(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①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확산으로 인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면 감염병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알아야 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 게재 또는 보도자료 배포 등의 방법으로 신속히 공개하여야 한다.

제47조(감염병 유행에 대한 방역 조치)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7.6, 2020.3.4>

1. 감염병환자등이 있는 장소나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되었다고 인정되는 장소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조치
- 가. 일시적 폐쇄

제70조(손실보상) ①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실을 입은 자에게 제70조의2의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4. 제47조 제1호, 제4호 및 제5호, 제48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제4호, 제6호부터 제10호까지, 제12호 및 제13호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
5. 감염병환자등이 발생·경유하거나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사실을 공개하여 발생한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에 따른 요양기관의 손실로서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손실에 준하고, 제70조의2에 따른 손실보상심의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손실

국가배상법

제2조(배상책임) ①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Q
02

근로자에 대한 징계 또는 손해배상 청구

A사는 정부와 A사가 마련한 코로나19 관련 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근로자 B로 인하여 같이 근무하는 근로자들이 집단 감염되고 사업장이 코호트 격리되는 등 손해를 입었습니다. A사는 근로자 B를 징계하거나 B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지침위반 #집단감염 #코호트격리 #징계 #손해배상

A

B가 A사가 구체적이고 명확한 행동 지침을 마련하여 사전 고지 하였음에도 이를 위반한 경우 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원 또는 격리조치를 위반하여 회사에 출근한 경우에는 B의 고의 또는 과실로 A사에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A사는 B를 징계하거나 B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는 질병이기 때문에 코로나19에 감염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근로자를 징계하거나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한 보호의무 등이 있으므로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적절한 조치(자가격리, 재택근무, 마스크 착용 등)가 가능하고, 위 조치가 정부의 지침에 따른 것이라면 문제되지 않는다 할 것이며, 근로자는 그 조치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입니다.

한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4호, 제42조 제1항·제2항 제1호·제3항 또는 제7항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1급 감염병이 발생한 경우 감염병환자 등, 감염병의심자에 대하여 입원 또는 격리조치를 할 수 있고, 그 대상자가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이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 제1조 규정에 따라, 2020년 4월 5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까지는 동법 제80조 제5호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2020년 4월 5일 이후부터는 동법 제79조의3 제4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따라서 A사가 구체적이고 명확한 행동 지침을 마련하여 B에게 사전 고지하였음에도 B가 이를 위반하였거나, B가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원 또는 격리 조치를 거부하고 회사에 출근한 경우에는 B의 고의 또는 과실로 A사에 근로자들이 집단 감염되고 사업장이 코호트 격리되는 등의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A사는 B를 징계하거나 B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감염병에 관한 강제처분) ①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염병환자등이 있다고 인정되는 주거 시설, 선박·항공기·열차 등 운송수단 또는 그 밖의 장소에 들어가 필요한 조사나 진찰을 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진찰 결과 감염병환자등으로 인정될 때에는 동행하여 치료받게 하거나 입원시킬 수 있다.

1. 제1급감염병

②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급감염병이 발생한 경우 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감염병의심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공무원은 감염병 증상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나 진찰을 할 수 있다. <신설 2020. 3. 4.>

1. 자가(自家) 또는 시설에 격리

③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조사나 진찰 결과 감염병환자등으로 인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공무원과 동행하여 치료받게 하거나 입원시킬 수 있다.

⑦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조사거부자를 자가 또는 감염병관리시설에 격리할 수 있으며, 제4항에 따른 조사·진찰 결과 감염병환자등으로 인정될 때에는 감염병관리시설에서 치료받게 하거나 입원시켜야 한다.

제79조의3(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42조 제1항·제2항 제1호·제3항 또는 제7항에 따른 입원 또는 격리 조치를 거부한 자 [본조신설 2020. 3. 4.][시행일 2020.4.5.]

제8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제42조에 따른 강제처분에 따르지 아니한 자

부 칙 <법률 제17067호, 2020. 3. 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그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제11조제1항·제13조·제16조의2제1항·제22조·제23조·제23조의2·제34조의2·제40조의3·제42조·제47조·제49조·제52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제53조·제59조·제60조·제60조의3(시장·군수·구청장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제76조의2·제76조의3·제79조 제3호·제5호 및 제83조 제2항 제3호의 개정규정: 공포한 날
- 제77조·제79조의3·제79조의4 및 제80조의 개정규정: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

Q 03

임원의 임기와 권한행사

A는 국내 대형 금융회사 퇴직 임원들로 구성된 동우회의 회장입니다. A는 2018년 3월 동우회 회장으로 당선되어 임기 2년의 회장직을 수행하여 왔는데 원래는 2020년 3월에 다시 총회를 개최하여 회장을 선임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동우회 회원들의 평균 연령이 70대가 넘다 보니 코로나19로 인해서 3월에 계획했던 총회를 열 수 없는 상황이 되었고 A의 임기가 그대로 종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동우회는 4월 말이나 5월 초에 총회를 개최하여 회장을 선임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동우회에는 회장의 임기만 정해져 있을 뿐 임기종료 후 회장 권한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이 없습니다.

1. 2020년 3월 31일 이후에도 A의 회장으로서의 지위는 유지가 되는 것인가요?
2. A의 회장 지위가 유지되지 않는다면 누가 동우회 회장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으며, 차기 총회의 소집권자는 누구인가요?
3. A의 회장 지위가 계속 유지된다면 차기 총회 때 총회를 A가 진행할 수 있는지요?

#단체운영 #임기만료 #총회 #회장권한



동우회에 관련 규정이 없으므로 판례나 조리에 따라 판단할 때 A의 회장 지위는 유지될 수 있습니다. 다만, 차기 총회에서 회장을 선임하는 결의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회장이 선거를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A가 속한 동우회는 법률적인 인격이 인정되는 단체도 아니고 비영리 단체 등으로 등록이 된 단체도 아니며 민법상 조합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사적 모임으로 보입니다.

동우회에 임기가 종료된 회장의 권한 등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이 없으므로 유사한 단체에 관한 판례나 조리에 따라서 회장의 권한 등을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입니다.

대법원은 ① 민법상 재단법인인 학교이사의 경우 임기가 만료된 이사라도 새로운 이사를 선임하기 전까지는 법인의 유지·존속을 위해서 종전 이사의 권한 등 긴급처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시한 바 있고 (대법원 2007. 7. 19. 선고 2006두19297 판결 참조), ② 법인격 있는 단체로 보는 종종대표자의 경우 임기만료 이후에도 후임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5도4072 판결 참조).

또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1조 제5항 1호는 “조합임원이 사임, 해임, 임기만료,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부터 6개월 이상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 시장·군수 등이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를 전문조합관리인으로 선정하여 조합임원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그 반대해석상 임원의 임기만료로 조합의 업무수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최장 6개월간은 전임임원의 지위가

인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 A가 회장으로서의 지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차기 총회에서 회장을 선임하는 결의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해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회장이 선거를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1조(조합의 임원) ⑥조합임원의 선출방법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 다만, 시장·군수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호사·회계사·기술사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를 전문조합관리인으로 선정하여 조합임원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조합임원이 사임, 해임, 임기만료,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부터 6개월 이상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

Q
04

코로나19와 주주총회(보고서 제출)

중국에 지사를 둔 주식회사 A는 중국 현지에 만연한 코로나 19로 인하여 이동제한, 결산 및 외부감사 지연 등 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중국 현지 법인의 사업보고서, 감사보고서 등을 적시에 제출받지 못하게 되어 재무제표 승인을 위한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지 못하게 된 결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및 상법 등을 위반할 수밖에 없게 되었는데, 이 경우 법 위반을 이유로 한 제재처분을 면제받는 방법이나 법 위반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정기주주총회 #사업보고서 #감사보고서 #자본시장법
#외부감사법 #상법

A

A 또는 감사인은 금융감독원이나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재무제표, 감사보고서 등 지연제출에 대한 심사를 신청할 수 있고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재를 면제받을 수 있는 특례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재무제표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는 상법에 따라 연기·속행 결의를 한 후 코로나19가 진정된 이후 개최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주권상장법인과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67조가 규정한 법인)은 각 사업연도 경과 후 90일 이내에 사업보고서를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하는데, 이에 위반할 경우 과징금

이 부과되게 되고(자본시장법 제159조, 제429조),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주식회사와 유한회사는 정기주주총회 개최 6주 전까지 재무제표를 감사인에게 제출하여야 하며(외부감사법 제6조, 시행령 제8조), 감사인은 정기주주총회 1주 전까지 감사보고서를 회사, 증권선물위원회 등에 제출해야 하는데(외부감사법 제23조, 시행령 제27조), 이러한 의무에 위반할 경우 일정한 제재가 부과되게 됩니다(외부감사법 제29조, 제30조 제42조 등).

상장회사가 코로나19 혹은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조치로 사업보고서를 적시에 제출하지 못하게 된 경우 과징금 부과와 별도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고, 관리종목 지정 후 10일이 경과하면 상장폐지가 될 수 있는데, 한국거래소는 코로나19라는 불가피한 사정을 고려하여 위와 같은 거래소 상장규정 위반에 따른 제재 요건을 완화하여 코로나19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한 회사에 대하여 관리종목 지정을 유예하는 등 특례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이동제한이 발생하거나 결산이 지연되어 사업보고서, 재무제표, 감사보고서 등 제출이 지연되거나 제출되지 못한 경우 불가피한 외부사정으로 인한 것임을 고려하여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회사 및 감사인에 대하여 제재를 면제해 주는 특례가 마련되었는데, 재무제표, 감사보고서, 사업보고서 등의 지연제출 혹은 미제출 사유가 발생할 경우 회사나 감사인이 금융감독원이나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심사를 신청하고, 심사결과 ① 회사의 결산일이 2019년 12월 31일이고, ② 회사의 주요 사업장이 중국 또는 국내 감염병특별관리지역에 있거나 동 지역에서 중요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③ 재무제표 작성 또는 외부감사가 코로나19 또는 코로나19 방역 등을 위한 각종 조치 등의 영향으로 지연된 경우, 감사인이 코로나19 또는 방역과정에서 사무실 폐쇄 등

조치로 2019년 회계연도 회계감사를 기한 내 완료하기 어렵게 된 경우,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증권선물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사 또는 감사인에 대한 관련 제재를 면제하게 됩니다.

코로나19로 위와 같은 사유가 발생하여 재무제표, 감사보고서 등 작성 이 지연될 경우 이사는 정기총회 회의일 1주 전부터 재무제표와 감사보고서를 본점에 비치해야 하는 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되고, 그에 따른 과태료 제재를 받게 될 우려가 있는데(상법 제448조, 제635조), 코로나19로 인한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위 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되었다는 점이 인정되면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게 됩니다.

재무제표 등이 작성되었다 하더라도 코로나19 감염의 우려 등 사유로 재무제표 등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 개최가 곤란할 경우에는 전자투표나 전자위임장 등을 활용하여 주주총회 연기·속행 결의를 한 후 코로나19가 진정된 이후 재무제표 등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 개최를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상법 제372조).

Q 05

코로나19와 주주총회(임원의 보수)

주식회사 임원의 보수는 주주총회에서 정하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총회를 개최하지 못할 경우 임원의 보수는 어떻게 결정해야 하나요?

#코로나19 #주주총회 #임원의보수

A

주식회사 임원의 보수는 정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경우 주주총회 결의로 정하여야 합니다. 대면회의가 어려운 경우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회사는 주주 전원의 동의를 거쳐 주주총회 결의를 서면결의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에 해당하지 않는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주주가 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정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사회 결의도 정관에 달리 정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상법 제388조에 의하면 주식회사의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는 이사가 자신의 보수와 관련하여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는 폐해를 방지하여 회사와 주주 및 회사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강행규정이다. 따라서 정관 등에서 이사의 보수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그 금액·지급방법·지급시기 등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한 이사의 보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9. 7. 4. 선고 2017다17436 판결 참조).

한편, 상법 제363조 제4항에 따르면,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회사는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집절차 없이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고, 서면에 의한 결의로써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고, 동법 제368조의4 제1항에 따르면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주주가 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정할 수 있으며, 동법 제391조에 따라 이사회 결의는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코로나19로 대면회의가 어려운 경우라도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하여야 하므로,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회사는 주주 전원의 동의를 거쳐 주주총회 결의를 서면결의로 진행하거나, 그에 해당하지 않는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주주가 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정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사회 결의도 정관에 달리 정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388조(이사의 보수)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제363조(소집의 통지) ④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회사는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집절차 없이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고, 서면에 의한 결의로써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다. 결의의 목적사항에 대하여 주주 전원이 서면으로 동의를 한 때에는 서면에 의한 결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⑤제4항의 서면에 의한 결의는 주주총회의 결의와 같은 효력이 있다.

제368조의4(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 ①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주주가 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정할 수 있다.

제391조(이사회 결의방법) ②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Q 06

소상공인 지원 제도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제도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소상공인지원 #대출 #보증 #조세감면유예

A

정부가 코로나19로 경영이 악화되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마련한 제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이에 더하여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 대상 정책자금 융자 사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분	지원내용	주관기관	연락처	시행일
대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칭)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 (규모) 200억 원 • (대상) 신종 CV 피해 소상공인 • (내용) 한도 7천만 원 융자지원, 대출기간 5년 (2년거치 3년상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1357	2.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칭) 미소금융 창업·운영자금 • (규모) 4,400억 원 • (대상) 자산용(6등급이하)·저소득(차상위계층이하) 영세자영업자 대상 • (내용) 1인당 2천만 원 한도, 최장 5년, 금리 4.5% 이내 	서민금융진흥원	1397	2.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칭) 미소금융 전통시장 상인대출 • (규모) 500억 원→550억 원(50억 원 확대) • (대상) 전통시장(전국 318개)의 영세상인 * 기초 지자체 추천을 받아 서민금융진흥원과 지원 사업 약정을 체결한 전통시장 • (내용) 1인당 1천만 원 한도, 만기 최장 2년, 금리 4.5% 이내(상인회 자율 결정) 	서민금융진흥원	1397	2.11

구분	지원내용	주관기관	연락처	시행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칭) 특별자금지원 • (규모) 1,000억 원 • (대상) 신종 CV 피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 (내용) 최대 5억 원, 1년(3년까지 연장 가능), 최대 1.0%p 금리감면 	기업은행	1588-2588	2.10
보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칭) 특례보증 프로그램 • (규모) 1,000억 원 • (대상) 신종 CV 피해 소상공인 • (내용) 한도 7천만 원 보증지원(5년 이내), 보증비율상향(85%→100%), 보증료율 0.8% 적용 	지역 신용보증재단	1588-7365	2.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칭) 특례보증 프로그램 • (규모) 1,000억 원 • (대상) 신종 CV 피해 기업 • (내용) 기업 당 3억 원 이내 보증지원, 보증비율 상향(85%→95%), 보증료율 1.0% 적용 	기술보증기금	1544-1120	2.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칭) 우대보증 프로그램 • (규모) 3,000억 원 • (대상) 신종 CV 피해 중소기업 • (내용) 우대 보증 지원, 보증비율 상향(85%→95%), 보증료율 0.2%p 차감, 심사절차 간소화 	신용보증기금	1588-6565	2.6
국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신종 CV 피해 납세자*(자영업자 등) * 피해지역 납세자 및 의료, 관광, 여행, 공연, 음식, 숙박업 등(사치성 유흥업소 제외) • (내용) ① 법인세,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 연장(최대 9개월) ② 징수(최대 9개월), 체납처분(최장 1년) 집행 유예 ③ 세무조사 연기 또는 중지 ④ 신종 CV 세정지원 전담대응반 운영 	국세청 징세과, 관할 세무서	국번없이 126 (3번→2번)	2.5
지방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신종 CV 확진자 및 격리자,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 • (내용) ① 취득세, 지방소득세, 주민세 종업원분 등 신고·납부기한 연장(6개월 이내, 6개월 재연장 가능) ② 징수 및 체납처분 유예(6개월 이내, 추가 6개월 재연장 가능) ③ 세무조사 유예 ④ 지방세 감면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	관할 지자체 세정과	2.5

구분	지원내용	주관기관	연락처	시행일
관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중국 내 공장폐쇄로 원부자재 수급 및 수출에 차질이 발생한 업체 • (내용)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납기연장·분할납부(최대 1년) ② 당일 관세환급, 관세조사 등 유예 ③ 애로해소센터 운영 	관세청 심사정책과	042-481-7863 국번없이 125 (20번→2번)	2.6
카드	<p>피해 우려 영세·중소가맹점(연매출 5억 원 이하) 등에 대한 무이자할부 등 마케팅지원 및 사업자금 대출 금리 인하 등 추진</p> <p>* (C사) 무이자할부 서비스 지원, 결제대금 6개월간 청구유예, 일시불 이용건 분할결제 등</p> <p>* (D사) 가맹점주 사업자금 대출금리 인하, 소비영향 분석 지원, 가맹점 위생물품 제공 등</p>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	02-2100-2983	2.10

Q

06-1

지방자치단체의 소상공인 지원 (재난관리기금)

지방자치단체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이나 취약계층 지원을 위하여 조례 제정 없이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할 수 있나요?

#지방자치단체 #소상공인 #취약계층 #재난관리기금

A

지방자치단체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8조 제3항, 동법 시행령 제75조의2 규정에 따라 별도의 조례 제정 없이도 소상공인이나 취약계층 지원을 위하여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재난관리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재난관리기금을 적립하여야 합니다. 동법 제68조 제3항에 따르면 재난관리기금의 용도·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동법 시행령 제74조는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를 크게 ①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공공분야 재난관리 활동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 ②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소유하거나 점용하는 시설에 대한 안전조치 비용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75조 제5항은 재난관리기금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 중 일정 범위의 경우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율하고 있습니다.

한편, 코로나19 발생으로 2020년 4월 2일 동법 시행령 제75조의2(재난관리기금의 용도 및 의무예치금액 사용에 관한 특례)가 신설되어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동법 시행령 제74조 및 제75조 제4항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및 코로나19 재난관리를 위한 지방재원(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분을 포함한다)으로 재난관리기금 및 의무예치금액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동법 시행령 제75조 등에 따른 별도 조례 제정 없이도 신설규정인 동법 시행령 제75조의2에 근거하여 소상공인, 취약계층 지원을 위하여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동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30595호, 2020. 4. 2.) 제2조는 '위 영 시행 전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및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재난관리를 위한 지방재원(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분을 포함한다)으로 사용한 재난관리기금 및 의무예치금액은 제75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사용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의 경과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재난관리기금의 적립) ①지방자치단체는 재난관리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재난관리기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의 매년도 최저적립액은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68조(재난관리기금의 운용 등) ①재난관리기금에서 생기는 수입은 그 전액을 재난관리기금에 편입하여야 한다.

②제67조제2항에 따른 매년도 최저적립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은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에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의 용도·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4조(재난관리기금의 용도) 법 제68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공공분야 재난관리 활동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 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보조금의 예산 계상을 신청하여 보조금에 관한 예산이 확정된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분
 - 나. 「자연재해대책법」 등 재난관련 법령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항에 드는 비용. 다만, 응급 복구 및 긴급한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한다.
2.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시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조치 비용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
 - 가.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시설에 대한 안전조치
 - 1) 「자연재해대책법」 등 재난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된 지역 또는 지구에 위치한 시설일 것
 - 2)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부재나 주소·거소가 불분명한 경우 등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특정하기 어렵거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인해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안전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일 것
 - 나.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난예방을 위해 실시하는 안전조치

제75조(재난관리기금의 운용·관리) ①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용 계좌를 개설하여 법 제67조에 따라 매년 적립하는 재난관리기금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매년도 최저적립액(이하 “최저적립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15 이상의 금액(이하 “의무예치금액”이라 한다)을 금융회사 등에 예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의무예치금액의 누적 금액이 해당 연도를 기준으로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매년도 최저적립액의 10배를 초과한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의무예치금액을 매년도 최저적립액의 100분의 5로 낮추어 예치할 수 있다.

③법 제6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이란 해당 연도의 최저적립액의 100분의 21을 말한다.

④제74조에 따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재난관리기금은 제2항에 따른 금액을 제외하고 남은 금액과 그 이자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에 따른 국고 지원 대상 피해기준금액의 5배를 초과하는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의무예치금액의 일부를 사용할 수 있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재난관리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75조의2(재난관리기금의 용도 및 의무예치금액 사용에 관한 특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74조 및 제75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및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재난관리를 위한 지방재원(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분을 포함한다)으로 재난관리기금 및 의무예치금액을 사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4. 2.]

부 칙 <대통령령 제30595호, 2020. 4. 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난관리기금의 용도 및 의무예치금액 사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및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재난관리를 위한 지방재원(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분을 포함한다)으로 사용한 재난관리기금 및 의무예치금액은 제75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사용한 것으로 본다.

Q
07

코로나19와 정리해고

코로나19로 인한 매출감소로 직원들을 정리해고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정리해고를 하였는데, 경영악화에 따라 임금체불과 퇴직금 미지급 상태에 있는 경우에 과연 경영자가 금품청산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죄로 처벌받게 되는 것인가요?

#정리해고 #임금체불 #퇴직금미지급 #형사처벌 #근로기준법위반

A

회사는 근로기준법 제24조 요건을 충족한 경우 정리해고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금과 퇴직금을 미지급한 경우 사용자가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그 지급을 기대할 수 없거나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근로기준법 위반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4조 제1항에 따르면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하고, 동조 제2항에 따르면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는 경우라도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고,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이 경우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안 됩니다.

대법원에 따르면 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란 반드시 기업의 도산을 회피하기 위한 경우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장래에 올 수도 있는 위기에 미리 대처하기 위하여 인원삭감이 필요한 경우도 포함하지만, 그러한 인원삭감은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어야 하는 것이고(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8두44647 판결 참조), ②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는 것은 경영방침이나 작업방식의 합리화, 신규 채용의 금지, 일시휴직 및 희망퇴직의 활용, 전근 등 사용자가 해고범위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는 것을 의미하고, 그 방법과 정도는 확정적·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당해 사용자의 경영위기의 정도, 정리해고를 실시하여야 하는 경영상의 이유, 사업의 내용과 규모, 직급별 인원상황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8두44647 판결 참조).

따라서 코로나19로 인해 경영상 어려움이 발생한 경우에 근로기준법 제24조 요건이 충족된다면 정리해고를 할 수 있습니다.

한편,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2항에 따르면 사용자가 임금을 체불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따르면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위 두 경우 모두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기업이 불황이라는 사유만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임금 등을 체불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지만,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했어도 임금지급의 체불이나 미불을 방지할 수 없었다는 것이 사회통념상 긍정할 정

도가 되어 사용자에게 더 이상의 적법행위를 기대할 수 없거나 불가피한 사정이었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책임조각사유가 된다는 취지로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도5984 판결 참조).

따라서 경영악화로 인하여 임금 및 퇴직금이 미지급된 경우라 할지라도 그 사유만으로는 책임을 면하기 어렵고, 사용자가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그 지급을 기대할 수 없거나 불가피한 사정이었음이 인정되는 경우라야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①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인수·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②제1항의 경우에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에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④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인원을 해고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사용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에는 제23조제1항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43조(임금 지급) ②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9조(벌칙) ①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6조, 제65조, 제72조 또는 제76조의3 제6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또는 제56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퇴직금의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제4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1. 제9조를 위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자

Q
08

법인 회생·파산

중소기업 A는 젊은 여성을 대상으로 한 브랜드 의류를 제작·판매하는 회사로서 유명백화점에 직영매장을 둔 회사인데, 예상하지 못한 코로나19로 인하여 새 학기와 새 시즌에 대비할 목적으로 대량 생산해 둔 신상품에 대한 판매가 저조하여 재고가 누적되고 원단 및 부자재비 등 비용조차 회수하지 못할 상황에 처하였으며, 대출받은 운영자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과 직원 급여 등 경상비마저 부족하여 더 이상 회사를 유지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기존 대출금으로 인하여 추가 대출을 받기가 어려운 경우 A가 선택할 수 있는 채무조정 제도는 무엇이 있나요?

#중소기업 #도산 #법인회생 #파산 #채무조정

A

중소기업 A와 같이 코로나19로 인하여 예상치 못한 매출 급감 상황이 발생하여 채무를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고 기업경영 유지가 어렵게 될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 선택할 수 있는 채무조정제도로는 법인회생 혹은 파산신청이 있습니다.

법인이 신청 주체이므로 개인이 신청하는 개인회생·개인파산과 구분하여 법인회생·법인파산으로 칭하기도 하는데, 법인회생이나 법인파산 모두 채무액의 크기는 상관없이 법인의 채무가 법인의 자산을 초과하였거나 현재의 법인 자력만으로는 대출 원리금, 상거래채무, 조세 등을 상환

하지 못하게 되었거나 상환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선택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법인회생은 A가 향후 영업활동을 계속해 가면서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장래소득의 현재 가치인 계속기업가치가 A가 파산하여 모든 재산을 처분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가치인 청산가치보다 클 것으로 예상될 때 선택할 수 있는 제도로써 법인회생을 신청하게 되면 법인자산에 대한 처분이 제한되고, 채무에 대한 변제와 강제집행이 중지되며, 법원의 감독 하에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통하여 제품생산과 판매, 대금수수, 직원들 급여지급 등 정상적인 기업활동을 하게 됩니다.

A에 대한 법인회생절차가 개시되어 채무변제와 강제집행이 중지되는 동안 법원이 지정한 조사위원은 A의 청산가치와 향후 A가 변제할 수 있는 능력인 계속기업가치를 산출하게 되고 이를 기초로 관리인이 채무변제 프로그램인 회생계획안을 작성하게 되는데, 회생계획안에는 A의 모든 채무를 매년 1회, 향후 10년 동안 분할변제하는 방안이 담겨지게 되고, 이러한 회생계획안에 대해 회생담보권자의 3/4 및 회생채권자의 2/3가 동의하게 되면 법원이 회생계획안을 인가하게 됩니다.

A의 대표이사는 법인회생절차에서 통상 회생 중 A의 관리인으로 선임되어 대표자의 역할을 계속하여 수행하게 되나 드물기는 하지만 법원이 선임한 자와 공동관리인으로 되기도 하고, 대표이사 대신 법원이 선임한 자가 단독관리인이 되기도 합니다.

반면 법인파산은 A의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더 높다고 평가되어 법인회생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거나 A의 경영진이나 주주가 영업활동을 더 이상 하지 않고 청산하기로 결정한 경우에 선택할 수 있는 제

도로서 A가 영업을 종료한 상태에서 A의 모든 유·무형 자산을 처분하여 파산재단을 형성한 후 총채권자에게 우선순위에 따라 안분하여 정산하는 제도입니다.

법인파산절차에서는 A의 대표이사의 임무는 종료되고 대신 법원이 선정한 파산자 A의 파산관재인이 A의 대표자로 선임되어 매각 및 청산절차를 담당하게 됩니다.

두 제도 중 어느 것을 선택할지는 A의 대표자나 주주의 기업계속경영 의지와 청산가치를 초과하는 계속기업가치 유무에 달려있다 할 것인데, 중소기업 A의 경우 유명백화점에 납품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경쟁력도 있고, 직영매장을 보유하고 있어 계속기업가치 창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며, 재고품 할인판매나 구조조정 등으로 운전자금 중 일부를 충당할 여력도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코로나19가 진정되면 경상수지가 일부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법인파산보다는 법인회생제도를 선택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 하겠습니다.

Q 09

개인 회생·파산

A는 회사를 퇴직하고 금융기관 대출로 신도시 아파트의 상가를 임대하여 2019년 봄 작은 커피 전문점을 시작하였는데, 2020년 초에 시작된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는 4월이 되어도 계속되었고, 인근 식당에 확진자가 다녀가면서 그나마 오던 단골도 오지 않자 매출이 급감하게 되어 소상공인 지원 대출을 신청했지만 언제 심사할지도 알 수 없는 상황이어서 함께 일하던 직원을 퇴직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A는 상환해야 할 대출 원리금과 미납 카드대금 및 연체 공과금이 누적되어가는 반면 이를 변제할 자력이 없는 경우 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매출감소 #회생파산 #채무조정 #소상공인

A

A와 같이 코로나19로 인하여 예상치 못한 매출 급감 상황이 발생하여 채무를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게 될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 A가 선택할 수 있는 채무조정제도로는 회생 혹은 파산신청이 있습니다.

회생신청은 소득이 계속될 것을 전제로 하므로 만약 A가 계속해서 커피 전문점을 운영할 의사가 있다면 회생신청을 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입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면 회생신청 전 금융기관별로 진행하던 대출 원리금 변제가 중단되고 법원(개인회생위원)의 지정계좌로 통합해서 변제

하게 되며, 변제금액은 본인의 수입에서 아래 표와 같이 생계에 필요한 비용을 공제한 금액으로 정해지게 됩니다. 달리 말하면 A가 변제하여야 할 금액을 미리 정해 놓는 것이 아니라 A의 소득 범위 내에서 일정액을 변제할 수 있게 계획안이 마련되게 되는데, 이것이 A가 회생절차를 선택할 경우 얻을 수 있는 이점 중의 하나입니다.

2020년 개인회생 최저생계비

구분	기준중위소득	60% 조정금액
1인 가구	1,757,194원	1,054,318원
2인 가구	2,991,980원	1,795,188원
3인 가구	3,870,577원	2,322,346원
4인 가구	4,749,174원	2,849,504원
5인 가구	5,627,771원	3,376,662원
6인 가구	6,506,368원	3,903,820원
7인 가구	7,389,715원	4,433,829원

변제기간과 변제회수는 매월 변제하는 것을 전제로 총 5년, 60회 변제하게 되면 기존 채무를 전부 변제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채무변제는 종결되게 됩니다. 다만, 보증금, 집기류, 기타 금융자산 등 본인의 재산을 고려하여 최소 변제금액은 조정이 될 수 있고, 직원에 대한 미지급 퇴직금은 채무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파산은 A의 연령, 건강상태, 부양가족 등을 고려하여 A가 더 이상 경제 활동을 할 수 없거나, 경제활동을 하더라도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는 것이 어려울 때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파산을 신청하게 되면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이 A의 재산을 정리하여 채권자들에게 일시에 배분한 후 더 이상 A에게 변제할 자력이 없다는 것을 확인받아 남은 채무에 대해 면책시키는 제도입니다.

다만, A의 모든 재산을 청산하는 것이 아니라 생계에 필요한 재산은 남겨두게 되는데, 대표적인 것이 거주하는 집의 보증금과 6개월간의 생계비에 해당하는 약 1,100만 원 상당의 현금입니다.

이런 점에서 회생신청에 비해 파산신청이 일견 좋아 보일 수도 있겠지만,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하여 파산절차에서는 신청인이 더 이상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없다는 점에 대하여 매우 엄격하게 심사한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역	적용범위(보증금액 기준)	면제재산 범위
서울특별시	1억 1,000만원	3,700만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세종시, 용인시 및 화성시	1억원	3,400만원
광역시, 안산시, 김포시, 광주시 및 파주시	6,000만원	2,000만원
그 밖의 지역	5,000만원	1,700만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회생과 파산제도는 성실하게 살고자 하였으나 불운하여 도산에 이르게 된 채무자를 구제해 주기 위한 제도이므로 A와 같이 코로나19로 예상치 못한 경제적 곤궁에 처하게 된 채무자들이 고려할 만한 제도라 하겠습니다.

Q 10

사업주의 손해배상책임

고객이나 거래처가 사업장을 방문하여 코로나19에 감염된 경우 사업주에게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나요?

#사업장방문 #사업주 #고의과실 #손해배상

A

고객이나 거래처가 사업장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에 대하여 사업주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면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회사의 관리인, 경영자 또는 대표자는 제1급감염병부터 제3급감염병까지에 해당하는 감염병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감염병이 발생한 경우에는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진단이나 검안을 요구하거나 해당 주소를 관할하는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동법 제 81조에 따라 '2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감염병에 관하여 '주의' 이상의 경보가 발령된 경우 누구든지 의료인에 대하여 감염 여부 확인에 필요한 사실에 관하여 거짓진술하거나 거짓자료를 제출하거나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은폐해서는 안됩니다. 사업주가 사업장에서의 코로나19 발생 사실 등에 관하여 거짓진술하거나 거짓자료를 제출하거나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은폐하였고, 이로 인하여 코로나19에 대한 방역 등이 지체되었고 그로 인하여 고객이나 거래처가 코로나19에 감염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업주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격리되는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 이외에 그 격리기간 동안 유급휴가를 줄 수 있으며, 만약 국가로부터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받을 경우에는 반드시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코로나19 감염에 따라 사업주가 국가로부터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받았음에도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주지 않았고 그로 인하여 고객이나 거래처가 코로나19에 감염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업주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그 밖의 신고의무자)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급감염병부터 제3급감염병까지에 해당하는 감염병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감염병이 발생한 경우에는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진단이나 검인을 요구하거나 해당 주소를 관할하는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학교, 병원, 관공서, 회사, 공연장, 예배장소, 선박·항공기·열차 등 운송수단, 각종 사무소·사업소, 음식점, 숙박업소 또는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는 장소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소의 관리인, 경영자 또는 대표자

제35조의2(재난 시 의료인에 대한 거짓 진술 등의 금지) 누구든지 감염병에 관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예보 또는 경보가 발령된 후에는 의료인에 대하여 의료기관 내원(內院)이력 및 진료이력 등 감염 여부 확인에 필요한 사실에 관하여 거짓 진술,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은폐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1조의2(사업주의 협조 의무) ①사업주는 근로자가 이 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 외에 그 입원 또는 격리기간 동안 유급휴가를 줄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가 국가로부터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 받을 때에는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제18조(역학조사) ③누구든지 질병관리본부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는 역학조사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회피하는 행위
2.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
3.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은폐하는 행위

제8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12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게을리한 자

Q

11

비상경영대책(임금의 반납 또는 삭감)

A회사는 비상경영대책의 일환으로 일정기간 동안 소속 임직원의 임금 중 20% 정도를 감축하려 합니다. 임금의 반납 또는 삭감 중 하나의 형식으로 진행하려고 하는데,

1. 반납과 삭감은 어떠한 차이가 있나요?
2. 반납의 경우 기존 급여에서 반납하기로 한 임금 부분을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을 지급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규정의 임금 전액불 원칙을 위반하는 것인가요?

#비상경영대책 #경제사정변동 #임금반납 #임금삭감

A

1. 임금의 반납은 임금의 일부에 대한 청구권을 포기하는 것이므로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고, 반납 부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반면 임금의 삭감은 장래를 향한 근로조건의 변경으로써, 단체협약·취업규칙 변경절차에 따라 변경이 가능하고, 삭감된 부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반납의 경우 기존 급여에서 반납임금을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여도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의 임금 전액불 원칙을 위반하는 것은 아닙니다.

1. 임금의 반납과 삭감

임금의 반납은 '기왕의 근로에 대하여 발생된 임금 또는 향후 근로에 대해 발생할 임금의 일부에 대한 청구권을 포기하기로 약정하고 회사에 반납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근로기준법-797, 2009. 3. 26. 참조). 따라서 임금의 반납은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고, 반납한 부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임금의 삭감은 장래를 향하여 임금을 낮추어 지급하기로 한 합의를 의미합니다. 즉, 임금의 삭감은 근로조건의 변경이므로 단체협약·취업규칙 변경절차에 따라 변경이 가능하고, 삭감된 부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임금 반납의 방법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기존 급여에서 반납하기로 한 임금을 공제한 후 잔액을 지급하는 것이 위 근로기준법 규정에 위반되는 것인지 문제된 사안에서, 주무관청은 “임금포기가 근로자의 완전한 자유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족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고, 임금채권 포기에 대한 명백한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라면 반납임금을 미리 공제한 후 지급하는 형식을 취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43조의 전액불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는 입장입니다(근로기준법-2599, 2009. 7. 22. 참조).

따라서 임금 반납이 근로자의 완전한 자유의사에 기한 것이라면, 근로자에게 기존 임금을 지급한 후 반납부분을 반환받는 것이 아니라, 반납하기로 한 부분을 공제한 후 남은 금액을 지급하여도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임금 전액불 원칙에 위반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코로나19 법률상담 Q&A’ 집필 관련 명단

■ 코로나19대책법률지원TF

신현호(위원장)	강서경	권오용	박숙란	박인숙
박종운	박현근	오세범	유재원	이동규
이시정	정영훈	정재욱	정희원	최석봉
하영주	홍지백	황필규		

■ 집필 및 사례 제공에 도움 주신 분들

강경우	강민우	강현구	곽슬기	곽정엽	구민걸	김가연	김경수
김광석	김근확	김대현	김도현	김동규	김동민	김민후	김봉준
김상윤	김상천	김상택	김송이	김수경	김양현	김용욱	김운의
김익환	김정환	김지윤	김지인	김찬영	김찬희	김현임	김현철
류다솔	류지효	명노광	박범일	박상원	박상흠	박성태	박정빈
박제중	박준호	박지선	배현수	백지연	서상윤	서채완	손범규
송태원	송현우	신동일	신수경	신종균	심교준	심현주	안현희
양동필	오경연	오승원	오승헌	원혜진	유전웅	윤동재	윤성현
윤성호	이광진	이대원	이명수	이명현	이상진	이상훈	이순성
이승현	이용훈	이용훈	이종언	이지혜	이지훈	이효정	임영심
장재윤	장혜린	전민관	전 별	전성훈	전희정	정동연	정수진
정지원	정지훈	정진환	정희원	조미연	조영관	조용호	조진석
조판제	지용환	지정은	최민경	최종연	최진녕	추은혜	하서정
한동희	한재구	허남욱	홍 성	황문규	황병탁	〈가나다순〉	

코로나19 법률상담 Q&A

발행일	2020년 9월
발행인	이찬희
발행처	대한변호사협회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24 18층(대한변협회관) http://www.koreanbar.or.kr 전화 : 02) 3476-4000 팩스 : 02) 3476-2771
디자인/편집	경성문화사 전화 : 02) 786-2999

이 책을 무단복사, 복제, 전재하는 것은 저작권법에 저촉됩니다.
본 책에 게재된 글을 사용할 때에는 대한변호사협회와 상의하여 주십시오.

